
**(가칭)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3. 09.



연구수행기관

(주) 파트너스 랩

연 구 진

연구총괄 김 용 (주)파트너스 랩

연구원 김 미 영 (주)파트너스 랩

박 수 경 (주)파트너스 랩

이 혜 진 (주)파트너스 랩

본 연구보고서는 해남군청의 의뢰로 「(주) 파트너스랩」, 수행한 학술 연구용역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최종성과품입니다.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남도청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3
1.1 사업의 개요	3

II. 일반현황

1. 해남군 일반현황	7
1.1 지리적 현황	7
1.2 인문사회 현황	9
1.3 인구 및 가구 현황	10
1.4 주택	13
1.5 토지이용현황	14
1.6 용도지역현황	15
1.7 산업경제현황	16
1.8 기상 및 기후	17
1.9 지형 및 지세	19
1.10 수계 및 하천	20
1.11 도로 포장율	21
1.12 주차장	21
1.13 주요 관광자원	22
1.14 문화재	24
2. 장애인현황 및 시설현황	25
2.1 전국 장애인 현황	25
2.2 해남군 등록장애인 현황	26

2.3 해남읍 장애인단체 및 시설 운영 현황	28
2.4 해남읍 체육, 문화시설 현황	29
3. 장애인 관련 법률·정책·제도	31
3.1 장애인 관련 법률	31
3.2 장애인 관련 정책	38
3.3 장애인 관련 제도	45

Ⅲ. 해남군 장애인 복지관 현황 및 기능전환

1. 해남군 장애인 복지관 현황	55
1.1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	55
2. 장애인 정책과 복지관의 역할 변화	60
2.1 장애인정책 변화와 장애인복지관 역할 재정립	60
3. 장애인 정책과 복지관 기능변화	63
3.1 장애인복지관 기능 변화	63
3.2 장애인 복지관 기능 전환사례 분석	65
4. 해남군 장애인 복지관의 기능전환	68
4.1 장애인정책 변화와 해남군 장애인복지관 역할 재정립 적용방안	68
4.2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역할 및 기능 전환	69

Ⅳ. 수요조사

1. 수요조사	75
1.1 수요조사 개요	75
1.2 수요조사 내용	75

2. 설문조사	79
2.1 조사개요	79
2.2 조사내용 및 설문분석 - 장애인 및 보호자	79
2.3 조사내용 및 설문분석 - 일반 군민	93
2.4 설문 소결	103
2.5 초점집단인터뷰(FGI) 분석 결과	104
3. 수요면적 산정	110
3.1 수요산정	110

V. 대상지 현황

1. 대상지 개요	117
1.1 위치 및 면적	117
1.2 대상지 현황 종합	118
2. 지형지세 현황	120
2.1 표고분석	120
2.2 경사분석	121
3. 생태 및 자연환경 현황	122
3.1 생태자연도	122
3.2 국토환경성평가	123
4.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	124
4.1 소유자	124
4.2 지목	125
4.3 공시지가	126
4.4 건축물 현황	127

CONTENTS

5. 토지이용규제 현황	128
5.1 용도지역	128
5.2 용도지구	128
5.3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129
5.4 도시계획시설	130
6. 공법제한 현황	131
6.1 하천구역 등	131
6.2 문화재	132
6.3 교육시설	133
6.4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도로구역, 접도구역	134

VI. 건축 기본계획

1. 프로그램 및 면적 검토(안)	137
1.1 해남군 다어울림 문화복지공간 프로그램 및 면적 적용(안)	137
2. 비전 및 목표	139
2.1 비전 및 목표	139
3. 공간 계획(안)	140
3.1 상담 및 치료공간	140
3.2 교육공간	146
3.3 직업공간	147
3.4 여가문화공간	149
3.5 재활공간	149
3.6 기 타	151
3.7 주간보호	152

CONTENTS

3.8 기타공간	152
4. 건축 법규 검토	153
4.1 건축 법규	153
4.2 절차 법규	154
5. 건축 계획(안)	156
5.1 건축계획(안)	156

Ⅶ. 사업 검토

1. 공사비 검토 및 예산 계획(안)	175
1.1 공사비 검토	175
1.2 예산 계획(안)	176
1.3 설계용역비 산출조서	177
1.4 감리비 산출조서	180
1.5 설계공모방식 검토	182
1.6 설계공모	183
1.7 공사기간 검토	184
1.8 해남군 다어울림 복지문화복지공간 세부 추진 일정	187
2. 경제성 분석	188
2.1 경제적 타당성 개념 및 분석 방법	188
2.2 경제적 타당성 분석	191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98
3.1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개요	198
3.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199

〈표 차례〉

【표 - 1】 해남군 지리적 위치	7
【표 - 2】 해남군 행정구역	8
【표 - 3】 해남군 인구 및 세대	11
【표 - 4】 해남군 인구 및 세대	12
【표 - 5】 해남군 주택 현황	13
【표 - 6】 토지이용현황	14
【표 - 7】 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15
【표 - 8】 사업체 및 종사자 분포현황	16
【표 - 9】 해남군 기온	17
【표 - 10】 해남군 강수량	18
【표 - 11】 하천 현황	20
【표 - 12】 도포 포장 현황	21
【표 - 13】 주차장 현황	21
【표 - 14】 해남군 관광현황	22
【표 - 15】 해남군 최근 3년 관광지점별 관광객 통계	23
【표 - 16】 해남군 문화재 현황	24
【표 - 17】 전국 인구수 및 등록장애인 수 현황	25
【표 - 18】 해남군 총인구수 및 등록장애인 수 현황	26
【표 - 19】 해남군 읍·면단위 장애인 현황	27
【표 - 20】 해남읍 내 장애인단체 및 시설 운영 현황	28
【표 - 21】 해남읍 내 체육, 문화시설 현황	29
【표 - 22】 장애인 관련 법률 주요내용	32
【표 - 23】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33
【표 - 2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35
【표 - 2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36
【표 - 2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주요 내용	36
【표 - 27】 해남군 장애인 정책 현황	41
【표 - 28】 BF인증시기 및 유효기간	46
【표 - 29】 BF인증 등급	46
【표 - 30】 BF 건축물 인증평가 항목	47
【표 - 31】 휠체어사용자 특성 및 건축적 배려사항	49

【표 - 32】 시각장애인 특성 및 건축적 배려사항	50
【표 - 33】 청각장애인 특성 및 건축적 배려사항	51
【표 - 34】 목발 사용자 특성 및 건축적 배려사항	52
【표 - 35】 해남군 장애인복지관 건축 및 시설개요	55
【표 - 36】 해남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서비스	55
【표 - 37】 해남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서비스 현황	56
【표 - 38】 해남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사회서비스	57
【표 - 39】 해남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서비스	57
【표 - 40】 성별 및 연령대별 현황	57
【표 - 41】 소득기준 현황	57
【표 - 42】 최근 3개년 시행 프로그램	58
【표 - 43】 장애인 재활서비스 분류	63
【표 - 44】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관 기능전환	65
【표 - 45】 경기도 장애인 복지관 기능전환	66
【표 - 46】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관 기능전환	67
【표 - 47】 해남군 장애인 복지관 조직 및 프로그램(안)	70
【표 - 48】 주간보호센터 수요조사 결과	75
【표 - 49】 기능향상지원팀 수요조사 결과	76
【표 - 50】 지역권의 옹호팀 수요조사 결과	77
【표 - 51】 운영지원팀 수요조사 결과	77
【표 - 52】 직업/평생교육팀 수요조사 결과	78
【표 - 53】 성별 분포(장애인 및 보호자)	79
【표 - 54】 연령 분포(장애인 및 보호자)	80
【표 - 55】 학력 분포(장애인 및 보호자)	80
【표 - 56】 거주지 분포 (장애인 및 보호자)	81
【표 - 57】 직업 분포 (장애인 및 보호자)	81
【표 - 58】 장애 유형	82
【표 - 59】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및 기관 (장애인 및 보호자)	82
【표 - 60】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장애인 및 보호자)	83
【표 - 61】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장애인 및 보호자)	83
【표 - 62】 주 이용목적 (장애인 및 보호자)	84
【표 - 63】 시설 이용 정도(장애인 및 보호자)	85

【표 - 64】 시설에 가기 위한 교통수단(장애인 및 보호자)	85
【표 - 65】 복지시설 수에 대한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86
【표 - 66】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86
【표 - 67】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87
【표 - 68】 지리적 위치에 대한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87
【표 - 69】 이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88
【표 - 70】 기존 장애인 복지관의 전반적인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88
【표 - 71】 (가칭)해남군 복합문화복지공간의 건립 필요성(장애인 및 보호자)	89
【표 - 72】 건립 시 우선 고려사항(장애인 및 보호자)	89
【표 - 73】 도입 희망 시설 및 공간(장애인 및 보호자)	90
【표 - 74】 도입 희망 프로그램(장애인 및 보호자)	91
【표 - 75】 외부공간 조성 방향(장애인 및 보호자)	92
【표 - 76】 성별 분포(일반 군민)	93
【표 - 77】 연령 분포(일반 군민)	93
【표 - 78】 학력 분포(일반 군민)	94
【표 - 79】 거주지 분포 (일반 군민)	94
【표 - 80】 직업 분포 (일반 군민)	95
【표 - 81】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및 기관 (일반 군민)	95
【표 - 82】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일반 군민)	96
【표 - 83】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일반 군민)	96
【표 - 84】 주 이용목적 (일반 군민)	97
【표 - 85】 복지시설 수에 대한 만족도(일반 군민)	98
【표 - 86】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일반 군민)	98
【표 - 87】 (가칭)해남군 복합문화복지공간의 건립 필요성(일반 군민)	99
【표 - 88】 건립 시 우선 고려사항(일반 군민)	99
【표 - 89】 도입 희망 시설 및 공간(일반 군민)	100
【표 - 90】 도입 희망 프로그램(일반 군민)	101
【표 - 91】 외부공간 조성 방향(일반 군민)	102
【표 - 92】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 설문 소결	103
【표 - 93】 초점집단 인터뷰 대상	104
【표 - 94】 해남군 시각장애인협회 FGI 분석 결과	107
【표 - 95】 해남군 지체장애인협회 FGI 분석 결과	108

【표 - 96】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집단 FGI 분석 결과	109
【표 - 97】 영역별 수요 공간	110
【표 - 98】 영역별 수요공간 사례 분석	111
【표 - 99】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수요추정 면적(안)	112
【표 - 100】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적용 (안)	113
【표 - 101】 대상지 현황분석 결과 요약	118
【표 - 102】 표고별 면적표	120
【표 - 103】 경사별 면적표	121
【표 - 104】 생태등급별 면적표	122
【표 - 105】 국토환경성평가등급별 면적표	123
【표 - 106】 소유자별 면적표	124
【표 - 107】 지목별 면적표	125
【표 - 108】 공시지가 현황표	126
【표 - 109】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표	129
【표 - 110】 도시계획시설별 면적표	130
【표 - 111】 하천 면적표	131
【표 - 112】 문화재 현황	132
【표 - 113】 교육환경보호구역 현황	133
【표 - 114】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도로구역, 접도구역 현황	134
【표 - 115】 해남군 다어울림복합문화복지공간 프로그램 및 면적(안)	137
【표 - 116】 건축 법규 검토	153
【표 - 117】 건축 절차법규 검토	154
【표 - 118】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기본계획 건축개요(안)	156
【표 - 119】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배치대안평가	156
【표 - 120】 외부 공간 조성 제안(안)	159
【표 - 121】 프로그램 별 조닝(안)	162
【표 - 122】 층별 계획(안)	163
【표 - 123】 층별 면적표(안)	163
【표 - 124】 지하 1층 면적표(안)	164
【표 - 125】 1층 면적표(안)	165
【표 - 126】 2층 면적표(안)	166
【표 - 127】 3층 면적표(안)	167

【표 - 128】 4층 면적표(안)	168
【표 - 129】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예산 계획(안)	176
【표 - 130】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설계용역비 산출 조서	177
【표 - 131】 해남군 다어울림 복지관 책임감리비 산출 조서	180
【표 - 132】 설계공모방식별 주요 내용	182
【표 - 133】 운영절차 및 기간 (예시)	182
【표 - 134】 제안(간이)공모 제출 항목	183
【표 - 135】 일반설계공모 제출도서의 규격	183
【표 - 136】 설계공모 추진일정	183
【표 - 137】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184
【표 - 138】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공사기간 산정기준	184
【표 - 139】 조달청 공사비 광장 유사사례 공사기간 검토	185
【표 - 140】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세부 추진 일정	187
【표 - 141】 경제적 타당성 판단 기준	190
【표 - 142】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원 인건비 및 경비	191
【표 - 143】 해남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건비 및 경비	191
【표 - 144】 해남군 선재의 집 인건비 및 경비	192
【표 - 145】 해남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인건비 및 경비	192
【표 - 146】 해남군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인건비 및 경비	192
【표 - 147】 해남군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인건비 및 경비	193
【표 - 148】 해남군 복지시설 경비 세부내역	193
【표 - 149】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연간 진료비 절감 편익	195
【표 - 150】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향후 30년간의 비용과 편익 분석 내용	196
【표 - 151】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타당성 분석 결과	197
【표 - 152】 지역산업연관 체계	198
【표 - 153】 경제적 파급효과 결과	200

〈그림 차례〉

【그림 - 1】 해남군 인구 및 세대 변화 추이	12
【그림 - 2】 해남군 주택수	13
【그림 - 3】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14
【그림 - 4】 도시지역 용도지역 비율 현황	15
【그림 - 5】 해남군 지형 및 지세 (지형 및 지세,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순)	19
【그림 - 6】 해남군 주요 하천 및 현황도 (2035 해남군기본계획)	20
【그림 - 7】 전국 총인구수(명)	25
【그림 - 8】 전국 등록장애인수(명)	25
【그림 - 9】 전국 등록장애인 비율(%)	25
【그림 - 10】 해남군 총인구수(명)	26
【그림 - 11】 해남군 등록장애인수(명)	26
【그림 - 12】 전국 및 해남군 등록장애인 비율(%)	26
【그림 - 13】 해남읍 장애인단체 및 시설 위치 현황	28
【그림 - 14】 해남읍 체육, 문화시설 현황	30
【그림 - 15】 장애인 관련 법률	31
【그림 - 16】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전략	39
【그림 - 17】 장애인 보건복지정책(2022)의 중점 정책	40
【그림 - 1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절차	46
【그림 - 19】 휠체어 사용자 BF인증 주안점	49
【그림 - 20】 시각장애인 BF인증 주안점	50
【그림 - 21】 청각장애인 BF인증 주안점	51
【그림 - 22】 목발 사용자 BF인증 주안점	52
【그림 - 2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전략	62
【그림 - 24】 성별 분포 (장애인 및 보호자)	79
【그림 - 25】 연령 분포 (장애인 및 보호자)	80
【그림 - 26】 학력 분포 (장애인 및 보호자)	80
【그림 - 27】 거주지 분포 (장애인 및 보호자)	81
【그림 - 28】 직업 분포 (장애인 및 보호자)	81
【그림 - 29】 장애 유형	82
【그림 - 30】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및 기관 (장애인 및 보호자)	82
【그림 - 31】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장애인 및 보호자)	83

【그림 - 32】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장애인 및 보호자)	83
【그림 - 33】 주 이용목적(장애인 및 보호자)	84
【그림 - 34】 시설 이용 정도(장애인 및 보호자)	85
【그림 - 35】 시설에 가기 위한 교통수단(장애인 및 보호자)	85
【그림 - 36】 복지시설 수에 대한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86
【그림 - 37】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86
【그림 - 38】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87
【그림 - 39】 지리적 위치에 대한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87
【그림 - 40】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88
【그림 - 41】 기존 장애인 복지관의 전반적인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88
【그림 - 42】 (가칭)해남군 복합문화복지공간의 건립 필요성(장애인 및 보호자)	89
【그림 - 43】 건립 시 우선 고려사항(장애인 및 보호자)	89
【그림 - 44】 도입 희망 시설 및 공간(장애인 및 보호자)	90
【그림 - 45】 도입 희망 프로그램(장애인 및 보호자)	91
【그림 - 46】 외부공간 조성 방향 (장애인 및 보호자)	92
【그림 - 47】 성별 분포(일반 군민)	93
【그림 - 48】 연령 분포 (일반 군민)	93
【그림 - 49】 학력 분포 (일반 군민)	94
【그림 - 50】 거주지 분포 (일반 군민)	94
【그림 - 51】 직업 분포 (일반 군민)	95
【그림 - 52】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및 기관 (일반 군민)	95
【그림 - 53】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일반 군민)	96
【그림 - 54】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일반 군민)	96
【그림 - 55】 주 이용목적(일반 군민)	97
【그림 - 56】 복지시설 수에 대한 만족도(일반 군민)	98
【그림 - 57】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일반 군민)	98
【그림 - 58】 (가칭)해남군 복합문화복지공간의 건립 필요성(일반 군민)	99
【그림 - 59】 건립 시 우선 고려사항(일반 군민)	99
【그림 - 60】 도입 희망 시설 및 공간(일반 군민)	100
【그림 - 61】 도입 희망 프로그램(일반 군민)	101
【그림 - 62】 외부공간 조성 방향 (일반 군민)	102
【그림 - 63】 대상 부지 위치도	117

【그림 - 64】 대상지 위성 사진	119
【그림 - 65】 대상 부지 표고현황도	120
【그림 - 66】 대상 부지 경사현황도	121
【그림 - 67】 대상 부지 생태자연현황도	122
【그림 - 68】 대상 부지 국토환경성평가등급 현황도	123
【그림 - 69】 토지 소유자 현황도	124
【그림 - 70】 토지 지목별 현황도	125
【그림 - 71】 공시지가현황도	126
【그림 - 72】 건축물 구조별 현황도	127
【그림 - 73】 용도지역별 현황도	128
【그림 - 74】 용도지구별 현황도	128
【그림 - 75】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도	129
【그림 - 76】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130
【그림 - 77】 하천 현황도	131
【그림 - 78】 문화재 현황도	132
【그림 - 79】 교육시설 입지현황도	133
【그림 - 80】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도로구역, 접도구역 현황도	134
【그림 - 81】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 문화복지공간 비전 및 목표	139
【그림 - 82】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상담실 예시	140
【그림 - 83】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미술활동실 예시	141
【그림 - 84】 심리안정실 예시	141
【그림 - 85】 심리활동실 예시	142
【그림 - 86】 언어활동실 예시	142
【그림 - 87】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음악활동실 예시	143
【그림 - 88】 인지활동실 예시	144
【그림 - 89】 대근육활동실 예시	144
【그림 - 90】 소근육활동실 예시	145
【그림 - 91】 특수교육실 예시	145
【그림 - 92】 집단활동실 예시	146
【그림 - 93】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강당 예시	146
【그림 - 94】 강의실 예시	147
【그림 - 95】 직업적응훈련실 예시	147

【그림 - 96】 직업능력평가실 예시	148
【그림 - 97】 평생학습실 예시	149
【그림 - 98】 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물리치료실 예시	150
【그림 - 99】 재활치료실 예시	150
【그림 - 100】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식당 예시	151
【그림 - 101】 주간보호실 예시	152
【그림 - 102】 배치계획(안)	157
【그림 - 103】 배치계획 대안_버스 주차(안)	158
【그림 - 104】 입구 및 동선계획 - 기술자문내용	160
【그림 - 105】 입구 및 동선계획(안)	161
【그림 - 106】 지하층 평면 계획(안)	164
【그림 - 107】 1층 평면 계획(안)	165
【그림 - 108】 2층 평면 계획(안)	166
【그림 - 109】 3층 평면 계획(안)	167
【그림 - 110】 4층 평면 계획(안)	168
【그림 - 111】 조감도(안)	169
【그림 - 112】 남측면 조감도(안)	169
【그림 - 113】 서측면 조감도(안)	170
【그림 - 114】 동측면 조감도(안)	170
【그림 - 115】 북측면 조감도(안)	171
【그림 - 116】 휴게마당 조감도(안)	171
【그림 - 11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	175
【그림 - 118】 서울시 공사비 책정 기준(복지지원센터)	175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1.1 사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현 장애인 복지관은 1996년도에 건립되어 시설 노후 및 공간협소 등으로 인하여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 호소 및 다양한 욕구 표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 공동체 형성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 대두되었음
- 따라서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의 필요성과 사업 규모의 타당성 분석, 수요에 맞는 복합시설 입주계획, 자원조달의 적정성 분석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공익성과 경제적 측면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함

2) 과업의 개요

- 위 치 :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7외 7필지
- 대지면적 : 5,749m²
- 건축면적 : 약 3,100m²(±5% 이내), 지하 1층 ~ 지상 4층
- 사업기간 : '24년 ~ '27년(4년)
- 사업규모 : 총 약 180억원 (군비 180억원)

3) 과업의 범위

- 현황조사 및 기초조사
- 조성에 따른 관계 법령 검토
- 건립 필요성 및 규모의 타당성, 적정성 분석
- 복합시설 적정 규모 및 공간배치, 입주가능 시설 등 기본구상안
- 총사업비와 자원조달
- 조성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II. 일반현황

1. 해남군 일반현황
2. 장애인현황 및 시설현황
3. 장애인 관련 법률·정책·제도

1

해남군 일반현황

1.1 지리적 현황

1) 위치

- 해남군은 한반도의 서남쪽 모서리에 자리 잡은 전남 최대의 군이며, 동북쪽만이 강진, 영암과 연결된 육지이고 3명이 모두 바다인 반도로 되어 있음
- 전남의 서남단에 돌출해 있는 해남은 서북쪽으로 뻗은 화원반도, 산이반도와 남쪽으로 뻗은 해남반도와 내륙부로 이루어져 동쪽을 강진만, 동북쪽을 영암군과 강진군, 동남쪽을 완도군과 접하고 있으며, 서북쪽으로는 진도군과 목포시에 접하고 있음
- 해안선은 총연장이 302km이며, 그중 도서 해안선은 38.1km이고 도서 수는 65개(유인도 7, 무인도 58)로 다도해를 형성하고 있어 수산업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표 - 1】 해남군 지리적 위치

단	지명	극점	연장거리
동단	북일면 내동리	동경 126°40'10" 북위 34°27'10"	동서간 44.2km 남북간 54.8km
서단	화원면 화봉리	동경 126°16'10" 북위 34°39'20"	
남단	송지면 땅끝리	동경 126°32'29" 북위 35°17'32"	
북단	화원면 매월리	동경 126°17'20" 북위 34°45'10"	

자료 : 2020 제60회 해남군 통계연보

2) 면적 및 행정구역

- 해남은 전남의 전체면적 중 8.4%인 1,031.31km²를 차지해, 도 전체군중 가장 면적이 넓음
- 각 읍면별 면적을 보면 산이면 125.74km², 황산면 105.75km², 현산면 90.33km²순이고 가장 적은 면이 북일면 41.38km²임

【표 - 2】해남군 행정구역

구분	면적		읍	면	리	
	(km ²)	(%)			행정	법정
2019	1,031.31	100.00	1	13	514	177
해남읍	65.20	6.32	1	-	37	18
삼산면	50.86	4.93	-	1	35	9
화산면	56.84	5.51	-	1	43	15
현상면	90.33	8.76	-	1	33	12
송지면	80.87	7.84	-	1	42	14
북평면	48.15	4.67	-	1	22	8
북일면	41.38	4.01	-	1	20	8
옥천면	61.09	5.92	-	1	43	14
계곡면	78.14	7.58	-	1	31	15
마산면	80.20	7.78	-	1	35	11
황산면	105.75	10.25	-	1	43	13
산이면	125.74	12.19	-	1	40	13
문내면	56.56	5.48	-	1	46	12
화원면	90.20	8.75	-	1	44	15

자료 : 2020 제60회 해남군 통계연보

1.2 인문사회 현황

1) 해남군 연혁¹⁾

- 신석기시대 후기에 즐문토기인이 현산면 백포만 연안의 두모리에 등장
- 삼국시대 백제성왕 16년 새금현(현산면 고현을 중심으로 화산면 일원), 고서이현(마산면 장촌을 중심으로, 계곡면, 산이반도 일원), 황술현(문내면 고당을 중심으로 화원면, 황산면 일원)설치
-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6년 새금현이 침명현, 고서이현이 고안현으로 황술현이 황원현으로 바뀌어 양무군(현 강진, 해남, 완도 지역) 관할에 속함.
- 조선 태종 9년 진도와 해남을 합하여 해진현으로 하고 관부로서 중심 치소를 현 삼산면 나범구 녹산역터로 옮김
- 조선 세종 19년 진도와 해남을 나누어 해남현을 복칭하고 현감을 두어 치읍을 현재의 해남읍으로 옮겼으며, 조선 세종 30년 옥천현과 황원군이 영암에서 해남으로 편입 (지금의 해남 경역과 비슷하게 됨)
- 조선 고종 32년 전국 행정개편되어 해남현이 나주부 해남군으로 승격되며, 33년 다시 전라남도 해남군으로 개편하고 부근도서를 완도군으로 이속
- 1914년 해남 인접지역을 병합하여 13개면으로 개편
- 1955년 해남면이 읍으로 승격여 행정구역이 1읍 12면이 되었으며(법률 제 359호), 1973년 송지면 월송리를 현산면에 마산면 북평리를 해남읍에 편입함 (대통령령 제6242호)
- 1981년 1읍 12면 496리가 1읍 12면 502리로 조정되었고, 1983년 북평면이 북평면과 북일면으로 분면 1읍 13면으로 조정되고, 마산면 맹진리 월암마을이 계곡면 덕정리로 편입됨 (대통령령 제 11027호)
- 1987년 1읍 13면 502리가 1읍 13면 507리로 조정되었으며, 1988년 1읍 13면 507리가 1읍 13면 511리로 조정됨
- 1990년 옥천면 봉황리가 강진군 도암면으로 편입되어 1읍 13면 510리로 조정되었으며, 1992년 1읍 13면 513리로 편제, 2015년 현재 1읍 13면 514리로 편제(화산면 중마리 신설)

1) 해남군청 홈페이지, 해남군 연혁, <http://www.haenam.go.kr/>

1.3 인구 및 가구 현황

1) 해남군 인구 및 세대

- 해남군은 2019년 기준 34,824세대, 등록인구는 71,806명, 세대당 인구는 2.1명, 65세 이상 고령자는 21,957명, 인구밀도는 69.6명/km²로 나타나고 있음
- 세대수는 해남읍이 10,651세대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뒤로는 송지면이 3,301세대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가장 낮은 세대수는 북일면 1,132세대로 나타나며, 계곡면이 1,263세대로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나는 지역임
- 등록인구수는 해남읍, 송지면 순으로 각각 25,014명, 6,636명으로 가장 많으며, 북일면, 계곡면이 2,078명, 2,312명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세대당 인구는 해남읍이 2.3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마산면이 1.78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세대당 인구의 해남군 평균인 2.1명과 대비해 높은 지역은 없고 모두 낮게 나타남
- 65세 고령자는 해남읍이 4,274명, 송지면 2,155명, 황산면 1,945명 순으로 많으며, 북일면 942명, 마산이 1,059명으로 고령자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인구밀도는 해남읍이 383.7명/km²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계곡면이 29.6명/km²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 전반적으로 해남읍이 면지역 대비 세대수, 등록인구, 세대당 인구, 65세 이상 고령자수, 인구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 3】 해남군 인구 및 세대

구분	세대수	등록인구	세대당인구	65세이상 고령자	인구밀도
2019	34,824	71,806	2.1	21,957	69.6
해남읍	10,651	25,014	2.33	4,274	383.7
삼산면	1,578	3,059	1.93	1,151	60.1
화산면	1,768	3,493	1.92	1,336	61.5
현상면	1,606	2,985	1.83	1,231	33.0
송지면	3,301	6,636	1.93	2,155	82.1
북평면	1,522	2,954	1.92	1,198	61.3
북일면	1,132	2,078	1.83	942	50.2
옥천면	1,667	3,140	1.85	1,285	51.4
계곡면	1,263	2,312	1.79	1,056	29.6
마산면	1,419	2,599	1.78	1,059	32.4
황산면	2,612	5,205	1.94	1,945	49.2
산이면	2,096	4,098	1.90	1,446	32.6
문내면	2,173	4,300	1.93	1,519	76.0
화원면	2,036	3,933	1.83	1,360	43.6

자료 : 2020 제60회 해남군 통계연보

2) 해남군 인구 및 세대 변화 추이

- 해남군 2015~2019년 최근 5년간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77,517명으로 최근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하락하여 2018년에는 73,286명, 2019년에는 71,806명으로 가장 낮은 인구수를 보임
- 해남군 최근 5년간 세대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35,354세대에서 2018년 34,745세대까지 매년 소폭으로 하락을 하다 2019년에는 34,824세대로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인구 및 세대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수는 시계열적으로 매년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세대당 인구의 하락으로 인해 세대수 추이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표 - 4】 해남군 인구 및 세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	77,517	76,509	74,969	73,286	71,806
세대	35,354	35,231	35,074	34,745	34,824

자료 : 2020 제60회 해남군 통계연보



【그림 - 1】 해남군 인구 및 세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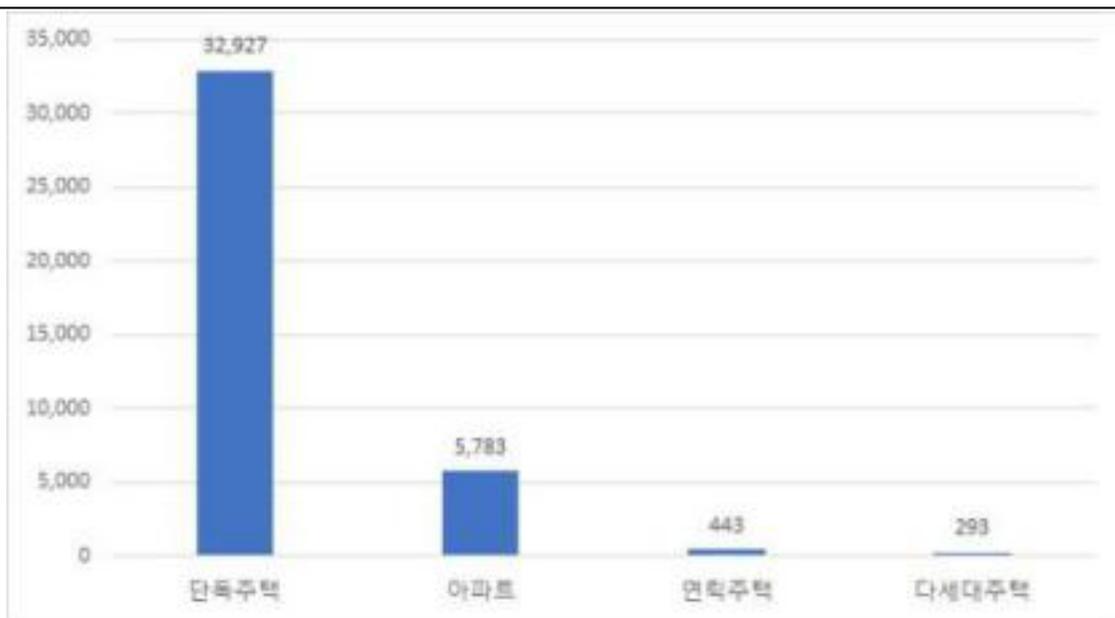
1.4 주택

- 해남군 가구수는 2019년 기준 34,824가구로 2015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 총 주택수는 2015년 32,354호이며 2017년까지 32,886호로 소폭 상승하였다가 2018년과 2019년에 대폭 상승하면서 2019년에는 39,624호로 높아짐
- 2019년 기준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이 32,927호로 약 83.1%로 가장 높으며, 아파트는 5,783호로 전체 주택수 중 약 14.6%를 차지하고 있음
- 주택 보급률은 2015년 91.5%이며, 2019년은 크게 상승하여 113.8%의 수치를 보이고 있음

【표 - 5】 해남군 주택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가구수(가구)	35,354	35,231	35,470	34,745	34,824
주택수(호)	32,354	32,524	32,886	38,380	39,624
단독주택	27,050	27,050	32,889	32,896	32,927
아파트	4,309	4,309	4,692	44,592	5,783
연립주택	441	441	443	443	443
다세대주택	404	404	293	280	293
주택보급률(%)	91.5	91.8	110.6	110.5	113.8

자료 : 2020 제60회 해남군 통계연보



【그림 - 2】 해남군 주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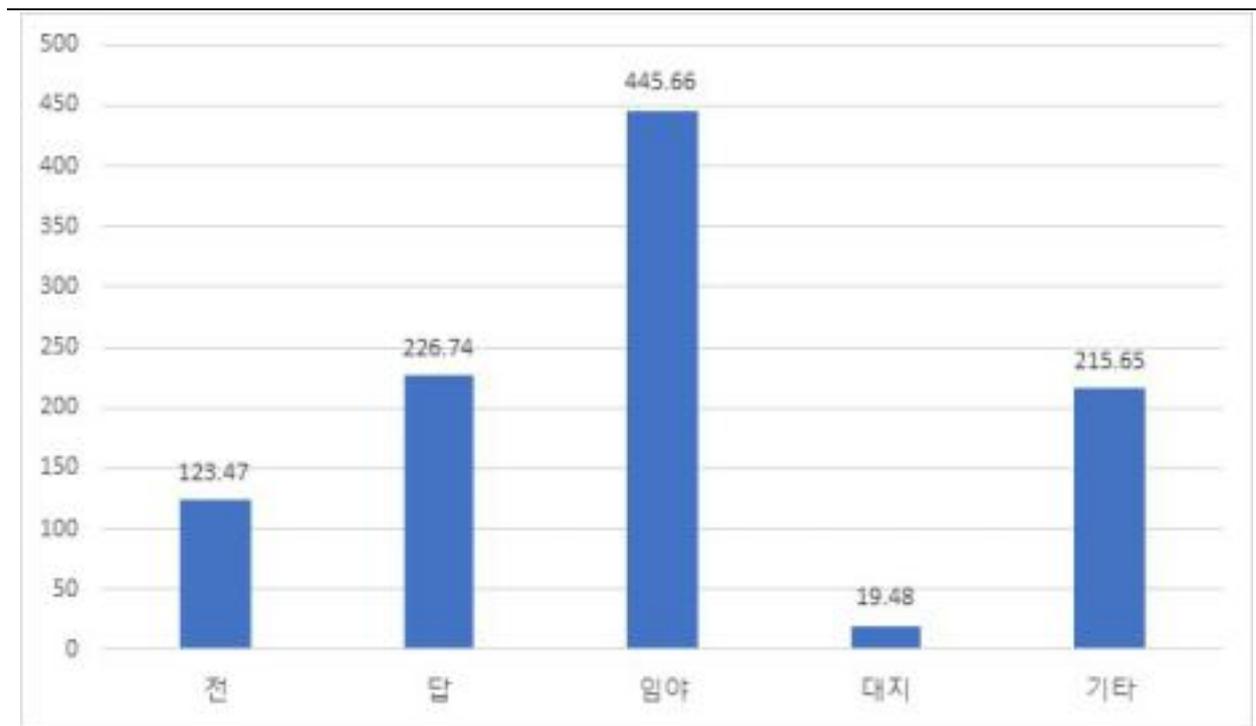
1.5 토지이용현황

- 해남군 전체 토지는 약 1,031km²로 임야가 전체의 약 43.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로는 답이 약 22.00%, 전이 11.9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해남군은 전과 답을 포함한 농경지 면적의 비율이 전체의 약 33.97%로 임야를 제외한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 중심의 토지이용을 보이고 있음

【표 - 6】 토지이용현황

구분	면적(km ²)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해남군	1,031	123.47	226.74	445.66	19.48	215.65

자료 : 2020 제60회 해남군 통계연보



【그림 - 3】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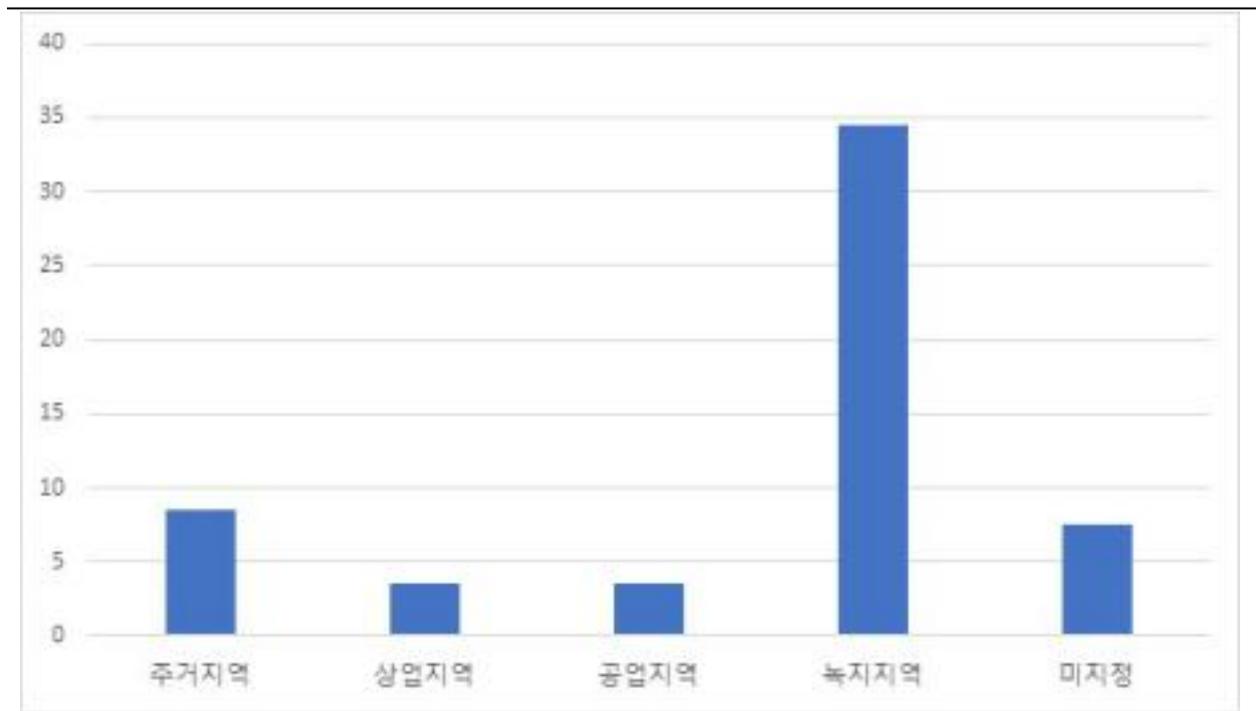
1.6 용도지역현황

- 2019년 기준 해남군 도시지역 용도지역 면적은 총 57.40km²로 나타나며 녹지지역이 전체의 60.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주거지역 14.7%, 공업지역 6.0%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용도지역 면적은 2018년 전년 대비 19.45km²가 늘어난 57.40km²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동시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미지정지역은 90km²에서 소폭 하락한 7.46km²로 나타났음
- 2018년 주거지역은 면적의 약 2배가 상승하였으며, 상업지역은 0.43km²에서 약 9배 상승한 3.50km²로 증가하였음

【표 - 7】 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구분	면적(km ²)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2015	37.95	4.24	0.43	2.32	21.96	9.0
2016	37.95	4.24	0.43	2.32	21.96	9.0
2017	37.95	4.24	0.43	2.32	21.96	9.0
2018	57.40	8.46	3.50	3.48	34.50	7.46
2019	57.40	8.46	3.50	3.48	34.50	7.46

자료 : 2020 제60회 해남군 통계연보



【그림 - 4】 도시지역 용도지역 비율 현황

1.7 산업경제현황

1) 사업체 현황

- 해남군 사업별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19.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2.4%)순으로 나타남
- 사업별 종사자 분포 현황은 제조업이 4,602명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도매 및 소매업이 15.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7% 순으로 나타남

【표 - 8】 사업체 및 종사자 분포현황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총계	5,794	24,886
농업, 임업 및 어업	54	363
광업	14	157
제조업	642	4,60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5	8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3	170
건설업	264	1,940
도매 및 소매업	1,647	3,893
운수업	382	777
숙박 및 음식점업	1,137	2,61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3	206
금융 및 보험업	71	856
부동산업 및 임대업	66	16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1	29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24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5	2,169
교육서비스업	192	1,59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28	3,17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6	42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19	1,168

자료 : 2020 제60회 해남군 통계연보

1.8 기상 및 기후

1) 해남군 기온

- 2019년 기준 해남군 평균 기온은 13.2°이며, 평균 최고 기온은 8월 30.6°, 평균 최저 기온은 1월 -4.7°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평균 기온 변화는 2016년 14.0°에서 꾸준히 하락하여 2019년 13.2°로 0.8°가 하락하여 현재 기온을 유지

【표 - 9】 해남군 기온

구분	기온		
	평 균	평균최고	평균최저
2015	13.9	19.2	9.0
2016	14.0	19.0	9.1
2017	13.4	19.5	7.6
2018	13.2	19.0	7.9
2019	13.2	19.1	7.8
1월	0.5	6.1	-4.7
2월	2.2	8.0	-3.3
3월	6.5	13.2	-1.0
4월	10.9	17.1	4.4
5월	16.7	24.2	9.3
6월	20.5	26.0	15.8
7월	24.2	28.1	21.0
8월	25.6	30.6	21.4
9월	22.0	27.0	18.0
10월	15.8	22.1	9.9
11월	10.1	16.8	3.4
12월	3.6	9.5	-2.1

자료 : 2020 제60회 해남군 통계연보

2) 해남군 강수량

- 해남군 총 강수량은 2017년과 2015년이 각각 725.3mm, 1,157.8mm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2016년에는 1,360.2mm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며, 2019년에는 1,037mm로 나타남
- 2019년 9월이 258.9mm으로 강수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는 10월 223.7mm, 8월 205.2mm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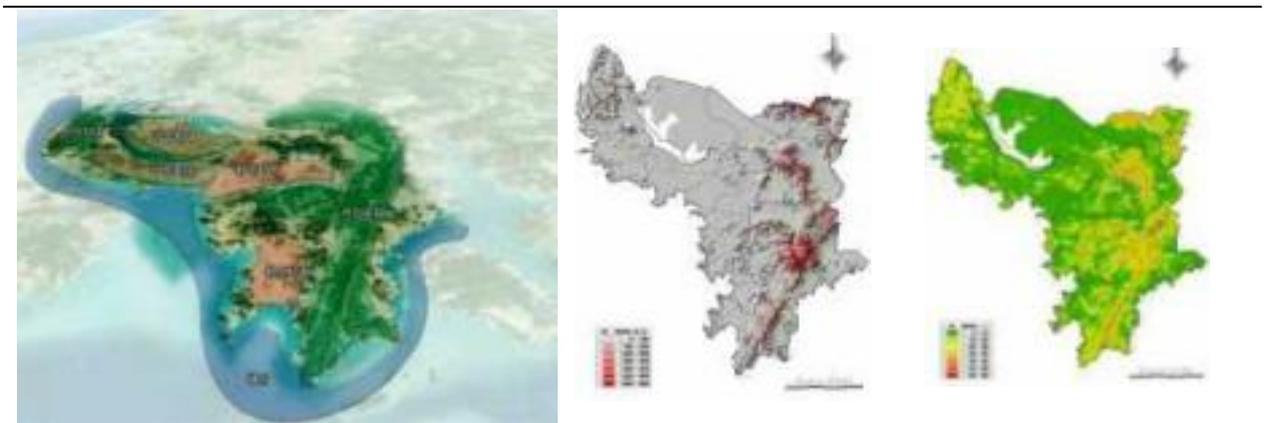
【표 - 10】 해남군 강수량

구분	강수량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157.8	1,360.2	725.3	1,297.1	1,037
1월	31.3	56.3	8.8	44.8	14.5
2월	22	24.1	23.7	24.3	33.5
3월	29.5	93.7	24	147.6	49
4월	173.1	175.7	42.7	120.1	61.1
5월	95.4	111.6	9.6	75.3	99
6월	165.1	103.5	24.4	238.9	30.6
7월	224.3	205.4	162.7	18.8	11.4
8월	155.7	25.1	198.9	204.2	205.2
9월	67.9	194	86.5	128.4	258.9
10월	63.3	228.6	113.3	214.1	223.7
11월	77.4	84.5	2.2	44.6	12.8
12월	52.8	57.7	28.5	36	37.3

자료 : 2020 제60회 해남군 통계연보

1.9 지형 및 지세²⁾

- 해남군은 소백산맥 지맥의 마지막에 위치하여 동부와 북부, 그리고 중부지역에 산악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완만한 구릉지와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삼면이 바다에 접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내륙임
- 해양풍치가 우수하고 해양성기후로 기후가 온화하여 농업과 어업에 적절한 지역임
-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간척지가 널리 분포하고 있고, 특히 화원반도를 중심으로 리아스식의 긴 해안선을 갖고 있어 서남해안의 맑고 청정한 바다를 이용한 각종 수산 양식업의 발전이 가능함
- 또한 영산강지구와 고천암 간척사업을 통하여 많은 농경지가 확보되어 농업분야 등에서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임
- 해남군 중심에 위치한 두륜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가학산이 입지해 있어 동남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이 형성되어 있고, 서쪽은 낮은 구릉지와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어 동고서저형의 지형과 지세를 이루고 있음
- 2017년 기준 표고 분석결과 해남군의 평균 표고는 63.60m이며 100m미만은 820.5km²로 전체의 78.5%를 점유하며, 400m이상은 12.5km²로 전체의 1.2%를 점유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해남군의 평균 경사도는 17.05°이며 경사도 10. 이하가 61.1%, 638.7km²로 15. 이상의 경사지역이 28.9%(302.1km²) 으로 조사됨



【그림 - 5】 해남군 지형 및 지세 (지형 및 지세,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순)

2) 2035 해남군기본계획, 2020

1.10 수계 및 하천³⁾

1) 해남군 하천

- 해남군 하천은 수는 총 30개로 구성되어 있음
- 2019년 기준 총 연장은 155.17km이며, 요개수 연장은 212.50km이며, 이중 기개수 연장은 171.40km로 개소율은 80.66%를 보이고 있음

【표 - 11】 하천 현황

구분	하천수	총연장		요개수		
				기개수	미개수	개소율
2014	30	155.17	212.5	166.1	45.4	78.16
2015	30	155.17	212.5	167.2	45.3	78.6
2016	30	155.17	212.5	168.1	44.4	79.11
2017	30	155.17	212.5	169	43.5	79.53
2018	30	155.17	212.5	171.4	41.1	80.66

자료 : 2020 제60회 해남군 통계연보

구분	내용	
해남천	해남읍 금강산에서 발원하여 해남읍 중심부를 가로질러 고천암 간척지로 흐른다.	
삼산천	삼산면 두륜산에서 발원하여 양촌저수지를 이루며 삼산평야, 어성교를 거쳐 고천암 간척지로 흐른다.	
현산천	현산면 만안리에서 발원하여 구시·저수지를 경유, 신방리앞 들에서 구산천과 합하여 두모수문으로 흐른다.	
옥천천	옥천면 백호리에서 발원하여 옥천평야를 가로질러 마산면 맹진리로 흐른다.	
송지천	송지면 달마산 미황사계곡에서 발원하여 군곡저수지에 들어가 송지면 송암리로 흐른다.	
계곡천	계곡면 당산리에서 발원하여 계곡면둔주포로 흐른다.	

【그림 - 6】 해남군 주요 하천 및 현황도 (2035 해남군기본계획)

3) 2035 해남군기본계획, 2020

1.11 도로 포장율

- 2019년 기준 해남군 도로 총 연장(m)은 587,960m이며, 포장 연장은 455,190m로 포장률은 77%로 나타남
- 포장률은 2015년 75%에서 2016년 77%로 소폭 상승 후 현재까지 변동이 나타나지 않음
- 미포장 도로 또한 2015년 148,080m에서 2016년 132,770m으로 소폭 하락 후 변동이 없음

【표 - 12】 도포 포장 현황

구분	합계	개통연장				비고
		포장	포장률	미포장	미개통	
2015	587,940	439,860	75	148,080	33,700	
2016	587,960	455,190	77	132,770	32,700	
2017	587,960	455,190	77	132,770	32,700	
2018	587,960	455,190	77	132,770	32,700	
2019	587,960	455,190	77	132,770	32,700	

자료 : 2020 제60회 해남군 통계연보

1.12 주차장

- 2019년 기준 해남군 주차장은 총 2,423개소 20,264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상은 공영주차장만 존재하고 있으며, 노외는 공영과 민영주차장이 존재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민영주차장으로 개소수가 2019년 372개소로 전년 819개소 대비 대폭 상승하였으며, 면수는 17,532로 다른 주차장 시설에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 13】 주차장 현황

연도	합계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민영)	
			공영		공영		민영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2015	875	13,889	8	696	44	5,210	4	2,785	819	5,198
2016	883	14,582	8	696	52	5,903	4	2,785	819	5,198
2017	857	9,548	8	696	26	869	4	2,785	819	5,198
2018	862	9,770	8	696	31	1,091	4	2,785	819	5,198
2019	2,423	20,264	8	696	43	2,036	-	-	2,372	17,532

자료 : 2020 제60회 해남군 통계연보

1.13 주요 관광자원4)

-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두륜산권, 땅끝권, 우수영권, 3개의 관광권 설정
- 한반도 최남단의 서남 해안에 돌출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해남군은 3면이 바다와 접해있는 리아스식 해안과 다양한 기암괴석 등이 전역에 펼쳐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해수욕장이 발달한 지역임
- 또한 다양한 역사적 의미가 담긴 다양한 관광자원이 널리 분포하여 있으며, 해남군은 지역적 특징 및 관광요소 등을 묶어 두륜산권 관광지, 땅끝권 관광지, 우수영권 관광지 등 총 3개의 관광권을 설정함
- 두륜산권 관광지는 두륜산 도립공원과 북쪽의 가학산을 활용한 산악형 관광이 집중되어 있으며, 우수영권 관광지는 명량대첩 승전지인 우수영 및 공룡 화석지 등 역사적 기반으로 한 관광자원이 위치함
- 사업대상지가 위치한 땅끝권 관광지는 한반도 최남단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관광지로서 땅끝 전망대, 땅끝탑, 땅끝오토캠핑장과 함께 미항사, 대웅전 등 역사자원도 위치함
 - 땅끝권역 관광자원 : 땅끝전망대, 모노레일, 송호·사구 해수욕장, 해양자연사 박물관, 황토나라 테마촌 등

【표 - 14】 해남군 관광현황

구분	위치	주요내용
두륜산권 관광지	삼산면	- 두륜산 도립공원과 도립공원 내 위치한 대흥사, 북암, 일지암, 성보박물관등이 함께 위치한 관광지역 - 해남의 대표 관광코스인 자리 잡은 두륜산케이블카와 두륜산 산나물로 만든 웰빙 음식촌 등이 위치
우수영권 관광지	문내면	- 충무공 이순신을 기념하는 우수영관광지와 우항리 공룡화석지, 낙조전망대, 고천암철새도래지 등이 위치한 관광지역 - 명량대첩이 일어난 해남과 진도 사이 울돌목이 내려다보이는 우수영관광지와 걷기 좋은 해안길인 해안누리조가 조성된 낙조전망대가 위치함
땅끝권 관광지	송지면	- 송호해수욕장, 송평해수욕장 등 땅 끝에 위치한 해변과 달마산 미항사, 윤두서고택 등이 함께 위치한 관광지역 - 땅끝천년숲옛길, 삼남길 등 트레일 워킹코스가 조성되어 있으며, 일출 및 일몰이 아름다운 땅끝 전망대 등이 위치함

자료 : 해남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4) 송지 산정5일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해남군, 2021.

- 해남군 주요관광자원 방문객 수 추이는 2019년 대비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한 휴관 휴장, 축제 취소로 전체적인 관광객은 감소하였으나,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안정화 및 야외시설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증가 또는 감소폭이 적음

【표 - 15】 해남군 최근 3년 관광지점별 관광객 통계

구분	관광지점	2018	2019	2020	비고
	계	1,351,930	2,086,010	1,750,041	22개소
입장권 10개소	공룡박물관	173,643	165,972	159,056	
	땅끝전망대	327,953	298,257	263,776	
	오토캠핑장	13,443	11,962	11,483	
	우수영관광지	109,931	109,847	71,585	
	두륜미로파크	17,805	24,574	25,513	
	고산유적지	64,272	79,471	46,026	
	오시아노캠핑장	-	37,685	54,753	19년부터 반영
	해양자연사박물관	-	36,369	31,766	19년 5월 개관
	흑석산자연휴양림	26,432	25,159	6,304	
	파인비치골프장	52,021	96,634	114,802	18년 7월부터 반영
무인 계수기 12개소	4est수목원	-	52,762	102,618	19년 1월부터 반영
	대흥사	209,324	237,939	162,547	18년 1월부터 반영
	미황사	91,184	103,751	80,453	18년 1월부터계속
	오소재	9,601	25,316	19,329	18년 4월부터 반영
	케이블카	-	251,335	211,762	19년 1월부터 반영
	땅끝모노레일	184,719	216,905	156,037	18년 4월부터 반영
	동해김치마을	71,602	54,685	9,158	18년 4월부터 반영
	금강골약수터	-	94,401	151,459	19년 1월부터 반영
	도솔암	-	-	43,294	20년 1월부터 반영
	목포구등대	-	-	24,988	20년 1월부터 반영
	주작산입구	-	-	1,308	20년 6월부터 반영
	주작산정상	-	-	2,024	20년 6월부터 반영
기타	미남축제	-	136,626	-	19. 10. 31. ~ 11. 3.
	해바라기농장	-	26,360	-	19. 7. 13. ~ 8. 11.

자료 : 2021. 2. 19자 관광과 자료

1.14 문화재

- 해남군은 총 79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남군 내 지정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지정 문화재 36점, 지방지정문화재 31점, 문화재자료 11점, 등록문화재 1점 등 문화재 자원이 많은 편임

【표 - 16】 해남군 문화재 현황

문화재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국가등록 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 민속 문화재	국가 무형 문화재	유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무형 문화재	문화재 자료			
2019	79	36	2	19	6	2	4	2	1	43	13	14	1	3	11	1
해남읍	12	7	1	19	1	-	2	-	-	5	2	-	-	1	2	-
삼산면	25	15	1	3	1	1	1	-	-	10	6	2	-	-	2	-
화산면	2	0	-	11	-	-	-	-	-	2	-	2	-	-	-	-
현상면	4	3	-	-	1	-	-	2	-	1	-	1	-	-	-	-
송지면	9	5	-	-	1	1	-	-	-	4	3	1	-	-	-	-
북평면	1	0	-	3	-	-	-	-	-	1	-	1	-	-	-	-
북일면	5	0	-	-	-	-	-	-	-	5	-	2	-	-	3	-
옥천면	3	0	-	-	-	-	-	-	-	3	1	2	-	-	-	-
계곡면	2	0	-	-	-	-	-	-	-	2	-	-	-	1	1	-
마산면	3	0	-	-	-	-	-	-	-	3	1	1	-	-	1	-
황산면	2	1	-	-	-	-	1	-	-	1	-	-	1	-	-	-
산이면	2	1	-	-	1	-	-	-	-	1	-	-	-	-	1	-
문내면	4	3	-	1	1	-	-	-	1	1	-	-	-	1	-	-
화원면	5	1	-	1	-	-	-	-	-	4	-	2	-	-	1	1

자료 : 2020 제60회 해남군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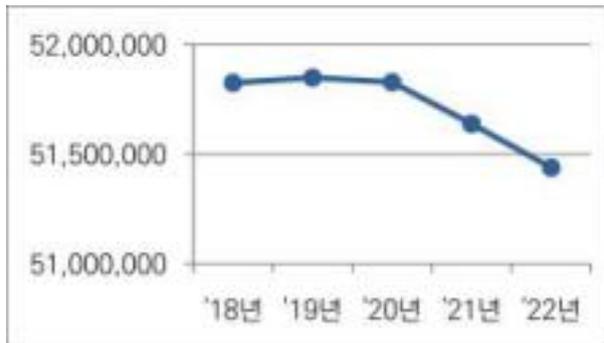
2 장애인현황 및 시설현황

2.1 전국 장애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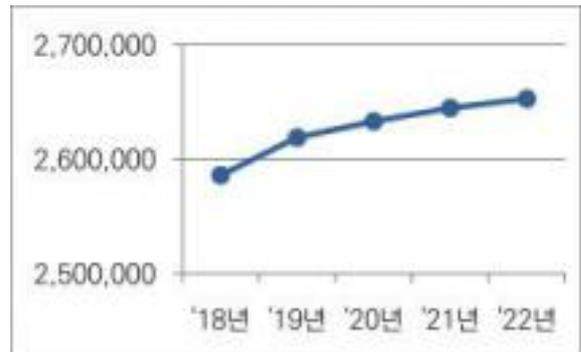
- 2022년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 수 2,652,860명, 등록장애인 비율 5.16%
 - 전국 인구수는 2020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등록 장애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 17】 전국 인구수 및 등록장애인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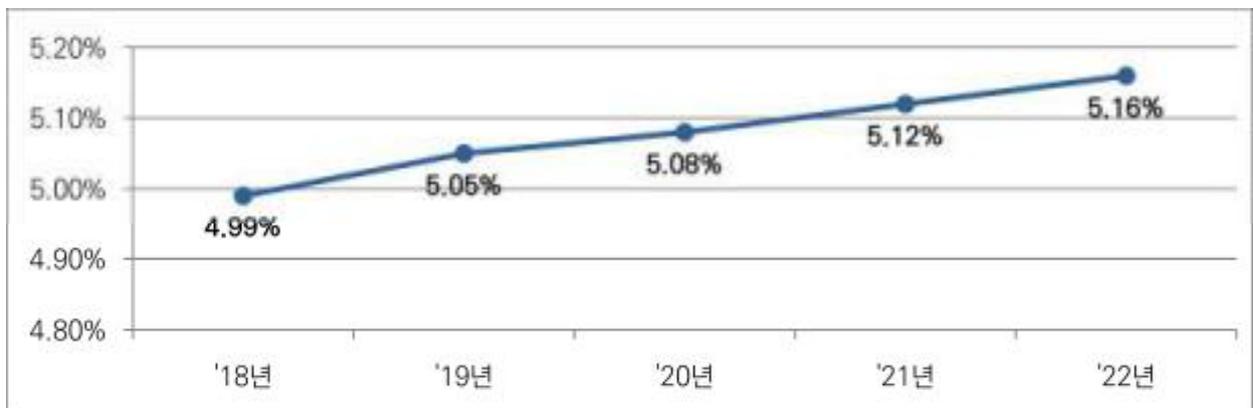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전국 총인구수(명)	51,826,059	51,849,861	51,829,023	51,638,809	51,439,038	총 인구 감소
전국 등록장애인수(명)	2,585,876	2,618,918	2,633,026	2,644,700	2,652,860	장애인 인구 증가
전국 등록장애인 비율(%)	4.99%	5.05%	5.08%	5.12%	5.16%	장애인 비율 증가



【그림 - 7】 전국 총인구수(명)



【그림 - 8】 전국 등록장애인수(명)



【그림 - 9】 전국 등록장애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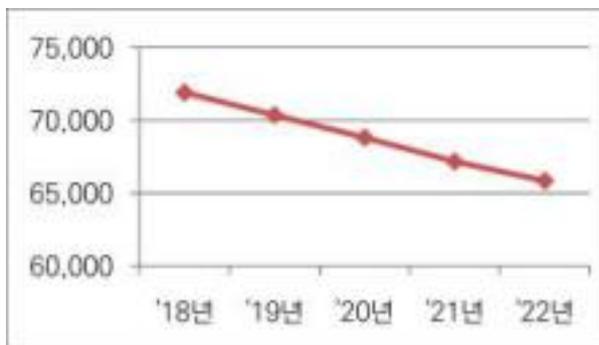
2.2 해남군 등록장애인 현황

1) 해남군 등록장애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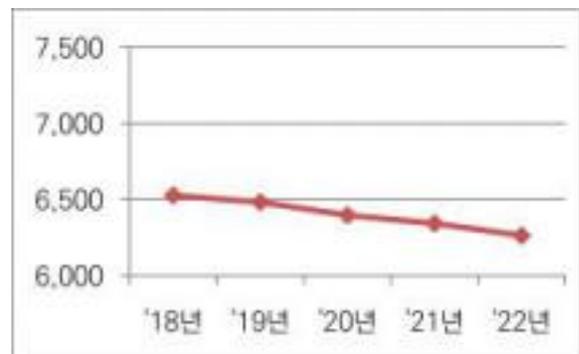
- 2022년 기준, 해남군 내 등록장애인 수 6,263명, 등록장애인 비율 9.51%
- 2018년 이후 해남군 총인구수와 등록장애인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해남군 총인구 수 대비 등록장애인 수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22년 기준 해남군 등록장애인 비율은 전국 등록장애인 비율 5.16%의 약 2배인 9.51%임

【표 - 18】 해남군 총인구수 및 등록장애인 수 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해남군 총인구수(명)	71,901	70,354	68,806	67,166	65,831	총 인구 감소
해남군 등록장애인수(명)	6,527	6,483	6,397	6,343	6,263	장애인 인구 감소
해남군 등록장애인 비율(%)	9.08%	9.21%	9.30%	9.44%	9.51%	장애인 비율 증가



【그림 - 10】 해남군 총인구수(명)



【그림 - 11】 해남군 등록장애인수(명)



【그림 - 12】 전국 및 해남군 등록장애인 비율(%)

2) 해남군 읍·면 단위 장애인 현황

- 해남군 해남읍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는 1,519명으로, 이는 해남군에서 가장 많은 수이며 해남군 전체 장애인 수의 약 24%를 차지함
- 해남군에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체장애로 2,984명이며, 해남군 전체 장애인 수의 약 48%를 차지함

【표 - 19】 해남군 읍·면단위 장애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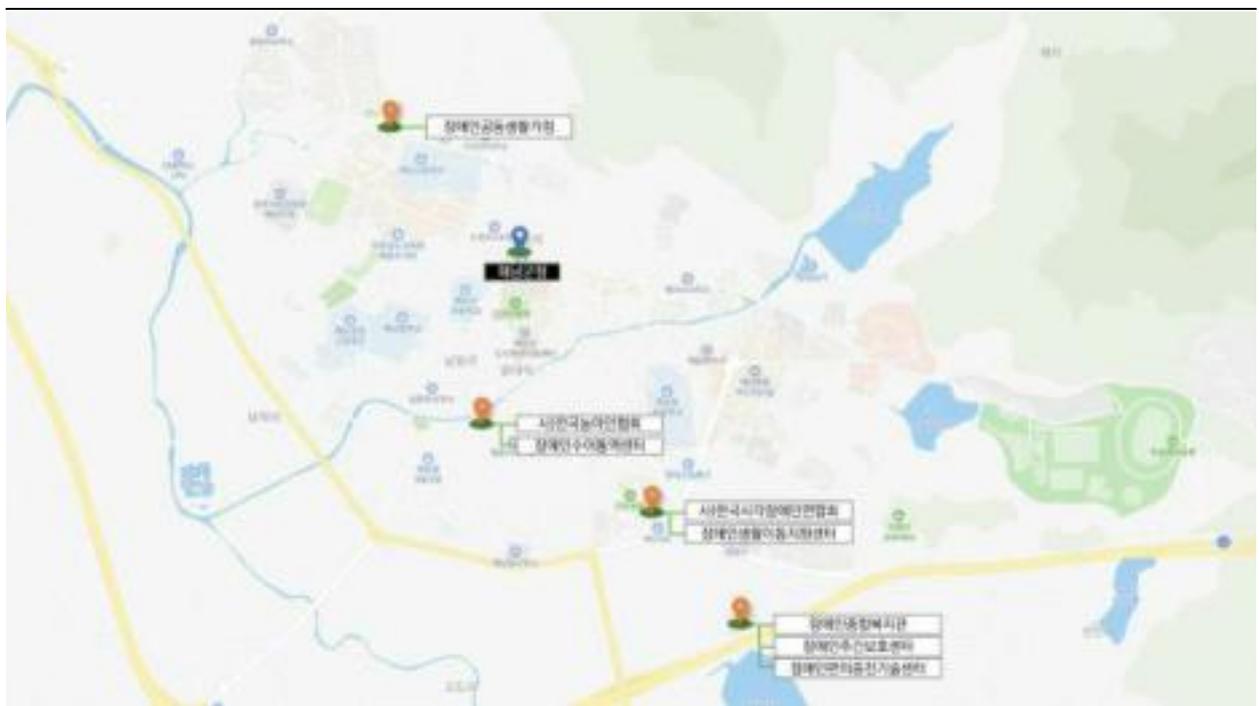
	유형별비율	총계	해남읍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지체	47.64%	2,984	646	135	214	146	311	150	107	183	120	149	267	177	199	180
청각	14.72%	922	167	46	53	53	91	46	44	74	39	44	66	70	80	49
시각	10.00%	626	148	24	36	39	72	28	23	30	29	29	44	44	46	34
지적	9.56%	599	197	16	28	35	43	27	8	50	13	27	45	38	42	30
뇌병변	7.17%	449	118	20	28	17	48	22	12	26	11	20	41	32	32	22
정신	5.35%	335	142	9	16	15	27	9	11	23	11	9	26	14	12	11
신장	3.18%	199	61	6	8	9	23	9	10	6	15	4	17	9	12	10
자폐성	0.54%	34	11	1	2	2	3	0	1	6	1	1	1	1	4	0
언어	0.49%	31	10	1	0	1	3	1	1	1	1	2	1	5	2	2
장루.요루	0.42%	26	6	0	0	1	1	2	0	2	1	0	6	5	1	1
호흡기	0.35%	22	1	0	0	1	0	4	2	2	2	0	4	0	3	3
간	0.24%	15	4	1	0	2	2	0	1	0	0	1	2	1	1	0
뇌전증	0.24%	15	5	0	2	1	2	1	0	1	1	0	0	1	1	0
안면	0.06%	4	2	1	0	0	0	0	0	0	0	0	1	0	0	0
심장	0.03%	2	1	0	0	0	0	0	0	0	1	0	0	0	0	0
소계	100%	6,263	1,519	260	387	322	626	299	220	404	245	286	521	397	435	342
지역별 비율		100%	24.25%	4.15%	6.18%	5.14%	10.00%	4.77%	3.51%	6.45%	3.91%	4.57%	8.32%	6.34%	6.95%	5.46%

2.3 해남읍 장애인단체 및 시설 운영 현황

- 해남읍에는 장애인단체 2개소와 장애인시설 6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표 - 20】 해남읍 내 장애인단체 및 시설 운영 현황

구 분	단체명	주 소	시설면적	비고
장애인 단 체	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남지회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31	265㎡	
	사) 전남농아인협회 해남군지회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읍사무소길 1, 2층	175㎡	
장애인 시 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31	265㎡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읍사무소길 1, 2층	175㎡	
	장애인종합복지관	전남 해남군 해남읍 신안길 2-20	751㎡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신안길 2-20	166㎡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신안길 2-21	9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선재의 집)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2길 36, A동 206호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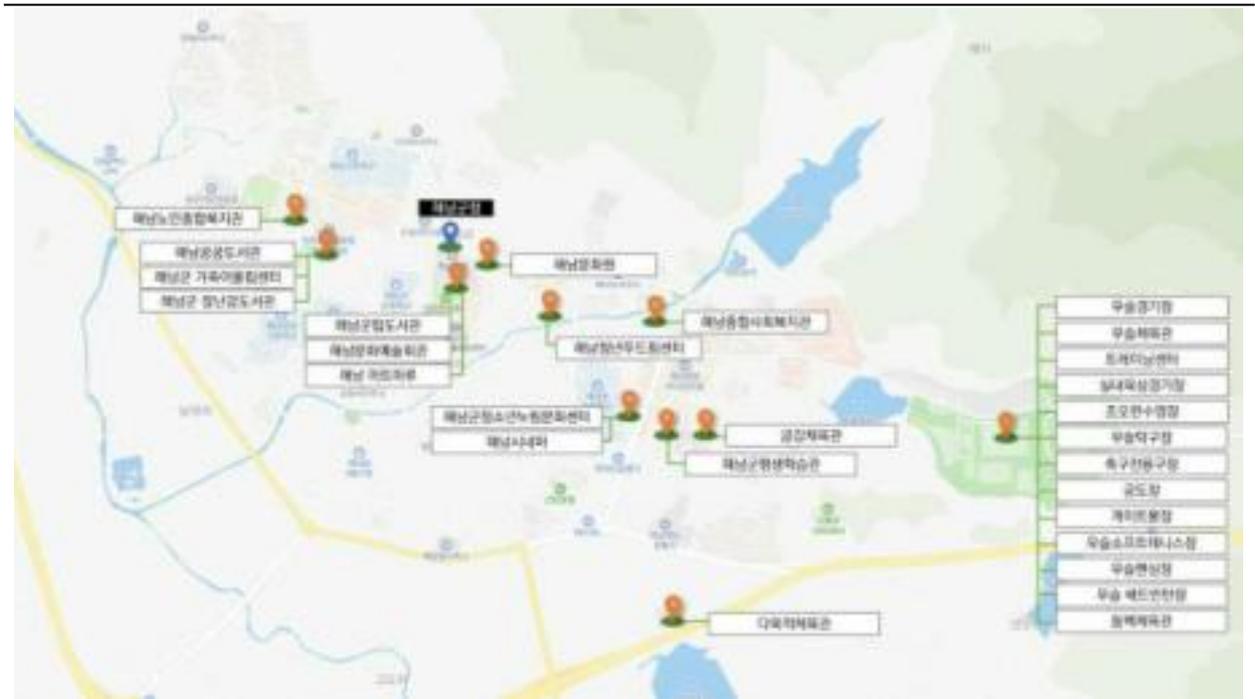
【그림 - 13】 해남읍 장애인단체 및 시설 위치 현황

2.4 해남읍 체육, 문화시설 현황

- 해남읍에 체육, 문화센터는 총 29개소가 있음

【표 - 21】 해남읍 내 체육, 문화시설 현황

시설명	주소	시설면적	비고
금강체육관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36	1,421㎡	
평생학습관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54	1,741㎡	
해남문화예술회관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1~2층	6,033㎡	
해남군립도서관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2~5층		
작은영화관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22, 1층	136석(장애인석 4석)	
청소년누림문화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22, 2~3층	2,171㎡	
해남노인종합복지관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서림길 16	1,646㎡	
해남가족어울림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서림길 6-20	1,167㎡	
해남군장난감도서관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서림길 6-20, 2층		
해남공공도서관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서성1길 33	2,257㎡	
해남아트마루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2길 25	393㎡	
해남문화원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4길 2	961㎡	
해남장애인종합복지관	전남 해남군 해남읍 신안길 2-20	1,587㎡	
다목적체육관	전남 해남군 해남읍 신안길 2-21	681㎡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4-14	2,374㎡	
해남청년두드림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천변2길 61	349㎡	
게이트볼장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72	1,312㎡	
공도장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72	5,625㎡	
동백체육관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72	39,600㎡	
실내육상경기장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72	2,161㎡	
우슬 경기장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72	39,702㎡	
우슬 배드민턴장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72	1,060㎡	
우슬 소프테니스장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72	2,983㎡	
우슬 체육관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72	3,085㎡	
우슬 탁구장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72	883㎡	
우슬 트레이닝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72	411㎡	
우슬 펜싱장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72	751㎡	
조오련 수영장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72	1,954㎡	
축구 전용구장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72	93,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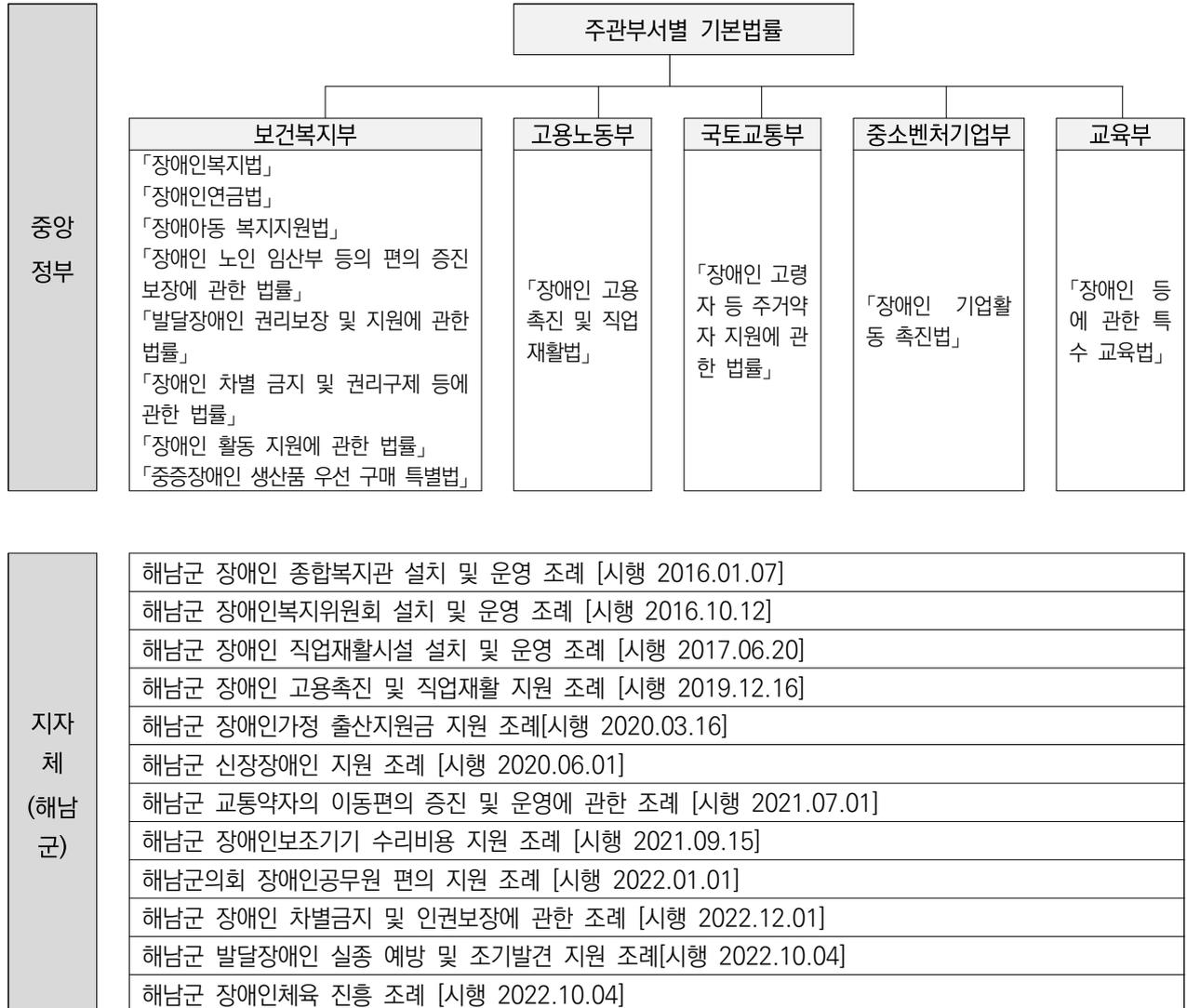
【그림 - 14】 해남읍 체육, 문화시설 현황

3

장애인 관련 법률·정책·제도

3.1 장애인 관련 법률

- 국내 장애인 관련 법률 체계는 정부 주관부서별 기본법률과 지자체 차원의 조례로 구성됨



【그림 - 15】 장애인 관련 법률

【표 - 22】 장애인 관련 법률 주요내용

소관부처	관련법	내용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에 대한 지원, 벌칙 등
	장애인 연금법	연금의 종류 및 내용, 기초급여액, 부가급여액,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아동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 복지지원의 내용, 복지지원 제공기관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접근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시설주의 의무, 벌칙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권리 보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과태료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벌칙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 고용의 무 및 부담금,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 벌칙 등
국토교통부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 주택임대 및 개조비용지원, 주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중소벤처 기업부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차별적 관행 시정,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기업 관련 확인, 과태료 등
교육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 교육법	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특수교육대상자선정 및 취학, 교육 과정의 운영, 벌칙 등

1) 장애인 복지법

-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 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 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동법 제1조 목적)
- 아래는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건립에 관련한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장애인의 권리, 차별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규정임

【표 - 23】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구분		조문내용	비고
법 제4조	장애인의 권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 제8조	차별금지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 시킬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 제28조	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7.9.19.>	
법 제57조	장애인 복지 시설의 이용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30.] 	

<p>법 제58 조</p>	<p>장애인 복지시설</p>	<p>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 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령 제36조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법 제59 조</p>	<p>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3. 30., 2019. 1. 15.> ⑤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 「의료법」에 따른다. <개정 2011. 3. 30., 2019. 1. 15.> 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3. 30., 2019. 1. 15.></p>	
<p>법 제79 조</p>	<p>비용 부담</p>	<p>①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 규칙 제41 조</p>	<p>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p>	<p>①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조·가공 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6. 30.>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6. 30.></p>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목적)

【표 - 2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구분	조문내용	비고
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법 제27조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3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활동시설 설치 2.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이용 및 정보 제공 3. 여가생활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확보 4. 생활체육 활성화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목적)

【표 - 2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구분		조문내용	비고
법 제4조	접근권	①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 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 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동법 제1조 목적)

【표 - 2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주요 내용

구분		조문내용	비고
법 제9조	지역장애 아동지원센터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2.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4.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5.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법 제10 조</p>	<p>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p>	<p>① 지역센터는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11.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12. 그 밖에 복지지원과 관계된 기관 또는 단체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센터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사이의 원활한 연계·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시행 령 제6조</p>	<p>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 교사의 배치</p>	<p>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년 3월 1일부터 2.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년 3월 1일부터 3.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년 3월 1일부터 	
<p>시행 규칙 제3조</p>	<p>지역장애아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p>	<p>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p>	

3.2 장애인 관련 정책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년~2027년)

- 2023년 3월 9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심의·확정
-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
-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사회 전 영역을 포괄하는 9대 분야, 30개 중점과제, 74개 세부과제 제시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를 추진
- 개인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자립 주거결정권 강화
- 이용자 욕구에 서비스 선택이 가능한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 영유아부터 고등 평생교육까지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고도화
-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
-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직무개발 등을 통한 장애인 고용 지원 확대
-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을 늘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전국에 조성해 일상에서 생활체육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가시간 확대
-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
- 보호자 부재 시, 발달장애인 단기간(7일) 긴급돌봄 도입
- 문화예술시설, 정보, 접근성 및 장애예술활동 지원 강화 등으로 문화예술 향유
-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보급을 통하나 디지털 미디어 참여 확대
-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 재난안전 보장 강화
-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리보장 및 정책 추진기반 강화

①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결정권 강화

비전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목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자복지)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 ◆ (사회서비스 고도화)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글로벌 스탠다드)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

<p>9대 정책 분야</p> <p>30대 중점 과제</p> <p>74개 세부 추진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장애인 생활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 ▪ 장애인 자립 및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 ▪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반 고도화 	<h2>②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 의료체계 강화</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확립 ▪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고도화 ▪ 혁신기술 기반 장애인 헬스케어 활성화
	<h2>③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조기발견 및 영유아 교육지원 강화 ▪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h2>④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및 제도 선진화 ▪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직업훈련 확대 ▪ 장애인 벤처·중소기업 지원
	<h2>⑤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 관광 여가 확대</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체육 이용환경 지원 확대 ▪ 장애인 관광 향유 증진 기반 확충 	<h2>⑥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 장애예술활동 지원 강화 ▪ ICT기반 정보격차 해소·사회참여 확대 ▪ 미디어 접근권 보장 강화
	<h2>⑦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 재난안전 보장 강화</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및 이동 보장 ▪ 일상생활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h2>⑧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강화 ▪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지원 ▪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및 차별 해소 ▪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h2>⑨ 장애인 정책 추진기반 강화</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개념 확대 ▪ 장애인 정책조정 거버넌스 강화 ▪ 장애인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 장애인권리보장원 설치 	

【그림 - 16】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전략

2)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건복지정책(2022)」

-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크게 5개 부문(서비스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건강·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 강화)으로 나누어 총 22개의 중점정책을 발표함
-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아동수당 인상, 일자리 사업확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운영 강화 등이 있음



【그림 - 17】 장애인 보건복지정책(2022)의 중점 정책

3) 해남군 장애인 관련 정책 현황

【표 - 27】 해남군 장애인 정책 현황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급여액(18~64세까지): 20,000 ~ 323,180원 -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장애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6만원 - 시설수급자 : 3만원 	
장애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자는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장애인: 월 9만원~22만원 중증장애인이 아닌자: 월 3만원~ 11만원 	
장애아동보육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2세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이하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세~만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0~2세 장애아동 478,000원 - 만3~5세 누리장애아동 478,000원 (방과후 장애아동 : 239,000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 반별보육료 상한액(방과후 장애아동 :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여성장애인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에겐 지원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제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간(1구간)을 적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공단 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장애 검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자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에 신청
발달재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17만원~25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인·지적 장애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에게 교부함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 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사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 지원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0,000원을 지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 른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 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및 방 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 - 서비스 대상자에게 활동지원 등급에 해 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 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납부하고 바 우처 지원액을 사용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 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 아동당 연 840시간 범위 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봄이 가정에서 돌 봄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 에게 일정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 고용 서비스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 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인 일자리 지원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 주5일 25시간 - 월 보수 1,260,220원 - 월 운영비 153,330원	사군구 및 위탁기관에서 모집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 산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사도당 1개소 (17개 지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수행기관 운영지원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 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 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 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군·구에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 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 는 자	- 대여한도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담보범위내) 대여이자:최고 연 2%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읍·면·동에 신청
주간 보호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등을 내방 이용
장애인 복지관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 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 재할, 직업재할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지체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 군내 거주등록 지체장애인 (보호자 포함)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해남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 등록장애인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 - 이용요금 : 실비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 센터에 신청
수화통역 센터 운영	- 청각·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신청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시·도지사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개 시·도 협회 및 시·군·구지회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전남 해남군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청각장애 아동인공 달팽이관 설비지원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면동에 신청

3.3 장애인 관련 제도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Barrier Free)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는 제도

(1) 주요 개정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서 7까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법제화 (2015년 1월 28일 개정/2015년 7월 29일 시행)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을 받아야 함

(2) BF인증 대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른 지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공원시설

(3) BF인증 기대효과

- 이용자의 편의 증진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접근, 사용이 편리한 환경 조성
 - 안전한 보행, 차량 속도 저감 등 이용자의 안전 증진
- 사용자의 사회 기여 증대
 -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건축물 등을 제공하여 사회의 환경 개선에 기여
-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 조성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사회환경 구축

(4) BF인증절차



【그림 - 1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절차

(5) BF인증시기 및 유효기간

【표 - 28】 BF인증시기 및 유효기간

구분	인증 시기	유효 기간
예비인증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신청	-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유효 - 본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 상실
본인증	시설물 공사가 끝난 후에 신청(중공검사, 사용승인 등 관련 법에 따른 공사 완료 또는 교통수단 완공 시점)	5년

(6) BF인증 등급

【표 - 29】 BF인증 등급

인증등급	평가점수	지표의 의미	비고
최우수	인증심사 기준 만점의 100의 90 이상	우수 등급 기준보다 높은 기준	우수 기준을 전제로 우수 기준 보다 높은 수준
우수	인증심사 기준 만점의 100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법적 기준 준수 또는 일반 등급 기준보다 높은 기준	「장애인의 편의법」, 「교통약자법」을 준수하는 수준 또는 일반 기준을 전제로 일반 등급보다 높은 수준
일반	인증심사 기준 만점의 100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법적 기준 준수	「장애인의 편의법」, 「교통약자법」을 준수하는 수준

- 인증 기준의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7) BF 건축물 인증평가 항목

【표 - 30】 BF 건축물 인증평가 항목

대분류	소분류	평가항목	배점
1.매개시설	1.1 접근로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보행로	6
		1.1.2 유효폭	3
		1.1.3 단차	3
		1.1.4 기울기	3
		1.1.5 바닥마감	3
		1.1.6 보행장애물	2
		1.1.7 덮개	2
	1.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6
		1.2.2 주차면수 확보	4
		1.2.3 주차구역 크기	4
		1.2.4 보행 안전통로	4
		1.2.5 안내 및 유도표시	3
	1.3 출입구(문)	1.3.1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	6
		1.3.2 주출입문의 형태	3
		1.3.3 유효폭	3
		1.3.4 단차	3
		1.3.5 전면유효거리	2
1.3.6 손잡이		2	
1.3.7 경고블록		2	
2.내부시설	2.1 일반출입문	2.1.1 단차	3
		2.1.2 유효폭	3
		2.1.3 전후면 유효거리	3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3
	2.2 복도	2.2.1 유효폭	3
		2.2.2 단차	3
		2.2.3 바닥마감	2
		2.2.4 보행장애물	2
		2.2.5 연속손잡이	2
	2.3 계단	2.3.1 형태 및 유효폭	3
		2.3.2 철타면 및 디딤판	3
		2.3.3 바닥마감	2
		2.3.4 손잡이	2
		2.3.5 점형블록	2
	2.4 경사로	2.4.1 유효폭	3
		2.4.2 기울기	3
		2.4.3 바닥마감	2
		2.4.4 활동공간 및 휴식참	2
		2.4.5 손잡이	2
	2.5 승강기	2.5.1 전면활동 공간	2
		2.5.2 통과유효폭	2
2.5.3 유효바닥 면적		2	
2.5.4 이용자 조작설비		3	
2.5.5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2	
2.5.6 수평손잡이		2	
2.5.7 점자블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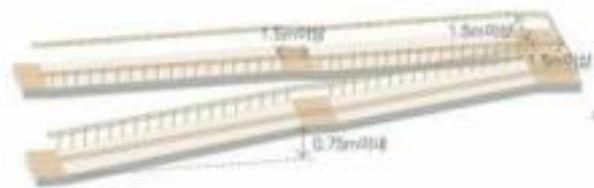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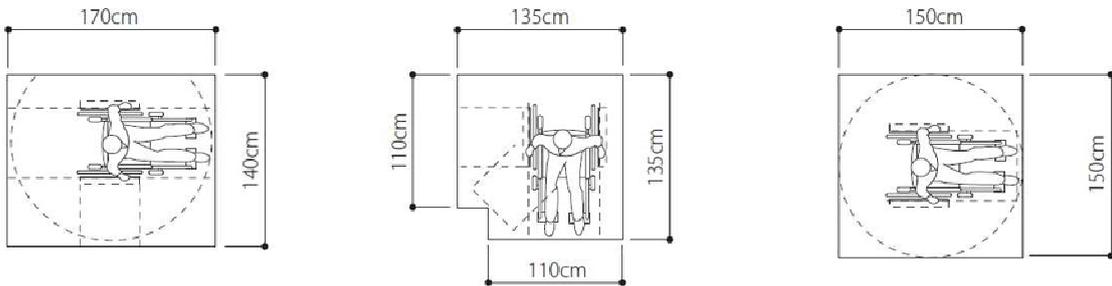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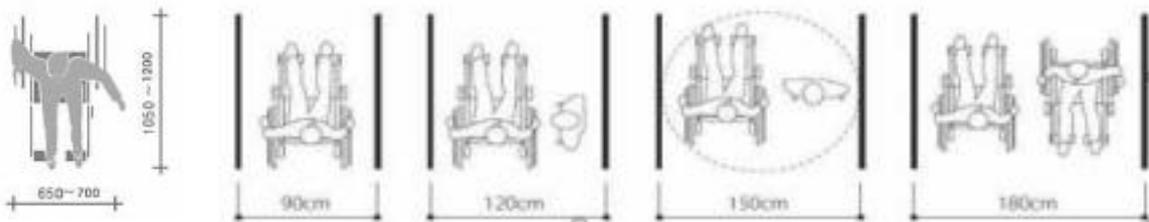
3.위생시설	3.1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10
		3.1.2 안내표지판	5
	3.2 화장실 접근	3.2.1 유효폭 및 단차	6
		3.2.2 바닥마감	4
		3.2.3 출입구(문)	3
	3.3 대변기	3.3.1 칸막이 출입문	5
		3.3.2 활동공간	3
		3.3.3 형태	3
		3.3.4 손잡이	3
		3.3.5 기타설비	3
	3.4 소변기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6
	3.5 세면대	3.5.1 형태	3
		3.5.2 거울	3
		3.5.3 수도꼭지	3
3.6 욕실	3.6.1 구조 및 마감	3	
	3.6.2 기타설비	3	
3.7 샤워실/탈의실	3.7.1 구조 및 마감	3	
	3.7.2 기타설비	3	
4.안내시설	4.1 안내 설비	4.1.1 안내판	4
		4.1.2 점자블록	3
		4.1.3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3
		4.1.4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3
4.2 경보/피난설비	4.2.1 시각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	3	
5.기타시설	5.1 객실 및 침실	5.1.1 설치율	5
		5.1.2 설치위치	5
		5.1.3 통과유효폭	3
		5.1.4 활동공간	3
		5.1.5 침대구조	2
		5.1.6 객실바닥	2
		5.1.7 유효폭 및 단차(화장실)	3
		5.1.8 유효 바닥면(화장실)	3
		5.1.9 손잡이(화장실)	2
		5.1.10 점자표지판(기타설비)	3
		5.1.11 설치높이(기타설비)	2
		5.1.12 초인등(기타설비)	2
	5.2 관람석/열람석	5.2.1 설치율	4
		5.2.2 설치위치	3
		5.2.3 관람석 및 무대의 구조	4
		5.2.4 열람석의 구조	2
	5.3 접수대/안내데스크	5.3.1 설치위치	2
		5.3.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3
	5.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5.4.1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	2
		5.4.2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2
5.4.3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2	
5.5 피난구 설치	5.5.1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3	
	5.5.2 피난의 구조	3	
5.6 임산부 휴게시설	5.6.1 접근 유효폭 및 단차	2	
	5.6.2 내부 구조	3	
6.기타설비	6.1 비치용품	6.1.1 비치하여야 할 용품	3
7.종합평가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5%(평가항목의 총점 기준)	
총 지표수	94개	총 배점	288

(8) 장애 특성별 주안점

▪ 휠체어사용자

【표 - 31】 휠체어사용자 특성 및 건축적 배려사항

	특성(고려사항)	건축적 배려사항
휠체어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차, 경사면, 통과 유효폭 등에 따른 활동 제약이 큼 - 앉아서 생활하므로 상체도달 범위가 낮고 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차가 없게 만들고, 부득이하게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 경사로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설치 - 회전하거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공간 확보 및 적절한 높이에 조작 버튼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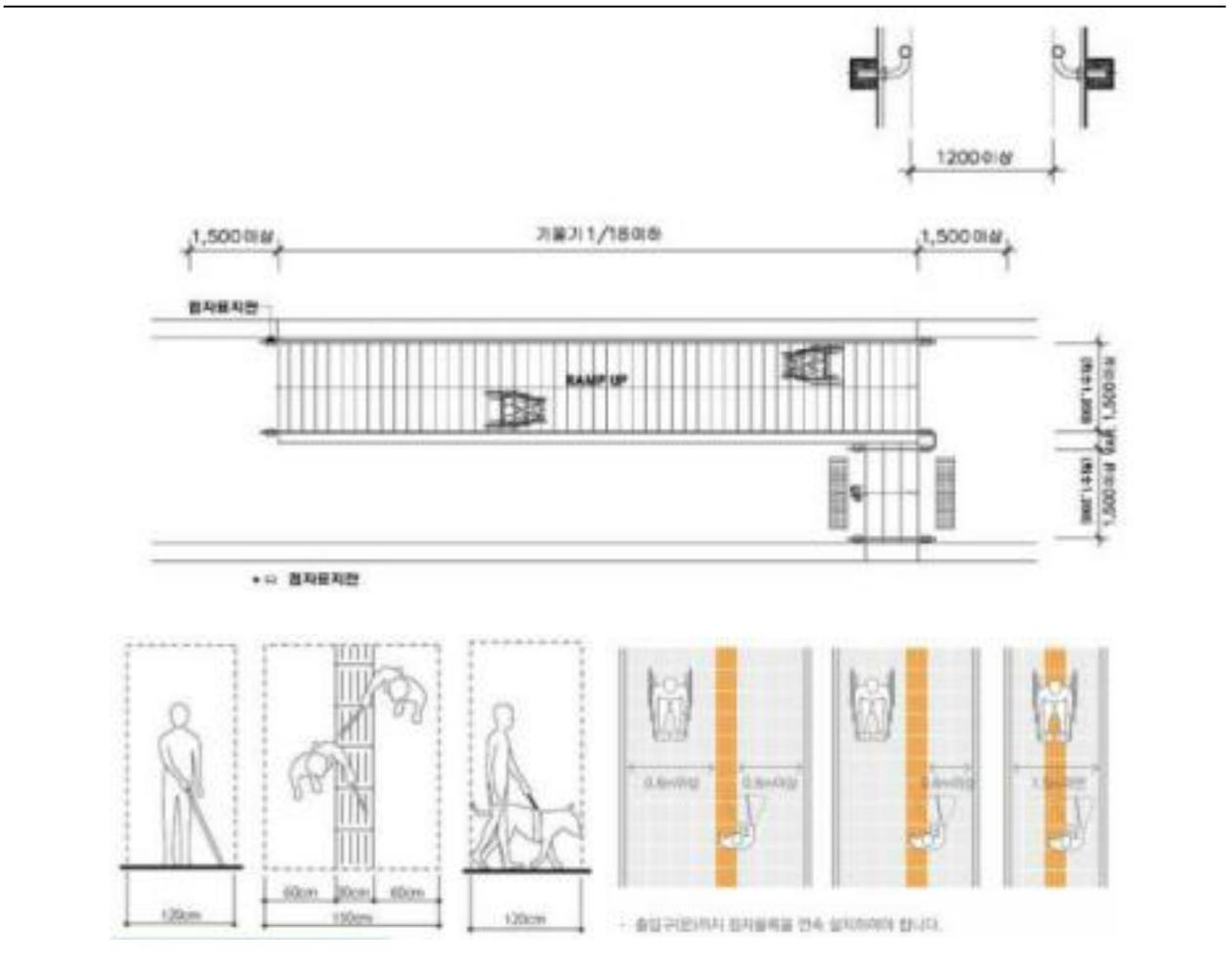
분수	%	각도(°)	설명	사용 장소
1/15	6.7	3.8	실내경사로를 완만하게 조성 시	실내 공간
1/18	5.6	3.2	목외 접근로의 최대 허용 경사도	실외 공간
1/24	4.17	2.39	목외 접근로에서 차량이나 걸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BF인증 접근로 최우수 기준) 교통약자별 환경서 기준(1/25) 환경서시 통과여거 권유되지 않는 경사	

【그림 - 19】 휠체어 사용자 BF인증 주안점

▪ 시각장애인

【표 - 32】 시각장애인 특성 및 건축적 배려사항

장애유형	특성(고려사항)	건축적 배려사항
시각장애	전맹	- 도로, 통로 형태의 단차, 기동 장애물 등의 확인방법 배려 및 안내방법 검토 - 긴급 시 필요한 대응설비 설치 - 점자나 음성에 의한 안내 필요
	약시	- 작은 문자는 읽을 수 없음 - 큰 문자를 사용 - 주위 환기를 위한 색채계획 필요
	색맹	- 색의 구별이 힘들 - 적색, 청록색, 청색이 회색으로 보임 - 판별이 어려운 색채는 사용하지 않음
	시야협착	- 시야가 좁음 - 주변의 현황이나 사인을 확인하기 쉽게 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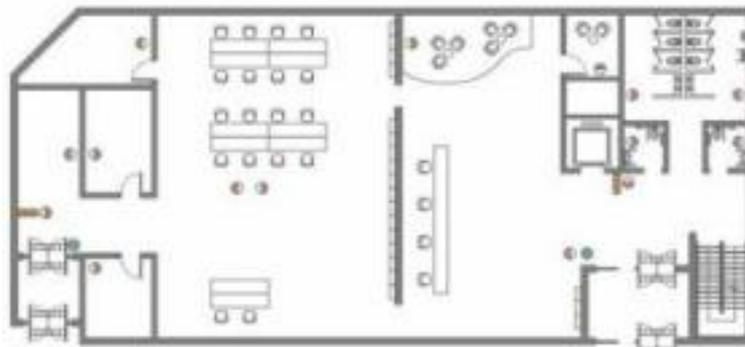
【그림 - 20】 시각장애인 BF인증 주안점

▪ 청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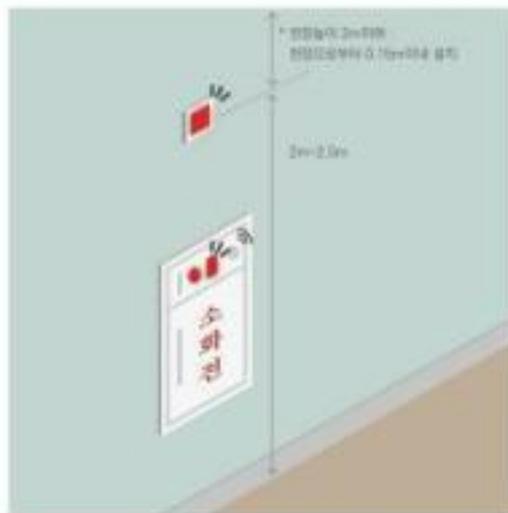
【표 - 33】 청각장애인 특성 및 건축적 배려사항

장애유형		특성(고려사항)	건축적 배려사항
청각장애	청각장애	- 소리가 들리지 않음 - 수화통역, 문자, 빛으로 인지	- 비상시에 언어 이외의 정보전달방법 검토 - 시각에 의한 알기 쉬운 정보전달방법 검토
	난청장애	- 증폭된 소리로 인지 - 골전도, 수화통역, 문자, 빛으로 인지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내표지로 정보전달 검토
	언어장애	- 말을 할 수 없음	- 소프트적인 대응 필요 (글자를 써서 대화 등)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



·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과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 조명이 포함된 문자 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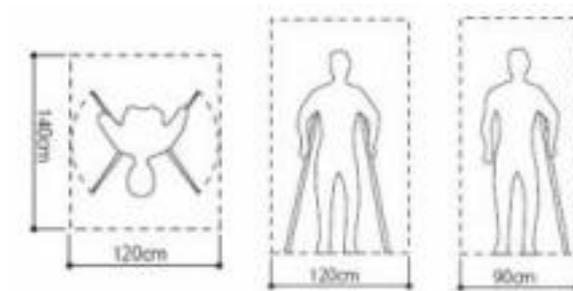
·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과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림 - 21】 청각장애인 BF인증 주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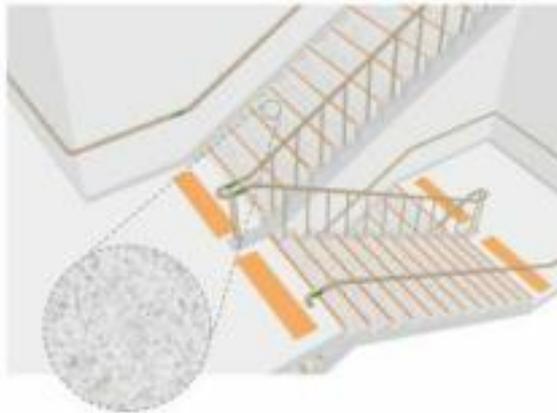
▪ 목발 사용자

【표 - 34】 목발 사용자 특성 및 건축적 배려사항

	특성(고려사항)	건축적 배려사항
목발 사용자	- 미끄러운 바닥면에 매우 취약	- 눈이나 비 등의 자연환경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 필요 - 경사로의 경사도가 완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계단을 함께 설치
지팡이사용자	- 걸음이 느림 - 평탄하지 않거나 미끄러운 바닥면에 취약	- 바닥 재질의 평탄도 유지 필요 - 잔디나 카펫과 같은 바닥면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평탄한 바닥면의 보행로를 동시에 확보



계단 전체의 바닥표면이 전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발디딤 부분은 촉각 혹은 시각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잘 인지할 수 있는 것들 사용



· 계단 전체의 바닥표면이 전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발디딤 부분은 촉각 혹은 시각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림 - 22】 목발 사용자 BF인증 주안점

Ⅲ. 해남군 장애인 복지관 현황 및 기능전환

1. 해남군 장애인 복지관 현황
2. 장애인 정책과 복지관의 역할 변화
3. 장애인 정책과 복지관 기능변화
4. 해남군 장애인 복지관의 기능전환

1

해남군 장애인 복지관 현황

1.1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

1) 건축개요

-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7년 10월 24일 개관함
- 현재 지자체 소유의 건물에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운영으로 군립임
- 장애인 종합복지관임

【표 - 35】 해남군 장애인복지관 건축 및 시설개요

건 물 명	해남군 장애인복합문화시설							
규 모	지하 3층 ~ 지상 5층							
면적(안)	연면적	1,421.04㎡	대지면적	3,154㎡	건축면적	751.2㎡		
	용적률 산정용	1,388.64㎡	건폐율 (법정:60%)	23.82%	용적률 (법정:240%)	44.03%		
위 치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44-20							
건축법상용도	노유자시설							
비 고	1층 노유자 시설 : 751.2㎡, 2층 노유자 시설 : 459.6㎡, 대강당 193㎡							
주요시설	수치료실	x	상담실	1개	대강당	193㎡	일반차량	10대
	수영장	x	평가실	x	체육관	x	특장차량	1대
	장애체험장	x	치료실	3개	운동장	x		
	체력단련실	x	회의실/휴게실	2개	도서관	x		
부설기관	주간보호센터(16명), 공동생활가정							
자격증 소지 수	사회복지사 20명, 물리치료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조리사 1명, 영양사 1명							

2) 주요 사업 및 서비스 현황

【표 - 36】 해남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서비스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주요성과
특화사업 1	자아인 공감과 치유탐방프로그램	중증장애인과 가족 1박2일 여행 프로그램	가족기능 향상 및 여가증진 향상
특화사업 2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자조모임)	발달장애니 대상 자기옹호학교 동료옹호(댄스모임, 원예모임, 만들기 모임)여가활동 프로그램, 캠프, 발표회	자기옹호 및 자기표현 지수 향상

【표 - 37】 해남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서비스 현황

대분류	중분류	실적		대분류	중분류	실적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상담 사례 관리	사례발굴	7	7	직업지원	직업상담 및평가	21	100
	접수 및 사정	77	77		전환교육	-	-
	개입계획	82	82		직업적응 및 역량개발훈련	12	3,224
	개입	-	-		사업체 개발 및 관리	18	18
	지역회의	-	-		기타	47	3,412
	기타	-	-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발 및 지원	2	2
기능 강화 지원	운동지각향상	224	5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의 사회통합 환경조성	2,753	2,753
	의사소통향상	-	157		주민조직 지원	48	74
	학습능력 향상	-	-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43
	사회적응력 향상	-	-		지역자원 개발 및 관리	591	7,514
	기타	-	-		기타	-	-
장애인 가족 지원	상담 및 교육	6	6	평생교육 지원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	-
	가족기능강화	40	87		기초문해 및 학력보완교육	-	-
	양육지원	9	216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	985	5,528
	여성장애인복지증진	2	873		시민참여교육	-	-
	장애인 무료 급식	712	29,761		기타	-	-
	기타	-	-	사회서비스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142	29,731
역량 강화 및 권익 옹호 지원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지원	506	6		장애아동재활치료	-	-
	권익옹호	118	650		기타	-	-
	정보제공	15	168	운영지원 및 기획 홍보	홍보	-	1,923
	수어관련	11	67		고객만족윤리경영	-	645
	기타	67	146		기타	-	100

【표 - 38】 해남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사회서비스

구분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기타		급식서비스	목욕서비스
			자부담	기타		
서비스제공여부	미제공	미제공	미제공	미제공	제공	미제공

【표 - 39】 해남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서비스

구분	총계	중증	경증
총계	646	256	390
정신장애	36	15	21
지적장애	169	100	69
자폐성장애	5	2	3
뇌병변장애	58	31	27
언어장애	6	2	4
안면장애	-	-	187
지체장애	252	65	49
시각장애	76	27	26
청각장애	35	9	1
신장장애	3	2	-
심장장애	1	1	-
간장애	-	-	1
장루, 요루장애	1	-	2
호흡기장애	4	2	-
뇌전증 장애	-	-	-

【표 - 40】 성별 및 연령대별 현황

성별 및 연령	총계			10세이하			11~20			21~30			31~40			41~50			51~60			60~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646	371	275	1	-	1	21	17	4	52	34	18	48	27	21	65	39	26	101	61	41	358	193

【표 - 41】 소득기준 현황

구분	총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소계	646	210	51	385

【표 - 42】 최근 3개년 시행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20년		21년		22년		23년	
	횟수	실인원	횟수	실인원	횟수	실인원	일일 이용객수	일일 시간
물리치료	106	85	177	105	157	92	20	5
재활운동	100	109	176	109	154	97		
점자교육	16	4	-	-	20	8	4	1
급식사업	143	711	252	730	233	679	135	1
틈새교실	16	10	35	10	27	8	10	2
동아리활동지원	15	25	-	-	6	21	10	2
셔틀이동지원	923	171	192	196	161	180		
노래교실	0	0	2	12	27	38	30	2
건강교실	17	13	70	15	51	30	20	2
서각교실	17	6	28	7	32	4		
수예교실	15	10	35	12	27	12	10	2
원예교실	11	6	-	-	-	-		
서예교실	17	6	38	9	31	7		
시각장애인여가교실	0	0	-	-	19	40	28	2
요가교실	7	14	35	19	17	28	12	1
민요교실	8	10	7	12	19	19	6	1
악기교실	32	8	-	-	25	23	15	2
요리교실	16	14	29	15	50	21	6	2
장애인예술단	21	15	-	-	23	14		
시네마천국	10	52	19	68	16	50	10	2.5
감각통합지도	-	-	151	19	168	22	5	5
정보화교실	-	-	145	14	-	-	10	5
수어교실	-	-	34	13	25	11	5	2
난타교실	-	-	-	-	24	19	10	2
생활요리교실	-	-	-	-	-	-	8	2
장애인중창단	-	-	-	-	-	-	14	2
자조모임	-	-	-	-	-	-	8	1

2) 현황소결

-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7년 10월 24일 개관함
- 현재 지자체 소유의 건물에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운영으로 군립임
- 사회복지사 20명, 물리치료사 1인, 작업치료사 1인 조리사 1인, 영양사 1인, 운전기사 1인 총 25인이 근무 중이며, 자원봉사자가 108인 등록되어 있음
- 해남군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객의 약 65.2%가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며, 이용객의 약 55%가 노년층으로,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9대 서비스 중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음
- 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상담 개인 상담 관리, 운동 및 지각향상, 장애인 무료급식, 문화 예술 및 인문교육임
- 인력구성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기존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의 가장 큰 역할인 장애인 재활교육 및 치료 분야 또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해남군 장애인 복지관의 기능전환을 위해 특정 분야의 교육지원이 아닌 소수의 장애인 또한 재활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의 확보와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이 필요함
- 해남읍 내 장애인 활동 가능 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함

2

장애인 정책과 복지관의 역할 변화

2.1 장애인정책 변화와 장애인복지관 역할 재정립

1)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커뮤니티 케어, 탈시설 정책 등 장애인 자립재활에 중점
- 관리적 방식에서 능동적, 지속적인 장애인복지관으로 탈바꿈 필요
- 개별적, 의료적 장애개념이 점차 사회적, 환경적 모델로 변화
- 전문가와 기관의 관점의 변화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현실적 요구에 따른 서비스로 변화
- 이에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객체로 변화
- 복지관의 정체성과 기능 재정립, 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성 시급

2) 복지·건강

-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종합판정도구 도입
- 시설 거주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 지원
- 중증장애아동 집중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설립,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3) 교육문화체육

-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 특수학급 1,250개 확충,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 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17년 450명→'22년 1천명),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4) 경제적 자립기반

-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9월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 방안 추진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추진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 장애인 고용 확대 유도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 만전

5) 권익 및 안전

-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
-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매뉴얼 개발,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기준 강화
- 화재 발생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 유도 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바닥 높이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

6) 사회참여

- 장애인들이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융합제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천명에게 지원
-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도입
-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비전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목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자복지)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 ◆ (사회서비스 고도화)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글로벌 스탠다드)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

<p>9대 정책 분야</p> <p>30대 중점 과제</p> <p>74개 세부 추진 과제</p>	
<p>①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결정권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장애인 생활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 ■ 장애인 자립 및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 ■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반 고도화 	
<p>②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 의료체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맞춤형 보건 의료 지원체계 확립 ■ 장애인 보건 의료사업 고도화 ■ 혁신기술 기반 장애인 헬스케어 활성화 	
<p>③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조기발견 및 영유아 교육지원 강화 ■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p>④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및 제도 선진화 ■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직업훈련 확대 ■ 장애인 벤처·중소기업 지원 	
<p>⑤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 여가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체육 이용환경 지원 확대 ■ 장애인 관광 향유 증진 기반 확충 	
<p>⑥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 장애예술활동 지원 강화 ■ ICT기반 정보격차 해소·사회참여 확대 ■ 미디어 접근권 보장 강화 	
<p>⑦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 재난안전 보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및 이동 보장 ■ 일상생활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p>⑧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강화 ■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지원 ■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및 차별 해소 ■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p>⑨ 장애인 정책 추진기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개념 확대 ■ 장애인 정책조정 거버넌스 강화 ■ 장애인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 장애인권리보장원 설치 	

【그림 - 2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전략

3

장애인 정책과 복지관 기능변화

3.1 장애인복지관 기능 변화

1)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

- 장애인복지관은 최초 설립 당시 장애와 관련된 사회서비스가 부족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의 교육, 치료, 직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해 왔음(서울복지재단, 2019)
- 그러나 점차 장애인들의 교육, 의료, 보호, 직업 등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시설 및 기관 등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시대적 흐름이 존재함
- 장애인복지관의 변화를 파생하게 된 외부 환경적 요인은 지역복지체계의 구축,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등장 등임
- 이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를 주축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모색이 진행됨
- 특히 최근에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확대에 따라 정부의 탈시설 정책 추진, 장애등급제 폐지, 커뮤니티케어 추진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 자체에 큰 변혁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시대 조류에 부응하도록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도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로 구분
- 장애인복지관은 운영 및 사업수행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고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9가지 대분류), 그러나 광역기능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부재

【표 - 43】 장애인 재활서비스 분류

구분	대분류	구분	대분류
1	상담사례관리	6	직업지원
2	기능강화지원	7	평생교육지원
3	장애인 가족지원	8	지역사회네트워크
4	역량강화	9	사회서비스
5	권익옹호지원	10	운영지원 및 기획 홍보

2)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전환 추진

- 전국의 광역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새로운 장애인 패러다임에 맞춰 기능을 전환을 통해 지역 장애인복지관 등과 함께 장애인복지에 효율화를 추진 중임
- 전국 8개 광역도에서 도입 장애인복지관 운영(6개 지자체는 각 1개소, 충남도와 제주도는 2개소)
- 전남을 포함한 4개 광역도(강원, 충북, 제주) 복지관은 일반적인 장애인복지관 사업운영
- 경기도는 2016년 도입장애인복지관 기능재편으로 광역기능 담당, 충남도 광역기능 담당, 전북은 광역과 기초업무 수행
- 광역기능(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 : 종합민원실 운영, 장애인단체연합회상주, 정보제공, 종사자 교육,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
- 경북, 경남, 충남도 장애인복지관 역할과 기능전환을 검토 중임
- 광역 장애인 복지관의 기능전환 사례 검토를 통해 해남군 장애인 복지관의 기능 정립과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2 장애인 복지관 기능 전환사례 분석

1) 기능전환 시도별 사례 검토

【표 - 44】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관 기능전환

주제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전라북도 차원에서 광역장애인복지관의 새로운 역할 변화의 필요성 대두됨 ▪ 내부 종사자들은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주력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환경 조성, 직업재활, 장애가족지원 등의 사업이 중요한 사업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조사됨 ▪ 이용자는 도립장애인복지관이 직업재활과 정보제공, 지역사회컨설팅,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요구
주요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 정립의 핵심요소와 주요 내용의 변화에 따른 혼선 ▪ 광역장애인복지관의 명확한 역할 정립 부족에 따른 사업진행의 어려움 ▪ 도립장애인복지관 내부직원의 부적응에 따른 사업추진의 차질 ▪ 직접서비스 중단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 이관의 문제 ▪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정립을 위한 추진동력의 상실 문제 ▪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표명에 따른 사업추진의 혼선 문제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성공적인 기능전환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추진계획과 단기적인 실천전략이 담긴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함 ▪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적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광역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최소한 5년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적합한 인력을 단계별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전환에 따른 변화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상시평가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표 - 45】 경기도 장애인 복지관 기능전환

주제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경기도에서 설립한 도립장애인복지관으로 출발하였지만 2006년 동일지역인 수원시에 수원시장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유사사업의 중복문제로 경기도에서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군 장애인복지관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주력할 것을 요구받음
주요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 정립 구축을 위한 직·간접서비스의 조정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구현하기위한 방법으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안)조직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방법 제2안)경기도장애인복지관의 부설로 센터(경기도장애인복지연구지원센터 등)를 설치·운영하는 방법 제3안)직접서비스 부서를 각 센터로 분리·독립시키고 나머지 핵심 연구지원부서만 재구성하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됨 - 제1안)은 직접사업의 조직을 축소하고 도 단위의 직, 간접사업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시설평가 등에서 다른 기준과 잣대로 진행됨을 전제로 함 - 제2안)은 기존의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부설로 센터를 운영하는 모델이었으므로 도 단위의 연구지원기능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배치와 재원이 필요함을 전제함 - 제3안)은 치료교육팀을 장애아치료교육센터(도의 시책사업), 그리고 직업재활팀은 직업재활시설로 분리독립하고 나머지 인력을 추가로 보완하여 지원센터의 소속인력으로 재배치 ▪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기능개편 방안 ▪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의 기능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의 절차와 과정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체계와 집행체계, 사적전달체계와 공적전달체계,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정립 되어야 함 ▪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인 여건은 매우 중요하므로 시군 장애인복지관과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대체서비스와 재정지원,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법률적인 정비가 필요 ▪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센터로써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방법과 핵심사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함 ▪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의 전환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부직원의 참여와 변화이며 초기 단계의 지속적인 내부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표 - 46】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관 기능전환

주제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기능개편의 기본방향은 충청남도 내 장애인복지관 개관 완료를 기점으로 도립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을 재 모색하는 방법으로 추진됨
주요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개편의 핵심요소와 내용에 대한 방향성 문제 ▪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재정립에 따른 서비스 단절과 공백의 문제 ▪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재정립에 관한 일관성 있는 계획과 정책의 부재 ▪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정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합의의 부족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정립을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정립을 위한 도의 방침과 시군의 사전협약의 협조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 마련 ▪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정립을 위해서는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더불어 조직 개편·직무변경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 ▪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정립을 추진하는 과정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집행, 도와 시 군차원의 사전조율과 협조, 시군장애인복지관과의 사전 협의, 예산지원의 근거법령 마련, 모든 이해당사자 집단의 이해와 참여 등이 중요함

2) 기능전환 시도별 사례 소결

- 기능 정립을 위한 법제의 필요
 -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조직의 구성, 예산의 사용 등의 명확한 기준 필요
- 내부 인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
 - 기능 재정립 등의 이유로 인한 조직개편, 프로그램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 및 교육의 필요
- 지역 내 소통의 필요
 - 이해당사자(내부직원, 이용자, 이용자 보호자, 지자체 등)의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협조의 필요

4.1 장애인정책 변화와 해남군 장애인복지관 역할 재정립 적용방안

- 장애인복지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서비스 대상, 내용, 접근방식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운영과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역할과 기능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해남군 장애인복지관의 변화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접근 방법의 변화
 - 장애인 개인의 능력개발 위주의 교육, 관리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 형제, 지역 주민 등의 지역사회 환경 개선의 방향으로 전환
 - 장애인식개선, 장애예방, 조기진단과 조기개입, 통합고용, 통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중심역할을 수행함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방식에 대한 연구,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사업 방향을 수정
- 장애인구의 증가, 욕구의 다양화 등에 대한 대응으로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활동과 참여가 가능한 대체프로그램의 제도화
 - 재가장애인을 위한 순회재활센터, 농산어촌의 지리적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분관 및 이동 운영 검토
 - 시각장애인의 심부름센터와 학습지원센터,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센터, 주간 및 단기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의 사업 등 장애인 전반의 프로그램 운영
- 운영과 조직 측면에서의 변화를 위해 조례 재정 및 개정 등을 통해 해남군의 최저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기본과 핵심기능 제시, 조직과 직제의 편제 개편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 영역별, 관리운영등 분야별 전문인력 확충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
- 장애인 당사자들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회화 강화를 위한 모임과 단체의 지원, 장애인과 일반인들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의 양성을 위한 교육, 당사자 리더발굴 및 그룹형성 지원, 지역복지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강화

- 장애인복지관의 특징적인 종합적인 서비스센터의 역할뿐만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전문기관으로 변화
 - 전체 장애인의 교육 및 치료지원뿐만이 아닌 여성장애인, 소수장애인, 노인과 장애인의 복합관리 등의 기능의 전문성 추가 필요

4.2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역할 및 기능 전환

1) 서비스 제공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플랫폼’으로 전환

-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정
-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 개발, 재활환경 조성, 지역사회조직 및 자원동원센터 기능, 장애예방과 계몽 등 사회교육 및 운동센터 기능 확대
- 정부정책과의 정합성 유지(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지역돌봄(community care), 주민자치 확대(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확대),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
- 지원체계 강화

2) 해남군 장애인복지플랫폼 주요 역할

- 해남군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개념 정립 및 기능 전환 : 기존 군 장애인복지관과 차별적인 기능 및 지위 부여
-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허브 기능 수행 : 장애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조정전문기관역할, 공동사업 발굴 주관, 시군 장애인시설 관련 컨설팅 지원 등
- 각종 장애인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전남도 장애인복지관 운영협력체계 구축,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각종 회의, 간담회, 토론회, 포럼 등 운영, 재가장애인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 지원 연계망 구축

3) 해남군 장애인복지플랫폼의 주요 기능

-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1차 전인적 재활치료 및 인문·문화교육을 기준으로 추가 프로그램의 역할 수행
- 장애인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보장 관련, 장애인복지 관련 자원, 서비스, 인력 등 조사
 - 장애인 관련 정부정책 동향 파악 및 연계
 - 장애인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찾아가는 장애인 서비스 발굴, 주간보호(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시군과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발 및 협업 추진)
 - 실무자를 위한 각종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해남군 장애인서비스 매뉴얼 제작 보급, 대상별, 단계별, 장애교육 매뉴얼 제작 및 활용)
- 조직구성, 교육 및 역량 강화 체계 구축
 - 지역적 한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강사인력풀 양성 및 지원하고 이에 따른 조직체계 구성
 - 장애인 관련 대상별, 생애주기별 교육 체계화
 - 장애체험장 운영 등을 통한 일반인의 사회인식 변화 모색

【표 - 47】 해남군 장애인 복지관 조직 및 프로그램(안)

구분		주요 역할
맞춤 지원	맞춤지원팀	- 최초접촉 '환대', 서비스이용계획수립지원서비스,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자 지원, 작업 및 감각통합활동, 운동발달(물리치료), 의사소통향상(개별, 소집단언어치료), 학습능력향상(개별, 소집단 인지치료), 사회적응향상(개별, 소집단 심리치료), 작업 및 감각통합 활동
	직업개발팀	- 방문 직업능력평가, 중장년직업적응훈련반, 열린작업장, 취업 알선 및 적응지원, 지원 고용 민간위탁, 한국장애인개발원, 전환기 교육, 열린 카페, 직업적응훈련, 내관 직업 능력평가
	평생교육팀	- 성인기활동(심리운동, 나만의 레시피, 자립생활훈련), 시니어리더대학 체육활동(힐링요가, 실버댄스, 스트레칭, 셔플보드, 컬링), 시민참여활동, 상상누림터, 아동·청소년기 체육활동(뉴스포츠, 학교체육, 특수체육, 성장운동), 성인기 체육활동(건강운동, 배드민턴, 러닝크루, 플로어볼, 생활체육, 농구, 소도구트레이닝), 시니어리더대학 평생교육 기초문해(한글, 디지털), 문화예술(노래, 서예), 인문교양(두뇌트레이닝), 동호회, 아동·청소년 활동(문화예술), 지역생활지원(한방, 안마, 골기경락), 시니어리더대학(탁구, 보치아),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지원사업
사회 참여 지원	자립기획팀	- 주거지원(거주전환장애인 계획수립 및 지원), 장애인복지관-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 지역생활지원(목욕, 이미용),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 지역생활지원(경로식당, 식사지원, 특식지원),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역응호팀	- 정책 및 네트워크 확대(주민자치지원, 민간네트워크), 일상적 권익옹호(민감성 교육, 고충처리위원회, 참여지원), 독립적 권익옹호, 스몰스피크인식 및 물리적 변화지원(장애인식 강사모임, 재활보조기구 대여 및 수리지원), 주민협력 조직개발, 주민만나기, 주민협력 조직개발(주민모임 육성 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관리, 자원봉사자 개발, 교육, 활동, 관리, 후원 개발, 배분 관리, 자원분석 및 자원망 관리, 지역장애인관련기관 지원
운영 지원	행복운영팀	- 복지관 운영관리(인사, 총무, 시설), 시설관리, 회계, 안내, 경리, 식당운영, 차량관리, 무료셔틀버스
부속 시설	주간보호 시설	- 주간보호센터 운영, 문화여가지원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관리,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후원 관리, 건강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송영, 센터 및 차량관리

▪ 취업 및 직업재활 활성화

- 장애인 취업 및 직업재활지원네트워크 구축
- 지역장애인복지관 직업평가 역량 강화
- 직업재활프로그램 활성화

IV. 수요조사

1. 수요조사
2. 설문조사
3. 수요면적 산정

1 수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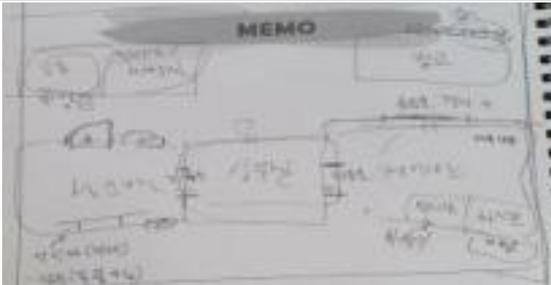
1.1 수요조사 개요

- 일시 :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14시 ~ 16시 30분
- 조사대상 : 장애인 복지관 관계자
- 조사방법 : 팀별로 대면 조사

1.2 수요조사 내용

1) 주간보호센터

【표 - 48】 주간보호센터 수요조사 결과

일시 및 시간	2023년 6월 22일 (14시 ~ 14시 30분)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용(㈜파트너스랩,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주홍(주간연구센터, 팀원) ▪ 장세라(주간연구센터, 팀원) ▪ 김효정(주간연구센터, 팀원) ▪ 박인주(주간연구센터, 팀원)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4명의 사회복지사 상주 ▪ 케어반 09시~13시 1명, 13시~17시 3명 주간보호 대상자 상주 ▪ 성인반 09시~17시 12명 보호 중 ▪ 사회복지사 1인당 관리 가능한 인원 제한으로 인한 보호 인원 제한 ▪ 사무실을 중심으로 성인반과 케어반 구분 필요 ▪ 중증도에 따른 공간 분리 요망 (케어반 사무실 성인반) ▪ 이용자 간식 보관 및 준비 장소 필요(주간보호센터 탕비실 필요) ▪ 화장실 (남여 따로, 샤워기 설치) 필요, 케어반 내 전용 화장실 필요 ▪ 탈의실 및 신변처리(기저귀) 공간(환풍기 필수) ▪ 세탁실(이용자 옷, 베개, 이불 등 섬유제품) ▪ 개인사물함 및 교육 보관함 필요, 안전상의 문제로 불박이 형태 선호 ▪ 창고 공간 필요(물품 및 간식 등) ▪ 센터 내 다목적 강당 구비로 외부 날씨에 따른 활동 공간 확보 필요 ▪ 내부 공간의 여유가 있으면 좋겠음(현재 책상 등 가구 공간으로 활동에 어려움 있음) 	
비고		

2) 기능향상지원팀

【표 - 49】 기능향상지원팀 수요조사 결과

일시 및 시간	2023년 6월 22일 (14시 35분 ~ 15시 10분)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 옹(주)파트너스랩,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주홍(기능향상지원팀, 팀장) 이준희(기능향상지원팀, 팀원) 유우담(기능향상지원팀, 팀원) 김은숙(기능향상지원팀, 팀원)
회의내용	물리치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운동실 : 누구나 이용공간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 개인 치료 공간. 물리치료실과 재활운동실 독립 운영 (구분 필요) 재활운동실 벽면 거울 설치 필요. 전동휠체어 이동공간 확보_치료대 간격, 매트 운동실 공간. - 치료실 조용한 환경,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 칸막이 또는 커튼 설치 - 물리치료실 치료장비 교체. - 수치료실 독립공간 설치, 소음발생 - 수납공간 확보 - 세면대 수전 - 치료사 사무용 책상설치 - 의약품 관리함. 접근성이 좋은 1층에 물리치료실이 있으면 좋겠음
	감각통합 지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각통합지도실 내에 벽면 거울 및 감각사다리 설치 필요 소음방벽 설치요망, 바닥 폭신한 폼 설치 감각통합지도실 천장에 그네 및 기구 설치 필요 세면대 수전, 냉장고 감각통합실/작업치료실 독립 운영 구분 필요 치료사 사무용 책상설치
	급식실 및 주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수용인원은 50인, 10명 근무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면적이 좁음 휠체어 인원으로 면적 계산 필요 1일 식사 평균 이용 인원 150명 저온저장고 필요, 실내에 있으면 좋을 듯 1인 사무실 & 휴게실 & 탈의실 식당이 1층에 위치하면 좋겠음 (재료 운반 및 접근성 등) 조리실 및 주방 공간 넓게 확보 필요
비고		

3) 지역권의 옹호팀

【표 - 50】 지역권의 옹호팀 수요조사 결과

일시 및 시간	2023년 6월 22일 (15시 15분 ~ 15시 50분)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 용(㈜파트너스랩,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지현(지역권익옹호팀, 팀장) 김광재(지역권익옹호팀, 팀원) 전순하(지역권익옹호팀, 팀원) 임재용(지역권익옹호팀, 팀원) 박진숙(지역권익옹호팀, 팀원)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주인원 6명 팀별로 사무실을 분리하면 좋겠으나, 기관 의견에 따르겠음 후원물품에 대한 창고 및 저온 창고 별도 필요(식당과 분리) 푸드뱅크 활동 등 지원시설 및 공간 필요 반찬 배달 관련 포장 등의 공간 마련 (다용도실) 조리실과 별개로 후원창고가 있으면 함.(저온창고 포함) 활동지원서비스 사무공간이 따로 있으면 좋겠음(80명정도의 인원인 요일별로 분리해서 방문) 이용자 원예치료용 화단 (작은 텃밭이나 꽃을 키울 수 있는 공간) 미용실 및 목욕탕 활용 여부 검토 목포 E-Land 복지관 참고했으면 좋겠음 	
비고		

4) 운영지원팀

【표 - 51】 운영지원팀 수요조사 결과

일시 및 시간	2023년 6월 22일 (16시 ~ 16시 30분)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 용(㈜파트너스랩,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금임(운영지원팀, 팀장) 박경단(운영지원팀, 팀원) 윤효준(운영지원팀, 팀원) 박정호(운영지원팀, 팀원)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주인원 9명(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무실 창고, 탕비실, 접견실 필요 접견실의 경우 팀별이 아닌 센터 내 공용접견실 계획 등 설명 복지관 문서고 필요, 벽면용 책장 형식이면 좋을 듯함 (최대 5년간의 문서 보관 공간 필요) 1년단위 문서 발생량 확인 요청 시설 창고 따로 필요 (지하도 괜찮음) 차량 타이어 및 연장 등 보관 및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구함 필요 실내지만 실외같은 공간 필요 장비보관 및 교육 진행 리사이클존 (* 의논필요_ 유지 관리 등의 문제) 외부 수전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제어장치 필요 주차면수의 경우 직원 및 장애인 지원차량 + α 확보 필요 (현재 약 40여대 정도 사용 중 + 장애인 차량) 총 55면 정도 필요함 	
비고		

5) 직업/평생교육 지원팀

【표 - 52】 직업/평생교육팀 수요조사 결과

일시 및 시간	2023년 6월 22일 (16시 ~ 16시 30분)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용(주)파트너스랩,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한규(직업/평생교육 지원팀, 팀원) ▪ 김지원(직업/평생교육 지원팀, 팀원) ▪ 배후영(직업/평생교육 지원팀, 팀원) ▪ 지한솔(직업/평생교육 지원팀, 팀원)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교실, 발달장애인생활요리교실 등을 고려해 주방시설 완비된 프로그램실 필요 ▪ 일반 교육실 및 특수 교육실 필요 ▪ 강당 및 대회의실 필요 (*논의 필요) ▪ 노래교실 30~40명 내외 ▪ 노래, 요가 등의 활동 교육 공간 필요, 방음공간 필요 ▪ 실외 놀이터, 체험 농장 ▪ 소각 동아리(먼지 다량 발생) 공간 별도 필요 ▪ 휴식공간 (이용자 혹은 활동지원사가 맨바닥에 누워서 쉴 수 있는 곳) ▪ 휴식공간 (이용자 혹은 보호자 휴식 가능한 대기공간) ▪ 샤워공간 (중증이나 기저귀착용 이용자가 씻을 수 있는 곳) ▪ 제빵훈련실과 직업재활실 분리 ▪ 1층 로비에 커피 판매 공간 필요 ▪ 상담실과 접견실이 따로 있었으면 함 ▪ 요리 공간내 LPG 사용시 센터 내 LPG저장 시설 등 확보 필요 	
비고		

2

설문조사

2.1 조사개요

- 조사시기 : 2023년 7월 31일 ~ 2023년 8월 11일 (2주)
- 조사대상 : 해남군 장애인 및 보호자, 해남군민
- 조사방법 : 관련 단체 협조 및 복지관을 통한 조사
- 회수율 : 장애인 및 보호자(150부 중 134부), 해남군민(150부 중 112부)
- 조사내용 : 복지시설의 이용 및 역할, (가칭)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건립에 대한 사항 등

2.2 조사내용 및 설문분석 - 장애인 및 보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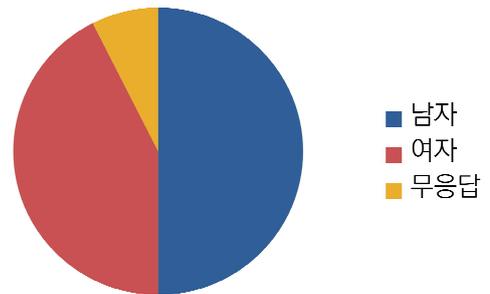
1) 기본정보

□ 성별분포

- 조사대상자의 성별 구성은 남자가 50%, 여자가 42.54%, 무응답 7.46%로 나타남

【표 - 53】 성별 분포(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빈도	비중
남자	67	50.00%
여자	57	42.54%
무응답	10	7.46%
합계	13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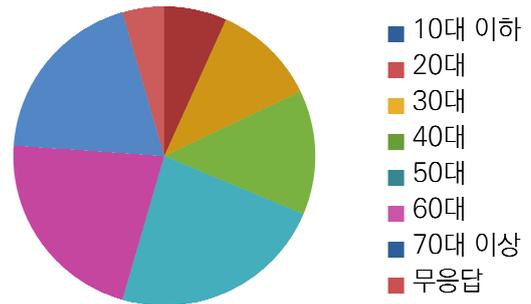
【그림 - 24】 성별 분포 (장애인 및 보호자)

□ 연령분포

- 조사대상은 50대가 23.13%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21.64%, 70대 이상이 19.40%, 40대가 13.43% 순으로 나타남

【표 - 54】 연령 분포(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빈도	비중
10대 이하	0	0.00%
20대	9	6.72%
30대	15	11.20%
40대	18	13.43%
50대	31	23.13%
60대	29	21.64%
70대 이상	26	19.40%
무응답	6	4.48%
합계	134	100%



【그림 - 25】 연령 분포 (장애인 및 보호자)

□ 학력

- 고졸(재학)자가 30.60%를 차지하였고, 대졸(재학) 20.90%, 중졸(재학) 13.43% 순으로 나타남

【표 - 55】 학력 분포(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빈도	비중
무학	19	14.18%
초등졸(재학)	11	8.21%
중졸(재학)	18	13.43%
고졸(재학)	41	30.60%
대졸(재학)	28	20.90%
대학원이상	2	1.49%
무응답	15	11.19%
합계	13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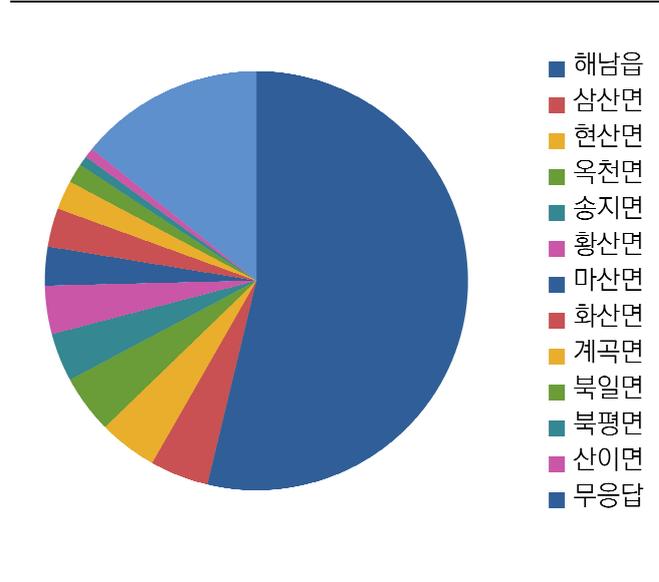
【그림 - 26】 학력 분포 (장애인 및 보호자)

□ 거주지

- 해남읍에 53.73%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삼산면·현산면·옥천면 4.48%, 송지면·황산면 3.73% 등으로 나타남

【표 - 56】 거주지 분포 (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빈도	비중
해남읍	72	53.73%
삼산면	6	4.48%
현산면	6	4.48%
옥천면	6	4.48%
송지면	5	3.73%
황산면	5	3.73%
마산면	4	2.98%
화산면	4	2.98%
계곡면	3	2.24%
북일면	2	1.49%
북평면	1	0.75%
산이면	1	0.75%
무응답	19	14.18%
합계	13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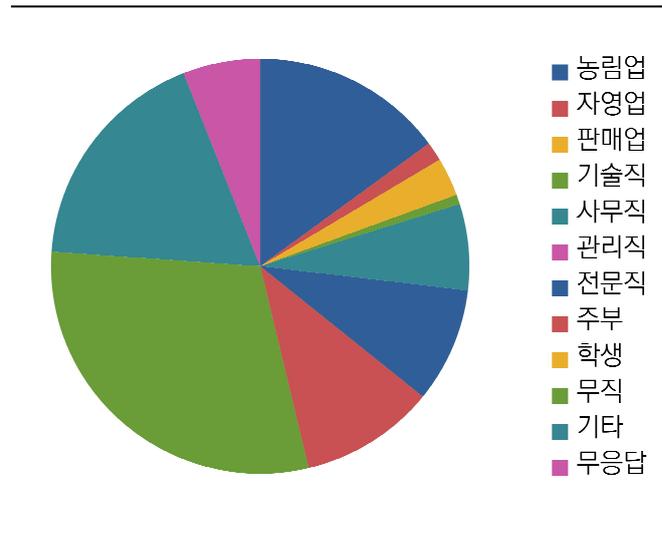
【그림 - 27】 거주지 분포 (장애인 및 보호자)

□ 직업

- 무직이 29.85%로 가장 많았으며, 농림업 14.93%, 전문/자유직과 전업주부 8.96%, 사무직 6.72% 순 등으로 나타남

【표 - 57】 직업 분포 (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빈도	비중
농림업	20	14.93%
자영업	2	1.49%
판매/서비스업	4	2.99%
기술/숙련공	1	0.75%
사무직	9	6.72%
경영/관리직	0	0.00%
전문/자유직	12	8.96%
전업주부	14	10.45%
학생	0	0.00%
무직	40	29.85%
기타	24	17.91%
무응답	8	5.97%
합계	134	100.02%



【그림 - 28】 직업 분포 (장애인 및 보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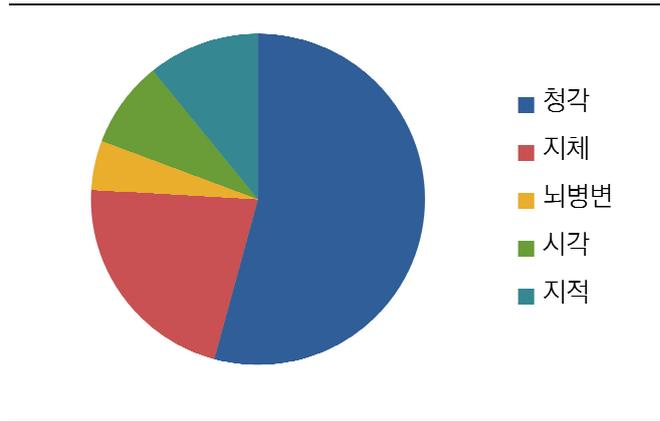
2) 복지시설의 이용 및 역할에 관한 문항

□ 장애 유형

- 청각장애 54.22%, 지체장애 21.69%, 지적장애 10.84% 순으로 나타남
- 무응답, 장애인 보호자는 제외

【표 - 58】 장애 유형

구분	빈도	비중
청각	45	54.22%
지체	18	21.69%
뇌병변	4	4.82%
시각	7	8.43%
지적	9	10.84%
소계	83	100 %
무응답	17	-
보호자	34	-
총계	1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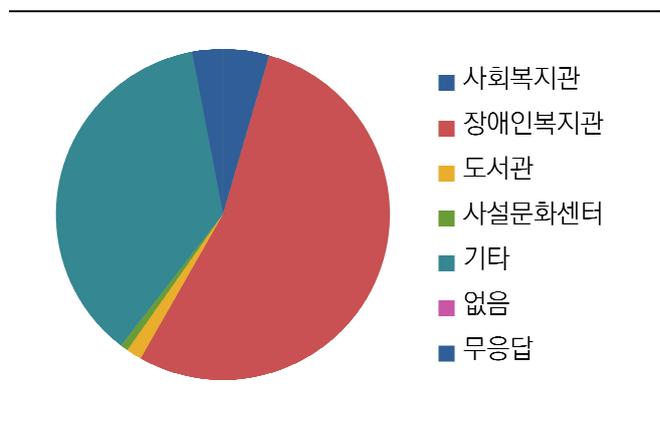
【그림 - 29】 장애 유형

□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및 기관

- 장애인 복지관이 53.72%로 과반수 이상의 수치를 보였고, 기타 응답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 들은 10% 미만의 수치를 보임
- 기타 응답에는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등이 있음

【표 - 59】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및 기관 (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빈도	비중
청년회관	0	0.00%
여성회관	0	0.00%
사회복지관	6	4.48%
노인복지관	0	0.00%
장애인복지관	72	53.72%
주민센터	0	0.00%
도서관	2	1.49%
사설문화센터	1	0.75%
기타	49	36.57%
없음	0	0.00%
무응답	4	2.99%
합계	13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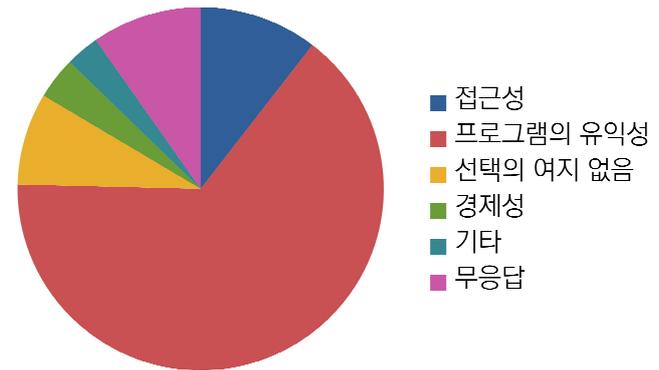
【그림 - 30】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및 기관 (장애인 및 보호자)

□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 시설 및 프로그램의 유익성이 64.93%로 가장 높은 이유를 차지하였으며, 접근성이 10.44%, 선택의 여지없음이 8.21%로 나타남

【표 - 60】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빈도	비중
접근성(위치)	14	10.44%
시설 및 프로그램의 유익성	87	64.93%
선택의 여지 없음	11	8.21%
경제성	5	3.73%
기타	4	2.99%
무응답	13	9.70%
합계	13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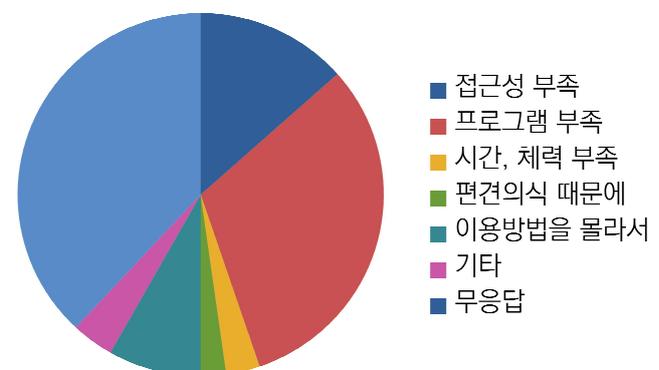
【그림 - 31】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장애인 및 보호자)

□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이용할만한 프로그램 및 시설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31.34%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접근성 부족 13.43%, 이용방법·위치등을 몰라서 8.21%로 나타남

【표 - 61】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빈도	비중
접근성 부족 (교통수단 불편)	18	13.43%
이용할만한 프로그램 및 시설 부족	42	31.34%
시간 및 체력 부족	4	2.99%
편견의식 때문에	3	2.24%
이용방법, 위치 등을 몰라서	11	8.21%
기타	5	3.73%
무응답	51	38.06%
합계	13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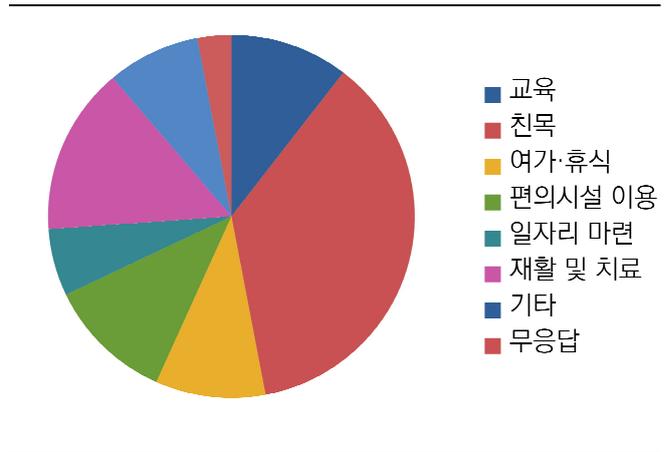
【그림 - 32】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장애인 및 보호자)

□ 주 이용목적

- 친목·교제·교류가 36.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재활 및 치료 14.93%, 편의시설 이용 11.19%, 교육 10.45%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수어통역, 후원 등이 있음

【표 - 62】 주 이용목적 (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빈도	비중
교육	14	10.45%
친목·교제·교류	49	36.57%
여가·휴식	13	9.70%
편의시설 이용	15	11.19%
일자리 마련	8	5.97%
재활 및 치료	20	14.93%
기타	11	8.21%
무응답	4	2.98%
합계	134	100 %



【그림 - 33】 주 이용목적(장애인 및 보호자)

□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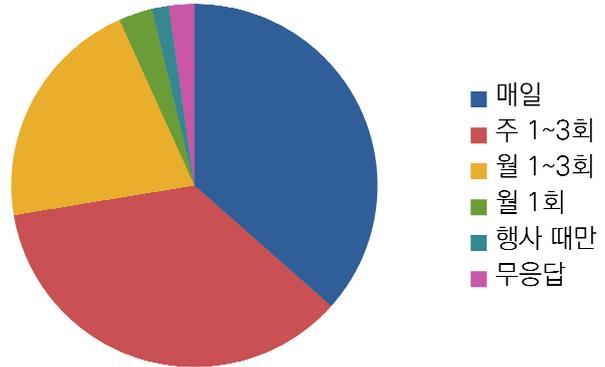
- 장애인 일자리 : 일자리 확보를 위한 참여
- 여가교실(노래, 건강체조, 요가, 운동) : 친목, 여가생활, 정서지원을 위해서 참여
- 핑퐁핑퐁그림책 오감교실 : 다양하게 책을 접할 수 있고 비장애인과 어울려서 활동할 수 있어서 참여
- 도서관 : 유아 활동 프로그램 참여
- 물리치료, 재활 : 건강을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서 참여
- 수어교실(수어통역) : 농아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것밖에 없고, 일상생활에 필요해서 참여
- 후원 모임 : 가족 중 장애인이 있어서 후원활동에 참여
- 컴퓨터 교실(정보화 교육) : 배움에 갈증을 해소하고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참여

□ 시설 이용 정도

- 매일 이용하는 응답자가 36.56%로 가장 많았고, 주 1~3회 이용하는 자도 35.82%의 높은 수치를 보임

【표 - 63】 시설 이용 정도(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빈도	비중
매일	49	36.56%
주 1~3회	48	35.82%
월 1~3회	28	20.90%
월 1회	4	2.99%
행사 때만	2	1.49%
무응답	3	2.24%
합계	134	100%



【그림 - 34】 시설 이용 정도(장애인 및 보호자)

□ 시설에 가기 위한 교통수단

- 자가용 31.34%, 버스 18.66%, 장애인 콜택시 13.43% 등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활동지원사 차량으로 이동 등이 있음

【표 - 64】 시설에 가기 위한 교통수단(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빈도	비중
도보 및 휠체어	10	7.46%
버스	25	18.66%
일반택시	1	0.75%
장애인 콜택시	18	13.43%
셔틀버스	4	2.99%
자가용	42	31.34%
전동휠체어	1	0.75%
전동스쿠터	5	3.72%
기타	19	14.18%
무응답	9	6.72%
합계	134	100 %



【그림 - 35】 시설에 가기 위한 교통수단(장애인 및 보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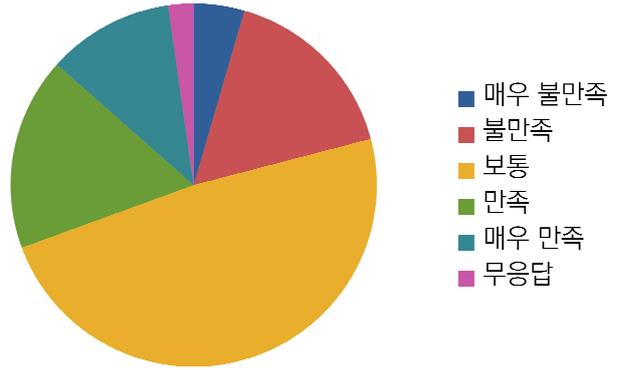
3) 기존 장애인 복지관의 만족도

□ 해남군 복지시설 수에 대한 만족도

- 보통 48.51%, 만족 17.16%, 불만족 16.42%로 복지시설 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인 답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 65】 복지시설 수에 대한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빈도	비중
매우 불만족	6	4.48%
불만족	22	16.42%
보통	65	48.51%
만족	23	17.16%
매우 만족	15	11.19%
무응답	3	2.24%
합계	13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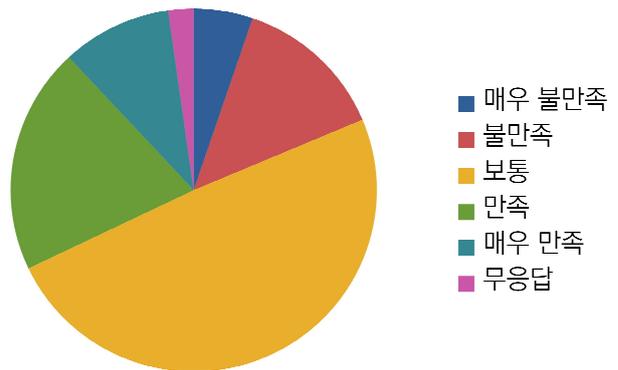
【그림 - 36】 복지시설 수에 대한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 보통 49.25%, 만족 20.15%, 불만족 13.43%로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인 답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 66】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빈도	비중
매우 불만족	7	5.22%
불만족	18	13.43%
보통	66	49.25%
만족	27	20.15%
매우 만족	13	9.70%
무응답	3	2.25%
합계	13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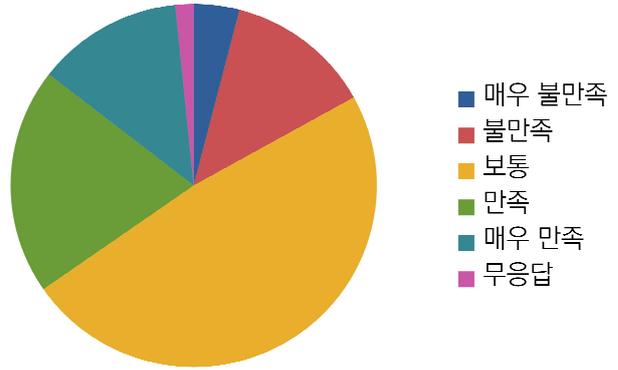
【그림 - 37】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보통 44.78%, 만족 26.12%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인 답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 67】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빈도	비중
매우 불만족	5	3.73%
불만족	16	11.94%
보통	60	44.78%
만족	35	26.12%
매우 만족	16	11.94%
무응답	2	1.49%
합계	13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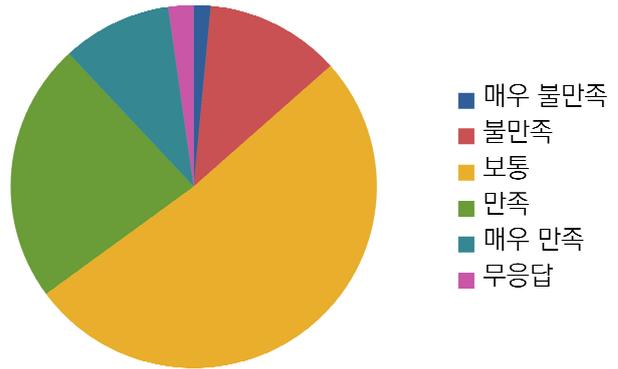
【그림 - 38】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 지리적 위치에 대한 만족도

- 보통 51.49%, 만족 23.13%, 불만족 11.94%로 지리적 위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인 답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 68】 지리적 위치에 대한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빈도	비중
매우 불만족	2	1.49%
불만족	16	11.94%
보통	69	51.49%
만족	31	23.13%
매우 만족	13	9.70%
무응답	3	2.25%
합계	13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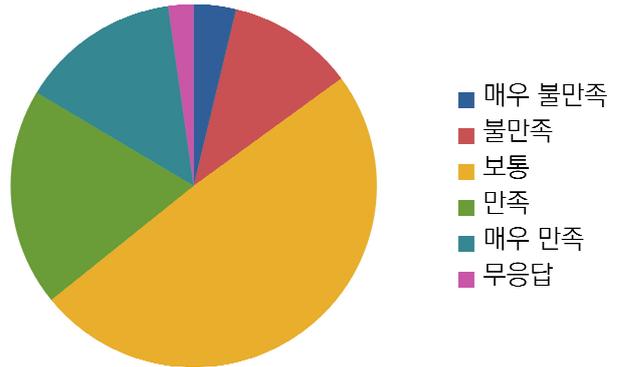
【그림 - 39】 지리적 위치에 대한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 이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보통 49.25%, 만족 29.40%, 매우 만족 14.18%로 이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만족,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 69】 이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빈도	비중
매우 불만족	5	3.73%
불만족	15	11.19%
보통	66	49.25%
만족	26	19.40%
매우 만족	19	14.18%
무응답	3	2.25%
합계	13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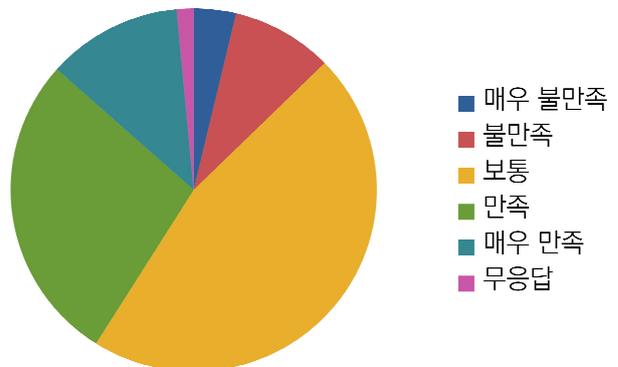
【그림 - 40】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 기존 장애인복지관의 전반적인 만족도

- 보통 46.27%, 만족 27.61%, 매우 만족 11.94%로 기존 장애인복지관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과 만족,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 70】 기존 장애인 복지관의 전반적인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빈도	비중
매우 불만족	5	3.73%
불만족	12	8.96%
보통	62	46.27%
만족	37	27.61%
매우 만족	16	11.94%
무응답	2	1.49%
합계	134	100%



【그림 - 41】 기존 장애인 복지관의 전반적인 만족도(장애인 및 보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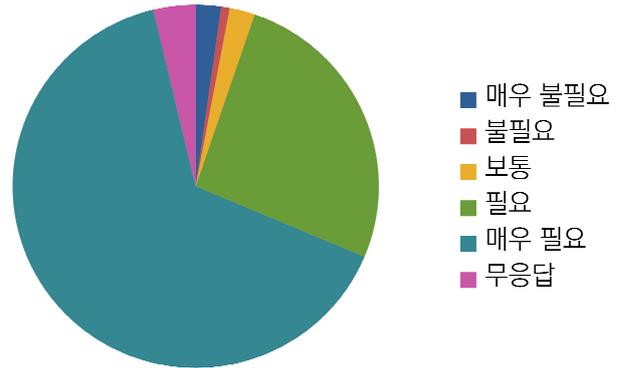
4) (가칭)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에 관한 문항

□ (가칭)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의 건립 필요성

- 매우 필요 64.93%, 필요 26.12%로 건립이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 71】 (가칭)해남군 복합문화복지공간의 건립 필요성(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빈도	비중
매우 불필요	3	2.24%
불필요	1	0.75%
보통	3	2.24%
필요	35	26.12%
매우 필요	87	64.93%
무응답	5	3.72%
합계	134	100%



【그림 - 42】 (가칭)해남군 복합문화복지공간의 건립 필요성(장애인 및 보호자)

□ (가칭) 해남군 복합문화복지공간 건립 시 우선 고려사항

- 장애인 인식개선 26.87%, 프로그램 구성(내용,시간) 25.37%, 시설(공간) 구성 및 배치 24.69% 세 개의 항목이 (가칭) 해남군 복합문화복지공간 건립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함

【표 - 72】 건립 시 우선 고려사항(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빈도	비중
접근성(위치,교통수단)	20	14.93%
프로그램 구성(내용,시간)	34	25.37%
시설(공간) 구성 및 배치	33	24.63%
장애인 인식 개선	36	26.87%
이용방법, 위치 등 홍보	6	4.48%
기타	0	0.00%
무응답	5	3.72%
합계	13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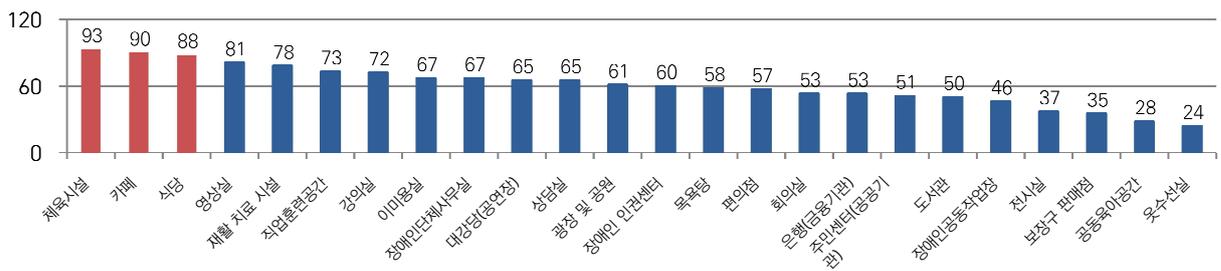
【그림 - 43】 건립 시 우선 고려사항(장애인 및 보호자)

□ 도입 희망 시설 및 공간

- 체육시설이 93으로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카페 90, 식당 80 순으로 나타남
- 영상실 81, 재활치료시설 78, 직업훈련공간 73, 강의실 72 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임
- 옷수선실 24, 공동육아공간 28, 보장구 판매점 35, 전시실 37, 도서관 50은 평균수치인 61 에 못미치며 하위 그룹을 생성함

【표 - 73】 도입 희망 시설 및 공간(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공간	빈도	비중
교육	강의실(교육 관련 프로그램실)	72	4.96%
	직업훈련공간(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73	5.02%
	장애인공동작업장	46	3.17%
	재활 훈련 및 치료시설	78	5.37%
	공동육아공간(놀이방)	28	1.93%
문화	대강당(공연장)	66	4.54%
	영상실(영화감상 등)	81	5.57%
	도서관	50	3.44%
	체육시설(스포츠, 헬스)	93	6.40%
편의	전시실	37	2.55%
	카페	90	6.19%
	식당	88	6.06%
	편의점	57	3.92%
	광장 및 공원	61	4.20%
	목욕탕	58	3.99%
	이·미용실	67	4.61%
	옷수선실	24	1.65%
	보장구 판매점	35	2.41%
	업무	장애인 단체 사무실	67
장애인 인권센터		60	4.13%
회의실		53	3.65%
상담실		65	4.47%
주민센터(공공기관)		51	3.51%
은행(금융기관)		53	3.65%
합계		1,453	100%
빈도평균	빈도합계/공간항목수 (=1,453/24)	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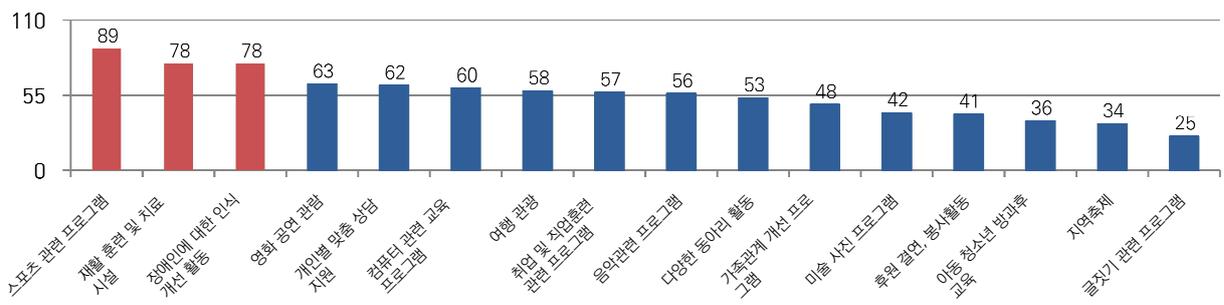
【그림 - 44】 도입 희망 시설 및 공간(장애인 및 보호자)

□ 도입 희망 프로그램

-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이 89로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재활 훈련 및 치료시설 78,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78 순으로 나타남
- 영화·공연관람 63,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지원 62, 컴퓨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 60, 여행·관광 58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임
- 글짓기 관련 프로그램 25, 지역축제 34, 아동·청소년 방과 후 교육 36 등은 평균수치인 55에 한참 못미치며 하위 그룹을 생성함
- 기타 의견으로는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있음

【표 - 74】 도입 희망 프로그램(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공간	빈도	비중
교육	글짓기 관련 프로그램	25	2.84%
	미술·사진 프로그램	42	4.77%
	컴퓨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	60	6.82%
	취업 및 직업훈련 관련 프로그램	57	6.48%
	아동·청소년 방과 후 교육	36	4.09%
	재활 훈련 및 치료시설	78	8.86%
문화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89	10.11%
	음악 관련 프로그램	56	6.36%
	영화·공연 관람	63	7.16%
	여행·관광	58	6.59%
	다양한 동아리 활동	53	6.02%
	지역축제	34	3.87%
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78	8.87%
	후원 결연·봉사 활동	41	4.66%
	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	48	5.45%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지원	62	7.05%
합계		880	100%
빈도 평균	빈도합계/공간항목수 (=880/16)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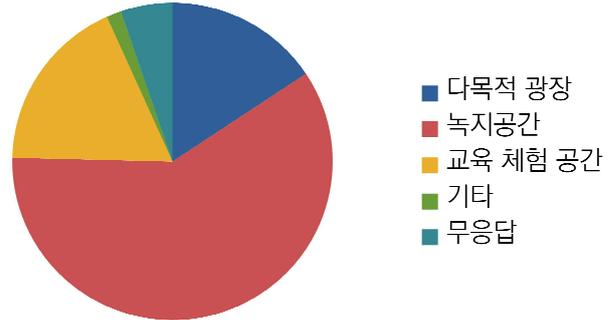
【그림 - 45】 도입 희망 프로그램(장애인 및 보호자)

□ 외부공간 조성 방향

- 휴식이나 여가가 가능한 녹지공간 59.70%, 교육 및 체험이 가능한 공간 17.91%, 행사진행이 가능한 다목적 광장이 15.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 75】 외부공간 조성 방향(장애인 및 보호자)

구분	빈도	비중
행사진행이 가능한 다목적 광장	21	15.67%
휴식이나 여가가 가능한 녹지공간	80	59.70%
교육 및 체험이 가능한 공간	24	17.91%
기타	2	1.49%
무응답	7	5.23%
합계	134	100%



【그림 - 46】 외부공간 조성 방향 (장애인 및 보호자)

5) 장애인 설문 소결

-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 이용프로그램, 접근성의 부족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용자의 72.38%가 매일 또는 주 1~3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의 목적은 친목, 재활 및 치료 순으로 나타남
- 해남군 전체 복지시설의 개수는 보통이 가장 높음
- 해남군 다어울림 문화복지공간의 경우 건립이 매우필요하다가 약 65%로 나타남
- 건립시 우선고려사항은 프로그램 및 시설, 인식개선이 약 77%로 나타남
- 도입 희망시설은 체육시설, 카페, 식당, 영상, 재활치료, 직업훈련공간 등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활동 및 휴식, 일자리에 대한 요구도가 반영됨
- 희망프로그램으로 운동관련, 영화 공연, 개인별 상담 등으로 나타났으며, 희망시설과 유사한 패턴을 보임
- 외부공간의 경우 휴식이나 여가가 가능한 녹지공간이 약 60%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 여유있는 주차장 확보, 시설 내 휴게 공간 확보 등이 나타남

2.3 조사내용 및 설문분석 - 일반 군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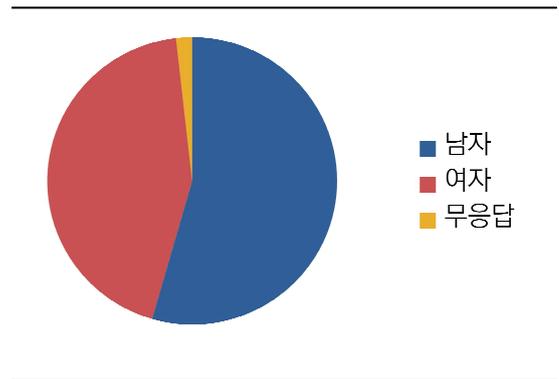
1) 기본정보

□ 성별분포

- 조사대상자의 성별 구성은 남자가 54.46%, 여자가 43.75%, 무응답 1.79%로 나타남

【표 - 76】 성별 분포(일반 군민)

구분	빈도	비중
남자	61	54.46%
여자	49	43.75%
무응답	2	1.79%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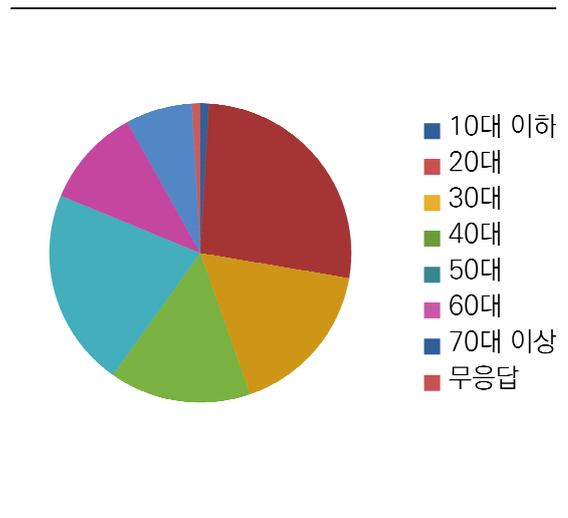
【그림 - 47】 성별 분포(일반 군민)

□ 연령분포

- 조사대상은 20대가 26.79%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1.43%, 30대 이상이 16.96%, 40대가 15.18% 순으로 나타남

【표 - 77】 연령 분포(일반 군민)

구분	빈도	비중
10대 이하	1	0.89%
20대	30	26.79%
30대	19	16.96%
40대	17	15.18%
50대	24	21.43%
60대	12	10.71%
70대 이상	8	7.15%
무응답	1	0.89%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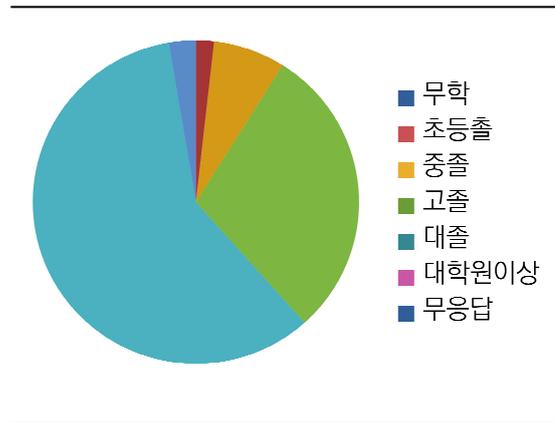
【그림 - 48】 연령 분포 (일반 군민)

□ 학력

- 대졸(재학)자가 58.93%를 차지하였고, 고졸(재학) 29.46%, 중졸(재학) 8.14% 순으로 나타남

【표 - 78】 학력 분포(일반 군민)

구분	빈도	비중
무학	0	0.00%
초등졸(재학)	2	1.79%
중졸(재학)	8	7.14%
고졸(재학)	33	29.46%
대졸(재학)	66	58.93%
대학원이상	0	0.00%
무응답	3	2.68%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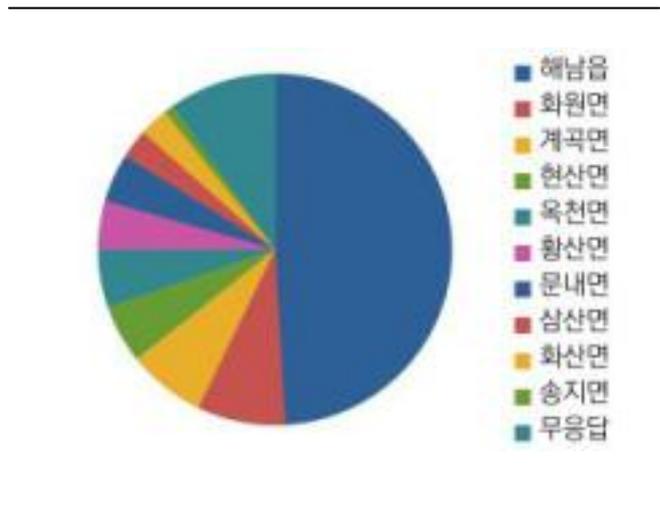
【그림 - 49】 학력 분포 (일반 군민)

□ 거주지

- 해남읍에 49.11%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원면 8.04%, 계곡면 7.14% 등으로 나타남

【표 - 79】 거주지 분포 (일반 군민)

구분	빈도	비중
해남읍	55	49.11%
화원면	9	8.04%
계곡면	8	7.14%
현산면	6	5.36%
옥천면	6	5.36%
황산면	5	4.46%
문내면	5	4.46%
삼산면	3	2.68%
화산면	3	2.68%
송지면	1	0.89%
무응답	11	9.82%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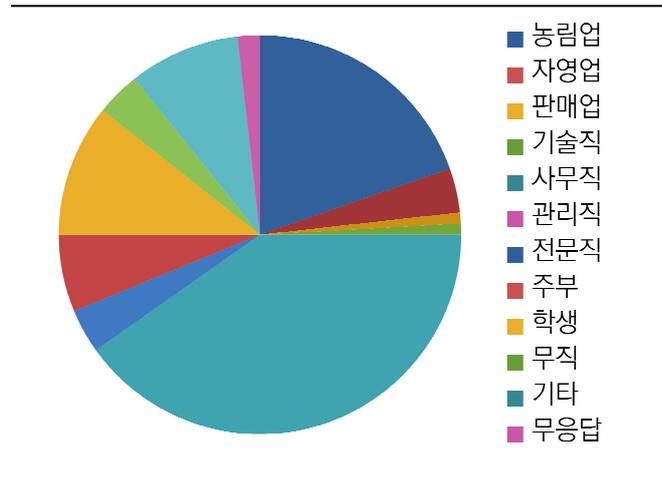
【그림 - 50】 거주지 분포 (일반 군민)

□ 직업

- 사무직이 40.18%로 가장 많았으며, 농림업 19.64%, 학생 10.71% 등으로 나타남

【표 - 80】 직업 분포 (일반 군민)

구분	빈도	비중
농림업	22	19.64%
자영업	4	3.57%
판매/서비스업	1	0.89%
기술/숙련공	1	0.89%
사무직	45	40.18%
경영/관리직	0	0.00%
전문/자유직	4	3.57%
전업주부	7	6.25%
학생	12	10.71%
무직	4	3.57%
기타	10	8.94%
무응답	2	1.79%
합계	112	100%



【그림 - 51】 직업 분포 (일반 군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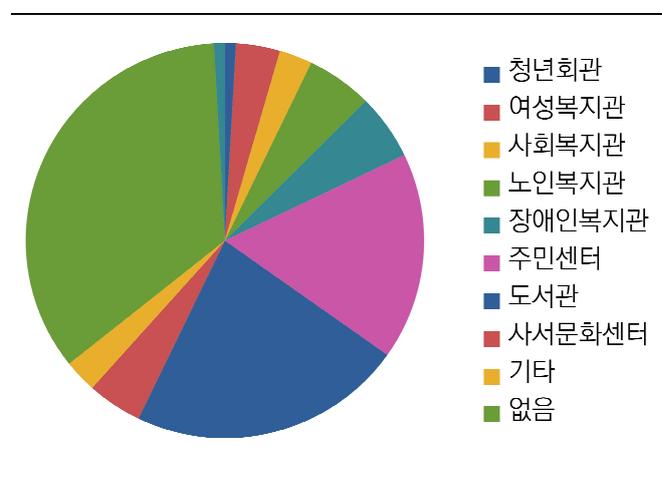
2) 복지시설의 이용 및 역할에 관한 문항

□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및 기관

-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및 기관은 없음이 34.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도서관이 22.32%, 주민센터 16.96%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 81】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및 기관 (일반 군민)

구분	빈도	비중
청년회관	1	0.89%
여성회관	4	3.58%
사회복지관	3	2.68%
노인복지관	6	5.36%
장애인복지관	6	5.36%
주민센터	19	16.96%
도서관	25	22.32%
사설문화센터	5	4.46%
기타	3	2.68%
없음	39	34.82%
무응답	1	0.89%
합계	112	100%



【그림 - 52】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및 기관 (일반 군민)

□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 시설 및 프로그램의 유익성이 35.71%, 접근성이 17.86%, 선택의 여지없음이 6.25%로 나타남

【표 - 82】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일반 군민)

구분	빈도	비중
접근성(위치)	20	17.86%
시설 및 프로그램의 유익성	40	35.71%
선택의 여지 없음	7	6.25%
경제성	3	2.68%
기타	3	2.68%
무응답	39	34.82%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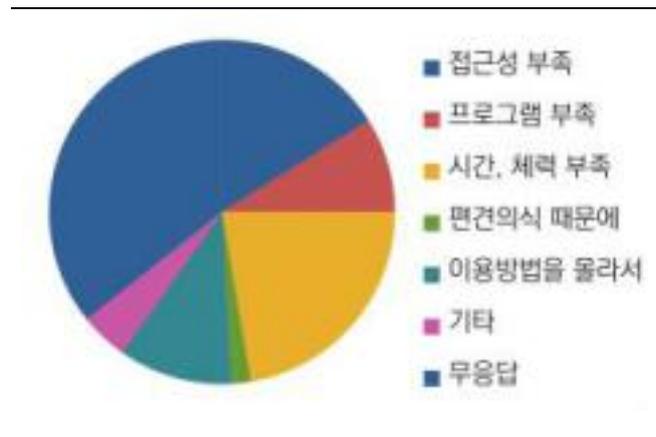
【그림 - 53】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일반 군민)

□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시간 및 체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22.3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접근성 부족이 16.07%, 이용방법 위치 등을 몰라서가 10.71%로 나타남

【표 - 83】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일반 군민)

구분	빈도	비중
접근성 부족 (교통수단 불편)	18	16.07%
이용할만한 프로그램 및 시설 부족	10	8.93%
시간 및 체력 부족	25	22.32%
편견의식 때문에	2	1.79%
이용방법, 위치 등을 몰라서	12	10.71%
기타	5	4.46%
무응답	40	35.72%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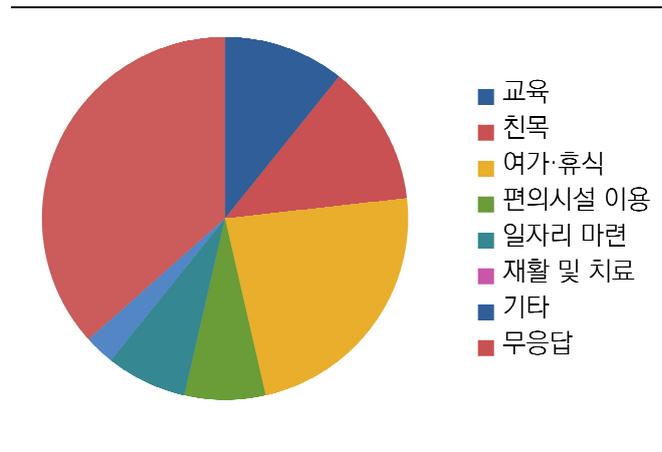
【그림 - 54】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일반 군민)

□ 주 이용목적

- 여가·휴식이 23.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친목·교제·교류가 12.50%, 교육 10.71%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수어통역, 후원 등이 있음

【표 - 84】 주 이용목적 (일반 군민)

구분	빈도	비중
교육	12	10.71%
친목·교제·교류	14	12.50%
여가·휴식	26	23.21%
편의시설 이용	8	7.14%
일자리 마련	8	7.14%
재활 및 치료	0	0.00%
기타	3	2.68%
무응답	41	36.62%
합계	112	100 %



【그림 - 55】 주 이용목적(일반 군민)

□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

- 도서관: 교양, 지식 습득, 자녀교육, 여가생활 및 휴식을 목적으로 이용함
- 문화의 집 (문화센터): 자기개발 및 취미 여가 생활을 위해 이용함
- 스포츠센터: 수영, 요가, 에어로빅 등 운동을 통해 건강 유지를 위해 이용함
- 컴퓨터실: 정보화 교육이 필요해서 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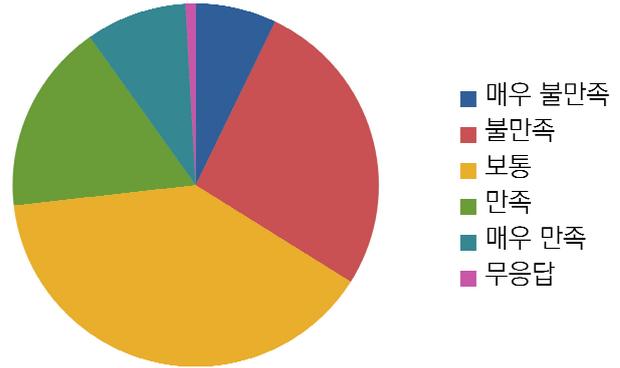
3) 기존 장애인 복지관의 만족도

□ 해남군 복지시설 수에 대한 만족도

- 보통 39.29%, 불만족 26.79%, 만족 16.96% 복지시설 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과 불만족인 답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 85】 복지시설 수에 대한 만족도(일반 군민)

구분	빈도	비중
매우 불만족	8	7.14%
불만족	30	26.79%
보통	44	39.29%
만족	19	16.96%
매우 만족	10	8.93%
무응답	1	0.89%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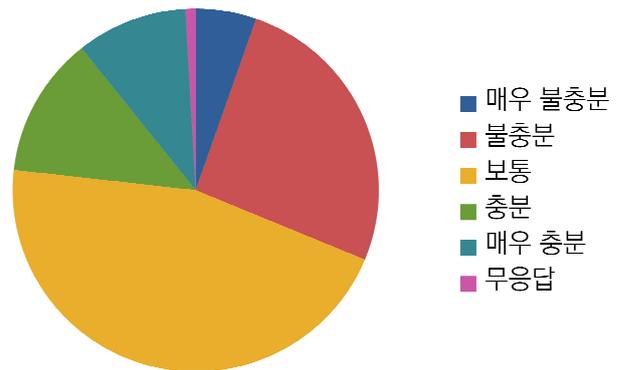
【그림 - 56】 복지시설 수에 대한 만족도(일반 군민)

□ 운영 프로그램에 수에 대한 만족도

- 보통 45.54%, 불충분 25.89%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는 보통과 불충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 86】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일반 군민)

구분	빈도	비중
매우 불충분	6	5.36%
불충분	29	25.89%
보통	51	45.54%
충분	14	12.50%
매우 충분	11	9.82%
무응답	1	0.89%
합계	112	100%



【그림 - 57】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일반 군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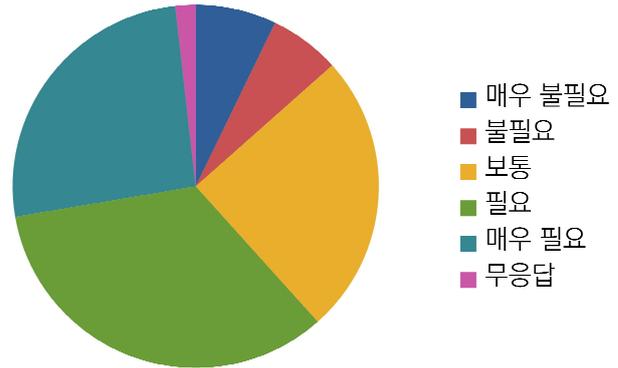
4) (가칭)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에 관한 문항

□ (가칭)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의 건립 필요성

- 필요 33.93%, 매우 필요 25.89%로 건립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 87】 (가칭)해남군 복합문화복지공간의 건립 필요성(일반 군민)

구분	빈도	비중
매우 불필요	8	7.14%
불필요	7	6.25%
보통	28	25.00%
필요	38	33.93%
매우 필요	29	25.89%
무응답	2	1.79%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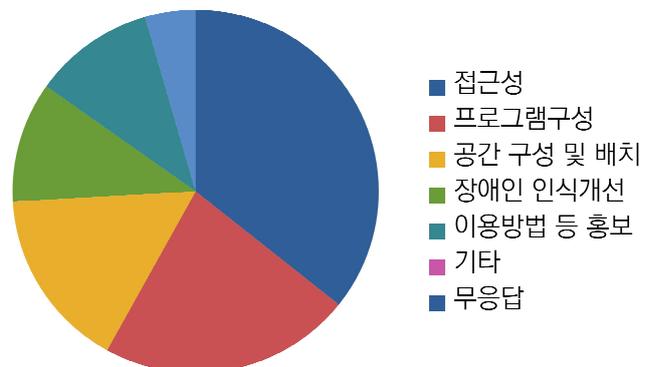
【그림 - 58】 (가칭)해남군 복합문화복지공간의 건립 필요성(일반 군민)

□ (가칭) 해남군 복합문화복지공간 건립 시 우선 고려사항

- 접근성(위치, 교통수단) 35.71%, 프로그램 구성 22.32%, 시설(공간) 구성 및 배치 16.07% 항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 88】 건립 시 우선 고려사항(일반 군민)

구분	빈도	비중
접근성(위치,교통수단)	40	35.71%
프로그램 구성(내용,시간)	25	22.32%
시설(공간) 구성 및 배치	18	16.07%
장애인 인식 개선	12	10.71%
이용방법, 위치 등 홍보	12	10.71%
기타	0	0.00%
무응답	5	4.48%
합계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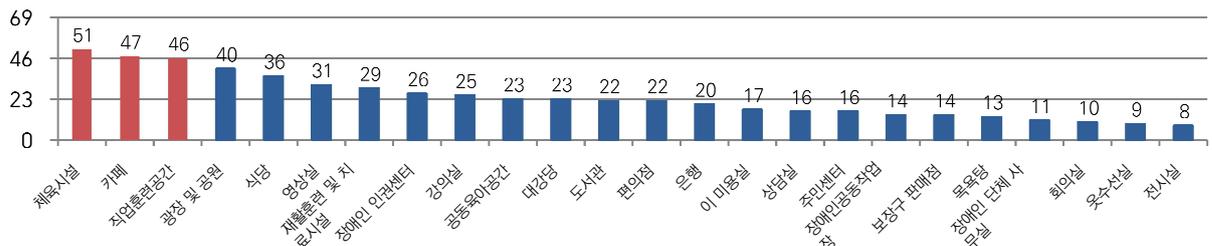
【그림 - 59】 건립 시 우선 고려사항(일반 군민)

□ 도입 희망 시설 및 공간

- 체육시설을 51로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카페 47, 직업훈련공간 46 순으로 나타남
- 광장 및 공원 40, 식당 36, 영상실 31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임
- 전시실 8, 옷수선실 9, 회의실 10, 장애인 단체 사무실 11, 목욕탕 13 등은 평균수치인 23.7에 못 미치며 하위 그룹을 생성함

【표 - 89】 도입 희망 시설 및 공간(일반 군민)

구분	공간	빈도	비중
교육	강의실(교육 관련 프로그램실)	25	4.39%
	직업훈련공간(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46	8.08%
	장애인공동작업장	14	2.46%
	재활 훈련 및 치료시설	29	5.10%
	공동육아공간(놀이방)	23	4.04%
문화	대강당(공연장)	23	4.04%
	영상실(영화감상 등)	31	5.45%
	도서관	22	3.87%
	체육시설(스포츠, 헬스)	51	8.96%
편의	전시실	8	1.42%
	카페	47	8.26%
	식당	36	6.33%
	편의점	22	3.87%
	광장 및 공원	40	7.03%
	목욕탕	13	2.28%
	이·미용실	17	2.99%
	옷수선실	9	1.58%
	보장구 판매점	14	2.46%
	업무	장애인 단체 사무실	11
장애인 인권센터		26	4.57%
회의실		10	1.76%
상담실		16	2.81%
주민센터(공공기관)		16	2.81%
은행(금융기관)		20	3.51%
합계		569	100%
빈도평균	빈도합계/공간항목수 (=569/24)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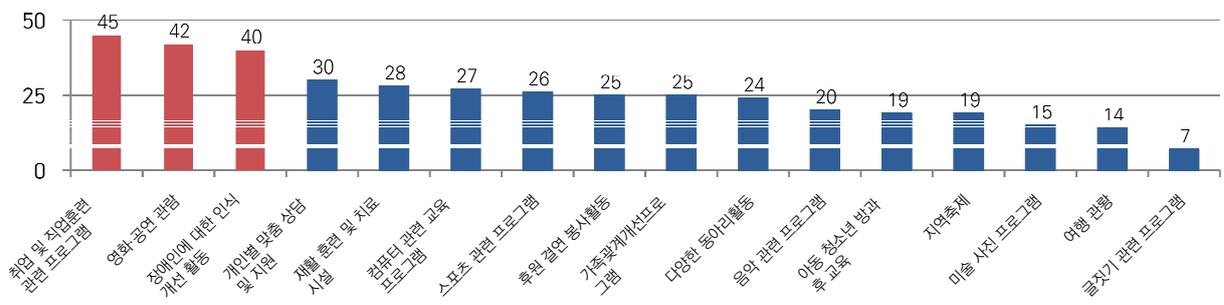
【그림 - 60】 도입 희망 시설 및 공간(일반 군민)

□ 도입 희망 프로그램

- 취업 및 직업훈련 관련 프로그램을 45로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영화·공연 관람 42,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40 순으로 나타남
-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지원 30, 재활 훈련 및 치료시설 28, 컴퓨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 27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임
- 글짓기 관련 프로그램 7, 여행·관광 14, 미술·사진 프로그램 15 등은 평균수치인 25에 못 미치며 하위 그룹을 생성함
- 기타 의견으로는 공예방, 수어교실, 점자교실이 있음

【표 - 90】 도입 희망 프로그램(일반 군민)

구분	공간	빈도	비중
교육	글짓기 관련 프로그램	7	1.73%
	미술·사진 프로그램	15	3.69%
	컴퓨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	27	6.65%
	취업 및 직업훈련 관련 프로그램	45	11.08%
	아동·청소년 방과 후 교육	19	4.68%
	재활 훈련 및 치료시설	28	6.90%
문화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26	6.40%
	음악 관련 프로그램	20	4.93%
	영화·공연 관람	42	10.34%
	여행·관광	14	3.45%
	다양한 동아리 활동	24	5.91%
	지역축제	19	4.68%
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40	9.85%
	후원 결연·봉사 활동	25	6.16%
	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	25	6.16%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지원	30	7.39%
합계		406	100%
빈도 평균	빈도합계/공간항목수 (=406/16)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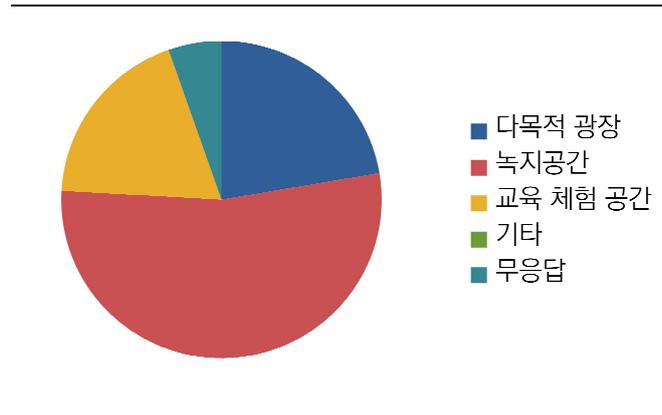
【그림 - 61】 도입 희망 프로그램(일반 군민)

□ 외부공간 조성 방향

- 휴식이나 여가가 가능한 녹지공간 53.57%, 행사진행이 가능한 다목적 광장이 22.32%, 교육 및 체험이 가능한 공간 18.7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 91】 외부공간 조성 방향(일반 군민)

구분	빈도	비중
행사진행이 가능한 다목적 광장	25	22.32%
휴식이나 여가가 가능한 녹지공간	60	53.57%
교육 및 체험이 가능한 공간	21	18.75%
기타	0	0.00%
무응답	6	5.36%
합계	112	100%



【그림 - 62】 외부공간 조성 방향 (일반 군민)

5) 일반인 소결

- 일반인의 경우 복지시설 이용 가장 큰 이유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남
- 주 이용목적은 여가 및 휴식임
-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보통, 불만족, 만족 순임
-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의 경우 약 60%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 건립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접근성, 프로그램, 시설구성으로 나타남
- 도입 희망시설은 체육시설, 카페, 직업훈련공간으로 나타남
- 도입프로그램으로 취업 및 직업훈련, 영화감상, 장애인 인식개선 순으로 나타남
- 외부공간의 경우 휴식이나 여가가 가능한 녹지공간이 약 54%로 나타남

2.4 설문 소결

-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에 관한 설문 소결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건립 필요성에 찬성이 반대보다 높음
- 우선 고려사항 또한 순위의 차이만 나타나며 고려사항은 프로그램, 시설 공간 구성, 장애인 인식개선으로 유사함
- 도입희망시설로는 장애인은 체육 및 직업 교육, 일반인의 경우 체육 및 직업훈련으로 나타남
- 도입희망프로그램으로는 장애인은 운동프로그램, 일반인은 직업프로그램이 1순위로 나타남
- 외부공간의 경우 '휴식여가'가 1순위이며, 다목적 공간과 체험 및 교육공간의 경우 일반인은 2순위, 3순위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은 3순위, 2순위로 나타남

【표 - 92】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 설문 소결

구분		장애인 및 보호자	일반인
건립 필요성		약 91%찬성	약 60% 찬성
우선고려사항	1순위	프로그램 구성	접근성
	2순위	시설과 공간구성	프로그램 구성
	3순위	장애인 인식개선	시설과 공간구성
도입희망시설	1순위	체육시설	체육시설
	2순위	편의시설	편의시설
	3순위	재활치료시설	직업훈련시설
도입 희망프로그램	1순위	운동프로그램	직업프로그램
	2순위	재활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3순위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인식개선
외부공간 조성	1순위	휴식여가	휴식여가
	2순위	교육 및 체험공간	다목적 공간
	3순위	다목적 공간	교육 및 체험공간

2.5 초점집단인터뷰(FGI) 분석 결과

1) 초점집단인터뷰(FGI) 개요

□ 조사일정

- 2023년 8월 9일 ~ 8월 10일

□ 초점집단 인터뷰 대상

- 해남군 시각장애인 협회, 해남군 지체장애인 협회, 장애인 관련 전문가, 사회복지관련 실무자

【표 - 93】 초점집단 인터뷰 대상

구 분		참여인원(명)	비고
A	해남군 장애인단체	2	시각, 지체
B	장애인 관련 전문가	1	
C	사회복지 관련 실무자	2	
D	장애인 관련 기관 이용자	2	장애인 보호자
4개 집단		7명	

□ 조사내용

- 해남시 장애인복지관련 현안을 탐색하여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의 근거 마련
- 해남시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의 기관 방향 및 목적 탐색
- 다양한 집단 간의 견해를 분석하여 적절성 및 타당성 모색

□ 자료 분석 및 처리

- 조사 목적에 부합된 집단 구성 후 인터뷰 준비
- 구조화된 질문 후 심층적이고 자율적인 토론 형식으로 인터뷰 진행
- 수집된 인터뷰 내용을 주제분석법을 활용하여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의 현안 및 방향 모색

2) 초점집단인터뷰(FGI) 분석 결과

□ 해남군의 장애인 복지관련 현안

- 장애유형, 중증도,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장애인들이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 교육, 재활, 치료 등의 관련 전문인력 충원의 어려움 해결 방안 마련
-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만 18세까지는 장애인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이 되고 있지만, 만 18세 이후에는 교육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직업을 갖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어 직업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성인이 되어 기술력을 갖춘 사회인, 직장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C-1 참여자)

“해남군에 직업교육프로그램이 없다 보니 직업교육을 위해 타 시군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해남군에 직업교육, 직업시설까지 운영해서 최종적으로는 해남군에 장애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D-1 참여자)

“해남군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전문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이나 특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전문인력의 부재로 폐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 기관인 도단위에서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시,군에서 전문인력을 같이 활용한다든지, 은퇴하신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전문인력 충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B-1 참여자)

“복지관까지 거리가 멀어도 활동 보조인의 도움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도 있지만, 그마저도 어려운 소외된 장애인들이 해남군에 얼마나 많은지 파악하고, 그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A-1 참여자)

□ (가칭) 해남군 다어울림복합문화복지공간의 역할과 기능

- 기관 역할
 -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기관
- 기관 목적
 -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대상별, 연령별, 생애주기별 등 평생교육의 체계화와 직업교육을 통한 장애인 자립 지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제공
- 기관 건물 특성
 - 장애인의 유형과 중증도, 생애주기 특성이 고려된 설계 필요
 - 접근성, 이동서비스, 주차공간이 고려된 배치 설계필요
 - 비장애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내외부 체험공간 및 시설 확충
 - 복지관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외부 공간(조경)
- 기관 기능
 - 해남군의 장애인복지 향상 및 사각지대 해소의 기회 마련
 - 직업교육을 통한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인식 개선의 장이 될것임

“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과 기관 및 교육 홍보를 해서 더 이상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A-2 참여자)

” 장애인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가장 체계적으로 필요한 교육은 성교육입니다. 유아시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체계화시켜서 장애인들의 발생가능한 성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2 참여자)

“ 해남군의 장애인들이 직업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남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에서 직업교육 서비스를 받고, 해남군에 취업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다수의 장애인들이 해남을 떠나지 않고, 평생 정착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D-1 참여자)

“ 외부공간에 비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캠핑시설이나 운동시설,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전문가의 중재로 그 시설들이 운영된다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 어색하지 않게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인력의 충원과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D-2 참여자)

3) 해남군 시각장애인협회 내용

【표 - 94】 해남군 시각장애인협회 FGI 분석 결과

일시 및 시간	2023년 8월 9일 (10시 ~ 11시 30분)
설문내용	<p>1. (가칭)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의 기능과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장애인 복지관이 해남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용중인 장애인복지관이 매우 비좁습니다. 새로운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장애인 집단은 누구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집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소수의 장애인들까지도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꼭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교육,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공간은 방음이 잘 된 공간에서 해야하므로, 방음설비가 된 곳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 및 직업교육활동을 하는 복지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사 자격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복지관에서 직업교육부터 일자리 고용까지 이어져서 복지관에서 안마사 일을 하는 형태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 건물 내부와 외부에 꼭 고려해야 할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들은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편이지만, 서로 마주 보고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p>2. (가칭)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의 목적과 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장애인인 장애인 '어울림' 공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비장애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관심이 없으면 어울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비장애인이 만족하면서 (가칭)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p>3. (가칭)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에 대한 기대와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보조사 및 전문인력의 충원이 원활히 돼서 소수의 장애인도 복지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장애인 협회들이 같은 건물에 입주해서 서로 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고	

4) 해남군 지체장애인협회 내용

【표 - 95】 해남군 지체장애인협회 FGI 분석 결과

일시 및 시간	2023년 8월 9일 (13시 ~ 14시 30분)
설문내용	<p>1. (가칭)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의 기능과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장애인 복지관이 해남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장애인 회원들이 복지관을 주로 이용하지만 복지관의 프로그램실이 매우 협소하고, 강당도 매우 작아서 이용하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재활운동을 자주 해야 하는데, 공간이 좁아서 대기도 많이 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규 복지관 건립이 매우 필요합니다. ▪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장애인 집단은 누구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장애인만 고려하기보다는 모든 장애인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복지관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 꼭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기능인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인이 된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기능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주는 특혜로 취업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복지관에서 알려주고 대회 참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장애인들의 기능, 능력을 개발할 수 해야 합니다. - 자유롭게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휴식공간, 활동보조사와 장애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콜택시를 기다리는 공간, 프로그램을 안 할 때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복지관에는 식사만 하고 장기나 바둑을 두거나 쉬다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집에 가지 않고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복지관에서 어울리는 행태를 살펴보면 연령대, 성별, 장애유형 등 다양합니다. 사용자의 이용행태, 휴식행태를 조사해서 여러 곳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프로그램도 다양하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공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넓어야 합니다. 특히 재활공간이 넓어야 하고, 재활 시설도 다양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 주차공간도 최소 80대 이상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건물 내부와 외부에 꼭 고려해야 할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외부에 휴식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부에는 콜택시를 기다리거나, 차량에서 승차차하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p>2. (가칭)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의 목적과 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어울림’ 공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0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같이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프로그램도 좋지만, 강당에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거리를 돌아다닌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함께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장애인을 더 이해하고 어울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비장애인이 만족하면서 (가칭)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p>3. (가칭)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에 대한 기대와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남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복지관에 대한 홍보를 현수막만 거는 것에 끝나지 않고, 문자나 우편으로 알리고, 이동지원서비스를 지금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한다면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모든 장애인들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고	

5)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집단 내용

【표 - 96】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집단 FGI 분석 결과

일시 및 시간	2023년 8월 9일 (13시 ~ 14시 30분)
설문내용	<p>1. (가칭)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의 기능과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장애인 복지관이 해남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들의 복지와 교육, 직업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제는 비장애인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뉘지 않고 잘 어울리는 복지관이 꼭 필요합니다. ▪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장애인 집단은 누구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소외된 장애인, 소수의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공평한 복합문화복지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 일정 나이가 지나서 교육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집단도 고려해야 합니다. ▪ 꼭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성교육입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꾸준한 성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모든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이 한 분기만 짧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성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장애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직업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현재 해남군에서 운영되는 직업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직업교육을 받고 싶은 장애인들은 타지역으로 나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단순한 바리스타, 제빵사가 아닌 정보화교육이나 기술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기능사 자격증까지 딸 수 있는 경증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이 해남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직업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 건물 내부와 외부에 꼭 고려해야 할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활동보조사들의 휴식공간, 대기공간이 내부, 외부 곳곳에 필요합니다. 단순히 휴식만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면서, 정보 교류도 하는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p>2. (가칭)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의 목적과 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어울림’ 공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각치료 프로그램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 비장애인이 만족하면서 (가칭)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공간에 휴식과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 잼버리 같은 캠핑 공간을 조성한다면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을 만족하면서 이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3. (가칭)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에 대한 기대와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더이상 고립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면서 사회·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 장애인들의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생애주기별 교육이 계속 이어진다면 장애인들이 해남을 떠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고	

3.1 수요산정

1) 수요산정

- 적정 수요면적 산정을 위해 해남군 장애인 복지관 사용자 인터뷰,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 일반시민, 전문가 인터뷰 등을 진행
- 프로그램 공간으로 일반 인문교육, 예술교육, 직업교육, 문화생활, 치료 및 재활공간 등이 요구 요청되었고, 또한 이용객 편의를 위한 카페, 휴식공간 등이 조사됨
- 이는 기존의 해남군 장애인 복지관의 규모적 협소, 프로그램의 편중 등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 것으로 분석됨
- 이를 위해 최근 5년 내 준공되었거나 계획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관 사례 검토를 통해 필요 프로그램 및 실별 면적을 추출하였음 【표 - 98】
- 수요영역으로 사무영역, 교육영역, 체육영역, 휴게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요공간으로 【표 - 97】과 같음

【표 - 97】 영역별 수요 공간

영역	수요공간
사무영역	관장실, 사무실, 강사대기실, 자원봉사실, 상담실, 방송실, 당직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교육영역	다목적 교육실, 직업재활실, 직업교육실, 주간보호센터, 물리재활실, 심리안정실, 직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정보화교육장, 보관실, 요리체험실,
체육영역	다목적 강당, 근육재활실(체력단련실), 수중 재활실, 취미실, 샤워장
휴게영역	식당, 카페, 보호자 대기실, 아이돌봄실, 수유실, 장애인 쉼터

- 각 실별 면적은 사례 검토 및 선진지 답사를 통해 검토 하였으며, 사무영역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무공간, 부대공간(식당, 휴게실, 창고 면적 등), 기계실, 공용면적 등을 산정하였음
- 전체 수요추정 면적은 약 5,276㎡이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인근 해남군 다목적 체육관(반경 100m이내) 동해 활용이 가능한 체육/다목적실, 공연장을 제외한 면적은 약 3,097㎡ 임
- 이에 해남군 다어울림 복지문화공간의 수요추정 면적은 약 3,100㎡(±5%이내)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수요추정 면적

- 수요추정에 따른 프로그램 면적은 약 5,276㎡임
- 이는 해남군 내 유사시설에 대한 고려를 제외한 면적임

【표 - 99】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수요추정 면적(안)

		기준면적	기준인원	개수	총면적	비고
상담 및 치료공간	상담실	20	1	1	20	
	미술활동실	20	1	1	20	
	심리안정실	20	1	1	20	
	심리활동실	20	1	1	20	
	언어활동실	20	1	1	20	
	음악활동실	20	1	1	20	
	인지활동실	20	1	1	20	
	대근육활동실	120	1	1	120	
	소근육활동실	120	1	1	120	
교육공간	특수교육실	60	1	1	60	
	집단활동실	60	1	1	60	
	강당	250	1	1	250	
직업공간	강의실	90	1	1	90	
	직업적응훈련실	90	1	1	90	
	직업능력평가실	60	1	1	60	
여가문화 공간	평생학습실	60	1	1	60	
	체육/다목적실	950	1	1	950	
	문화공연장	540	1	1	540	
재활공간	물리치료실	20	1	1	20	
	재활치료실	40	1	1	40	
사무공간	통합사무공간	7.2	27	1	194.4	지방 공유재산법 근거 산출면적
	관장실	17.92	1	1	17.92	
	사무장	7.65	1	1	7.65	
	접견실	7	2	1	14	
	창고	0.8	27	1	21.6	
	회의실	3.6	27	1	97.2	
	자료실	0.35	27	1	9.45	
위생공간	전산실	9.79	1	1	9.79	
	수유실	20	1	1	20	
기타	식당	1.63	75	1	122.25	
	휴게실	2	10	3	60	
	직원휴게실	2	29	1	58	
주간보호	주간보호실	9.9	18	1	178.2	1인 9.9㎡
전용면적			1	1	3,410.46	
공용면적		0.45	1	1	1,534.707	지하층 지방 공유재산법 근거 산출면적
기계실		0.058	1	1	286.8197	
주장비실		37	1	1	37	
총장비실		6.6			7	
합계					5,275.987	

3) 수요추정 면적 (중복시설 제외)

- 해남군 내 중복시설을 제외한 적용면적은 약 3,088㎡ 임
- 인근 해남군 다목적 체육관(반경 100m이내) 활용을 통한 체육/다목적실, 공연장을 제외한 면적임

【표 - 100】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적용 (안)

구분	세부공간명	기준면적(㎡)	기준인원	개수	총면적(㎡)	비고
상담 및 치료 공간	상담실	20.00	1	1	20.00	
	미술활동실	20.00	1	1	20.00	
	심리안정실	20.00	1	1	20.00	
	심리활동실	20.00	1	1	20.00	
	언어활동실	20.00	1	1	20.00	
	음악활동실	20.00	1	1	20.00	방음실
	인지활동실	20.00	1	1	20.00	
	대근육활동실	120.00	1	1	120.00	
	소근육활동실	120.00	1	1	120.00	
	특수교육실	60.00	1	1	60.00	가스, 물 사용공간
교육 공간	집단활동실	60.00	1	1	-	평생학습실 공유
	강당	330.00	1	1	330.00	
	강의실	90.00	1	1	90.00	
직업 공간	직업적응훈련실	90.00	1	1	90.00	
	직업능력평가실	60.00	1	1	60.00	
여가 문화 공간	평생학습실	60.00	1	1	60.00	
	체육/다목적실	950.00	1	0	-	해남군 다목적체육관 활용
재활 공간	문화공연장	540.00	1	0	-	강당 공유
	물리치료실	20.00	1	1	20.00	
재활 공간	재활치료실	100.00	1	1	100.00	
	통합사무공간	7.20	28	1	201.60	사무영역 직원 23인 사회복무요원 4인
사무 공간	관장실	17.92	1	1	17.92	
	접견실	7.00	2	1	14.00	
	창고	0.80	26	1	20.8	
	회의실	3.60	26	1	93.6	
	자료실	0.35	26	1	9.1	
	전산실	9.79	1	1	9.79	
위생 공간	수유실	20.00	1	1	20.00	
기타	식당	1.63	75	1	122.25	1일 150명, 2교대 기준
	휴게실	2.00	10	3	60.00	자원봉사 휴게실 포함
	직원휴게실	2.00	29	1	58.00	
주간 보호	주간보호실	9.90	14	1	138.60	
	주간보호사무실	7.20	4	1	28.80	
전용면적			1	1	1,984.46	
공용면적		0.45	1	1	893.1	
기계실		0.058	1	1	166.9	지하층 지방 공유재산법 근거 산출면적
주장비실		37	1	1	37.00	
총장비실		6.6			7.00	
합계					3,088.46	±5%

V. 대상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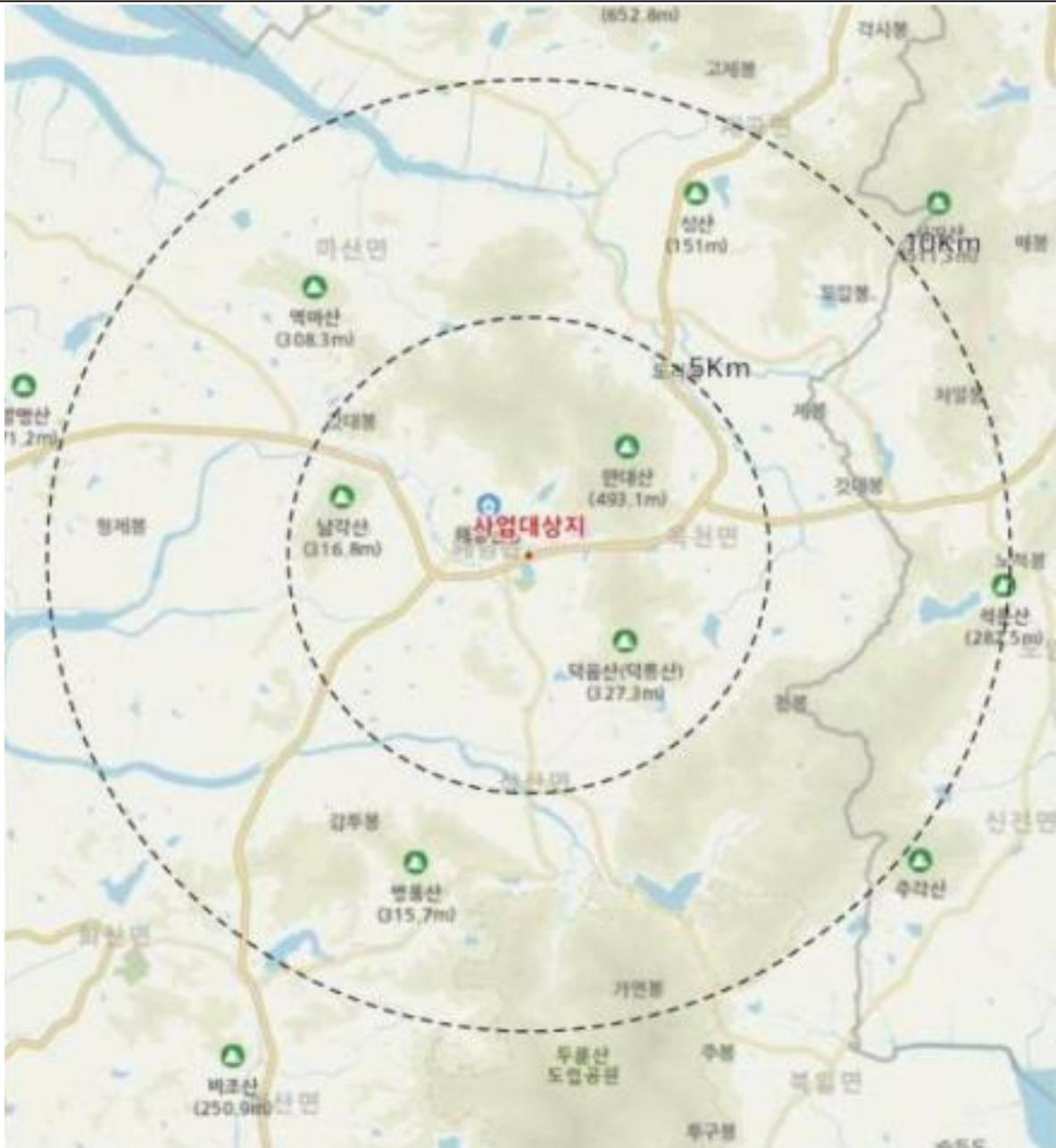
1. 대상지 개요
2. 지형지세 현황
3. 생태 및 자연환경 현황
4.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
5. 토지이용규제 현황
6. 공법제한 현황

1

대상지 개요

1.1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7외 7필지
- 면적 : 5,749m²



【그림 - 63】 대상 부지 위치도

1.2 대상지 현황 종합

1) 현황분석 결과 요약

【표 - 101】 대상지 현황분석 결과 요약

구분	항목	분석결과
사업개요	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7번지 일원
	면적	5,749㎡
	총 필지수	8개
	총 건축물수	건축물 없음
지형지세	표고	최고 표고 50.0m, 최저 표고 42.0m, 평균 표고 46.9m
	경사	최고 경사 26.0°, 최소 경사 0.0°, 평균 경사 9.1°
토지이용	소유자	사유지 3,844㎡(66.9%), 공유지 1,591㎡(27.7%), 국유지 314㎡(5.5%)
	지목	전 5,749㎡(100.0%)
	공시지가	최고 공시지가 64,600원/㎡, 최저 공시지가 16,900원/㎡, 평균 공시지가 50,012원/㎡
	농지	농지 5,749㎡(100.0%)
	산지	해당사항 없음
토지이용 규제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5,749㎡(100.0%)
	용도지구	해당사항 없음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해당사항 없음
	도시계획시설	도로 320㎡(1개소, 5.6%)

2) 대상지 현황

- 현재 대상지의 대부분은 밭으로 사용되거나 나무숲으로 형성되어 있음
- 서측면으로 소로2류(폭8m~10m) 신안길이 있음
- 동측, 남측, 북측면은 대지 경계선에 맞닿아 밭과 일반건축물들이 들어서 있음
- 서측면 소로 2류 맞은편에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위치함
- 남측면 25m 거리에 대로2류(폭30m~35M)의 공릉대로가 있음



【그림 - 64】 대상지 위성 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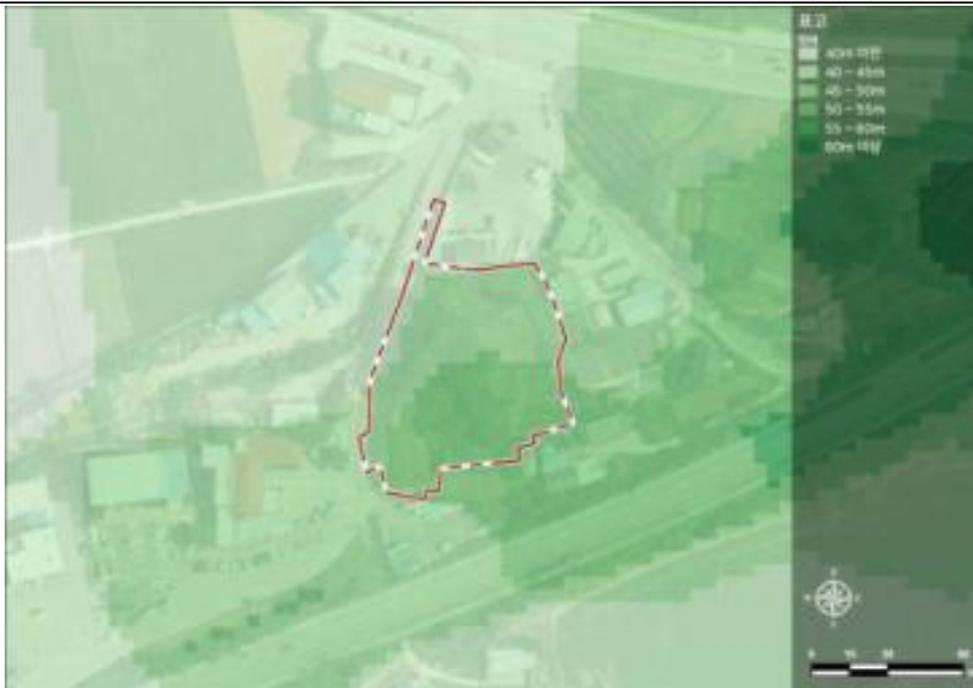
지형지세 현황

2.1 표고분석

- 대상지 내에는 40m ~ 45m가 476㎡(8.3%), 45m ~ 50m가 2,664㎡(46.3%), 50m ~ 55m가 2,609㎡(45.4%)로 나타남
- 대상지 내 최고표고는 50.0m, 최저표고는 42.0m로 표고차는 8.0m로 나타나며, 평균표고는 46.9m로 나타남

【표 - 102】 표고별 면적표

구분	면적(㎡)	비율(%)	최고(m)	최저(m)	평균(m)
40m 미만	-	-	50.0	42.0	46.9
40m ~ 45m	476	8.3			
45m ~ 50m	2,664	46.3			
50m ~ 55m	2,609	45.4			
55m ~ 60m	-	-			
60m 이상	-	-			
합계	5,749	100.0			



표고별 면적값과 도면은 축척 1/5,000 지형도를 ArcGIS에서 분석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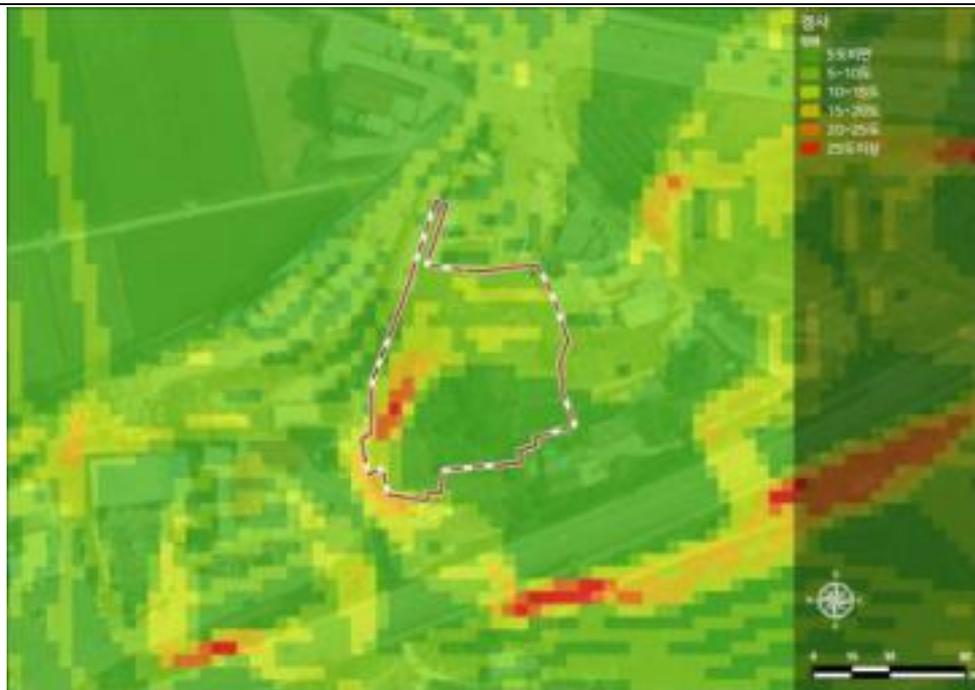
【그림 - 65】 대상 부지 표고현황도

2.2 경사분석

- 대상지 내에는 5° 미만이 2,291㎡(39.9%), 5° ~ 10° 가 1,980㎡(34.4%), 10° ~ 15° 가 1,036㎡(18.0%), 15° ~ 20° 가 267㎡(4.6%), 20° ~ 25° 가 150㎡(2.6%), 25° 이상이 25㎡(0.4%)로 나타남
- 대상지 내 최고경사는 26.0°, 최소경사는 0.0°, 평균경사는 9.1°로 나타남

【표 - 103】 경사별 면적표

구분	면적(㎡)	비율(%)	최고(°)	최저(°)	평균(°)
5도 미만	2,291	39.9	26.0	0.0	9.1
5도 이상 10도 미만	1,980	34.4			
10도 이상 15도 미만	1,036	18.0			
15도 이상 20도 미만	267	4.6			
20도 이상 25도 미만	150	2.6			
25도 이상	25	0.4			
합계	5,749	100.0			



주 : 경사도별 면적값과 도면은 축척 1/5,000 지형도를 ArcGIS에서 분석한 것임

【그림 - 66】 대상 부지 경사현황도

3

생태 및 자연환경 현황

3.1 생태자연도

- 대상지 내에는 1등급지가 분포하지 않으며, 3등급지가 5,749㎡(100.0%)로 나타남
- 대상지 내에는 별도관리지역이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 104】 생태등급별 면적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1등급	-	-	
2등급	-	-	
3등급	5,749	100.0	
별도관리지역	-	-	
합계	5,749	100.0	

참고. 생태자연도 구분기준

구분	구분기준
1등급권역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하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등급권역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권역의 외부지역
3등급권역	1등급지, 2등급지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별도관리지역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는 지역



【그림 - 67】 대상 부지 생태자연현황도

3.2 국토환경성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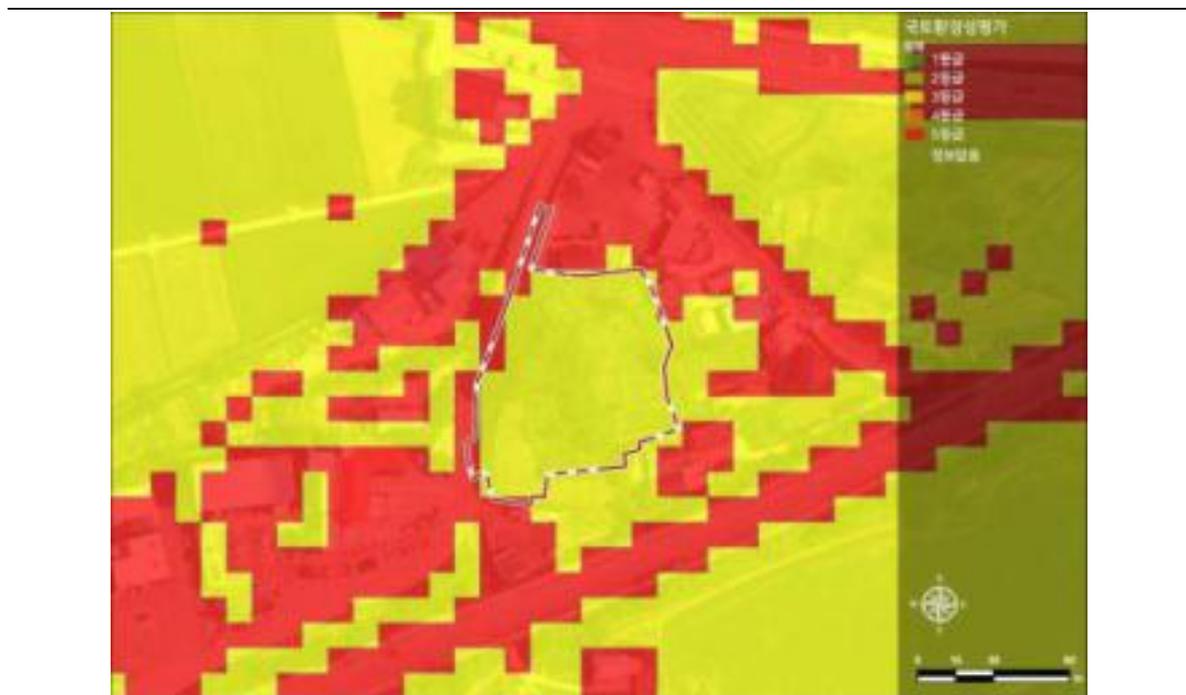
- 대상지 내에는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이 5,303㎡(92.2%), 5등급이 446㎡(7.8%)로 나타남

【표 - 105】 국토환경성평가등급별 면적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1등급	-	-	
2등급	-	-	
3등급	5,303	92.2	
4등급	-	-	
5등급	446	7.8	
정보없음	-	-	
합계	5,749	100.0	

참고. 국토환경성평가도 구분기준

구분	기준
1등급	최우선 보전지역으로 원칙적으로 일체의 개발을 불허
2등급	우선 보전지역으로 개발 불허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소규모의 개발을 부분허용
3등급	보전에 중점을 두는 지역이지만 개발의 행위, 규모, 내용 등을 환경성평가를 통하여 조건부 개발 허용
4등급	개발 수용의 관리를 전제로 친환경적인 개발유도
5등급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개발을 수용



【그림 - 68】 대상 부지 국토환경성평가등급 현황도

4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

4.1 소유자

- 대상지 내에는 사유지가 3,844㎡(66.9%), 공유지가 1,591㎡(27.7%), 국유지가 314㎡(5.5%)로 나타남
- 필지수로는 사유지가 5개, 공유지가 2개, 국유지가 1개로 나타남

【표 - 106】 소유자별 면적표

구분	필지수(개)	면적(㎡)	비율(%)	비고
사유지	5	3,844	66.9	
공유지	2	1,591	27.7	
국유지	1	314	5.5	
합계	8	5,749	100.0	



【그림 - 69】 토지 소유자 현황도

4.2 지목

- 대상지 내의 지목은 전 5,749㎡(100.0%)로 나타남
- 필지수로는 전 8개로 나타남

【표 - 107】 지목별 면적표

구분	필지수(개)	면적(㎡)	비율(%)	비고
전	8	5,749	100.0	
합계	8	5,7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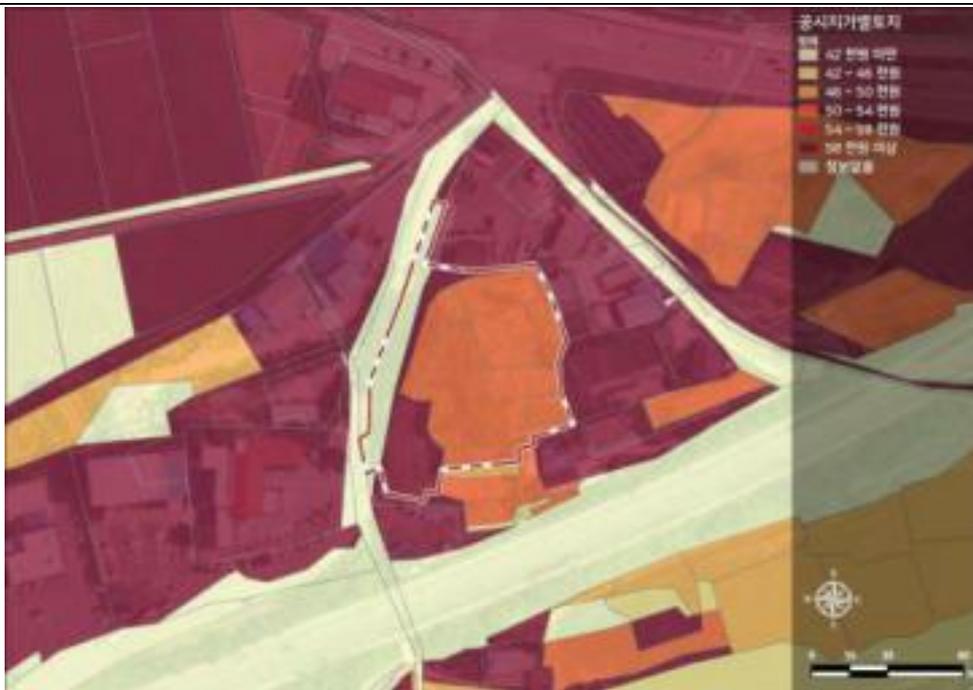
【그림 - 70】 토지 지목별 현황도

4.3 공시지가

- 대상지 내에는 공시지가 42천원 미만인 811㎡(14.1%), 50천원 ~ 54천원이 3,834㎡(66.7%), 58천원 이상이 1,104㎡(19.2%)로 나타남
- 대상지 내의 최고 공시지가는 64,600원/㎡, 최저 공시지가는 16,900원/㎡, 평균 공시지가는 50,012원/㎡로 나타남

【표 - 108】 공시지가 현황표

구분	필지수(개)	면적(㎡)	비율(%)	최고(원/㎡)	최저(원/㎡)	평균(원/㎡)
42천원 미만	1	811	14.1	64,600	16,900	50,012
42천원 ~ 46천원	-	-	-			
46천원 ~ 50천원	-	-	-			
50천원 ~ 54천원	5	3,834	66.7			
54천원 ~ 58천원	-	-	-			
58천원 이상	2	1,104	19.2			
정보없음	-	-	-			
합계	8	5,749	100.0			



【그림 - 71】 공시지가현황도

4.4 건축물 현황

- 대상지 내에는 건축물이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 72】 건축물 구조별 현황도

5 토지이용규제 현황

5.1 용도지역

- 대상지 내에는 자연녹지지역 5,749㎡(100.0%)으로 나타남



【그림 - 73】 용도지역별 현황도

5.2 용도지구

- 대상지 내에는 용도지구가 없음



【그림 - 74】 용도지구별 현황도

5.3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상지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용도구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 109】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표

구분	면적(m ²)	비율(%)	개소수	비고
개발밀도관리구역	-	-	-	
개발제한구역	-	-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	
기반시설부담구역	-	-	-	
기타구역	-	-	-	
도시자연공원구역	-	-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	-	-	
수산자원보호구역	-	-	-	
시가화조정구역	-	-	-	
입지규제최소구역	-	-	-	
지구단위계획구역	-	-	-	
토지거래허가구역	-	-	-	
구역계	5,749	100.0	-	



【그림 - 75】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도

5.4 도시계획시설

- 대상지 내에는 도로 320㎡(5.6%)로 나타남

【표 - 110】 도시계획시설별 면적표

구분	면적(㎡)	비율(%)	개소수	비고
도로	320	5.6	1	
구역계	5,749	100.0	-	



【그림 - 76】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6

공법제한 현황

6.1 하천구역 등

- 대상지 내에는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연안구역, 홍수관리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 111】 하천 면적표

구분	면적(m ²)	비율(%)	비고
하천구역	-	-	
하천구역 예정지	-	-	
소하천구역	-	-	
소하천구역 예정지	-	-	
연안구역	-	-	
홍수관리구역	-	-	
구역계	5,749	100.0	



【그림 - 77】 하천 현황도

6.2 문화재

- 대상지 내에는 문화재가 분포하지 않음

【표 - 112】 문화재 현황

구분	개소수	면적(㎡)	비율(%)	비고
지정문화재구역	-	-	-	국가지정문화재구역, 시도지정문화재구역
등록문화재구역	-	-	-	국가등록문화재구역, 시도등록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	-	-	
현상변경허가구역	-	-	-	
1구역	-	-	-	1-1, 1-2구역 포함
2구역	-	-	-	2-1, 2-2구역 포함
3구역	-	-	-	3-1, 3-2구역 포함
4구역	-	-	-	4-1, 4-2구역 포함
5구역 이상	-	-	-	5~12구역, 기타구역 포함
구역계		5,749	100.0	



【그림 - 78】 문화재 현황도

6.3 교육시설

- 교육시설이 분포하지 않으며,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미세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대상지 주변 반경 1.5km 내에는 학교(미세분) 1개소가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 113】 교육환경보호구역 현황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상대보호구역	-	-	
절대보호구역	-	-	
교육환경보호구역(미세분)	-	-	
구역계	5,749	100.0	



【그림 - 79】 교육시설 입지현황도

6.4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도로구역, 접도구역

- 대상지 내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변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 114】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도로구역, 접도구역 현황

구분	면적(m ²)	비율(%)	비고
상수원보호구역	-	-	
수변구역	-	-	
도로구역	-	-	
접도구역	-	-	
구역계	5,749	100.0	



【그림 - 80】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도로구역, 접도구역 현황도

VI. 건축 기본계획

1. 프로그램 및 면적 검토(안)
2. 비전 및 목표
3. 공간 계획(안)
4. 건축 법규 검토
5. 건축 계획(안)

1

프로그램 및 면적 검토(안)

1.1 해남군 다어울림 문화복지공간 프로그램 및 면적 적용(안)

- 해남군 다어울림 문화복지공간의 면적 산정은 다음과 같음
- 기존 해남군 장애인 복지관, 다목적 체육관 등의 시설검토 후 중복 공간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 또한 장애인 단체, 장애인, 일반인들의 설문을 통해 공간의 필요여부 등을 검토 하였음
- 적정 면적은 약 3,100㎡으로 추정됨
- 공용면적비의 경우 전라남도 공유재산법 참조 하였으며, 장애인 복지회관의 특성, 주민이용공간의 특성 등을 반영을 위해 45%로 산정함

【표 - 115】 해남군 다어울림복합문화복지공간 프로그램 및 면적(안)

구분	세부공간명	기준면적(㎡)	기준인원	개수	총면적(㎡)	비고
상담 및 치료 공간	상담실	20.00	1	1	20.00	준비실 및 창고 공간 포함
	미술활동실	20.00	1	1	20.00	준비실 및 창고 공간 포함
	심리안정실	20.00	1	1	20.00	준비실 및 창고 공간 포함
	심리활동실	20.00	1	1	20.00	준비실 및 창고 공간 포함
	언어활동실	20.00	1	1	20.00	준비실 및 창고 공간 포함
	음악활동실	20.00	1	1	20.00	준비실 및 창고 공간 포함, 방음실
	인지활동실	20.00	1	1	20.00	준비실 및 창고 공간 포함
	대근육활동실	120.00	1	1	120.00	준비실 및 창고 공간 포함
	소근육활동실	120.00	1	1	120.00	준비실 및 창고 공간 포함
	특수교육실	60.00	1	1	60.00	가스, 물 사용공간
교육 공간	집단활동실	60.00	1	1	-	평생학습실 공유
	강당	330.00	1	1	330.00	준비실 및 창고 공간 포함
	강의실	90.00	1	1	90.00	준비실 및 창고 공간 포함
직업 공간	직업적응훈련실	90.00	1	1	90.00	준비실 및 창고 공간 포함
	직업능력평가실	60.00	1	1	60.00	준비실 및 창고 공간 포함
여가 문화 공간	평생학습실	60.00	1	1	60.00	준비실 및 창고 공간 포함
	체육/다목적실	950.00	1	0	-	해남군 다목적체육관 활용
	문화공연장	540.00	1	0	-	강당 공유
재활 공간	물리치료실	20.00	1	1	20.00	준비실 및 창고 공간 포함
	재활치료실	100.00	1	1	100.00	준비실 및 창고 공간 포함
사무 공간	통합사무공간	7.20	28	1	201.60	사무영역 직원 23인 사회복지무원 4인
	관장실	17.92	1	1	17.92	
	접견실	7.00	2	1	14.00	
	창고	0.80	26	1	20.8	
	회의실	3.60	26	1	93.6	
	자료실	0.35	26	1	9.1	
	전산실	9.79	1	1	9.79	

위생 공간	수유실	20.00	1	1	20.00	
기타	식당	1.63	75	1	122.25	1일 150명, 2교대 기준
	휴게실	2.00	10	3	60.00	자원봉사 휴게실 포함
	직원휴게실	2.00	29	1	58.00	
주간 보호	주간보호실	9.90	14	1	138.60	
	주간보호사무실	7.20	4	1	28.80	
전용면적			1	1	1,984.46	
공용면적		0.45	1	1	893.1	공유재산법의 공용면적비 30~40% 수유실, 기타 휴게실, 저온저장고 등 복지회관 특성 반영 주민이용시설의 로비 등 공간 반영
기계실		0.058	1	1	166.9	지하층 지방 공유재산법 근거 산출면적
주장비실		37.00	1	1	37.00	
총장비실		6.60			7.00	
합계					3,088.46	±5%

2

비전 및 목표

2.1 비전 및 목표

1) 비전

『해남군 누구나 생애주기에 맞춘 케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

-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 해남군 내의 단 한명의 장애 유형도 대응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단순 치료와 교육에서 벗어나 생애주기별 학습 및 자립 제공

2) 목표

- 해남군민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추출된 ‘장애 편견과 인식의 전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 할 수 있는 공간’, ‘생애주기별 교육 및 취업 교육까지’ 의 목표 진행
-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플랫폼으로 기능전환을 통한 장애인 서비스 제공
- 지역민에게 휴식과 여유, 어울림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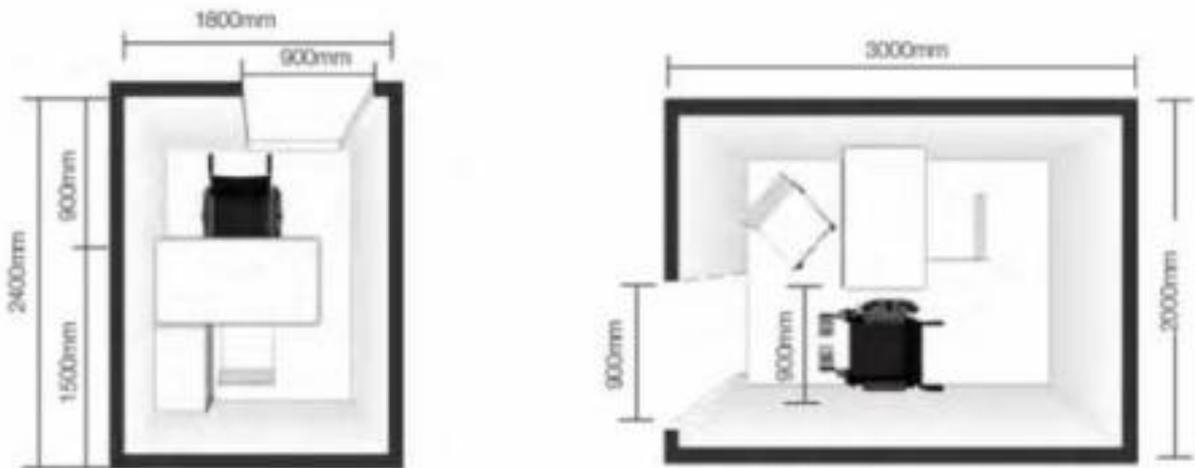
【그림 - 81】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 문화복지공간 비전 및 목표

3 공간 계획(안)

3.1 상담 및 치료공간

1) 상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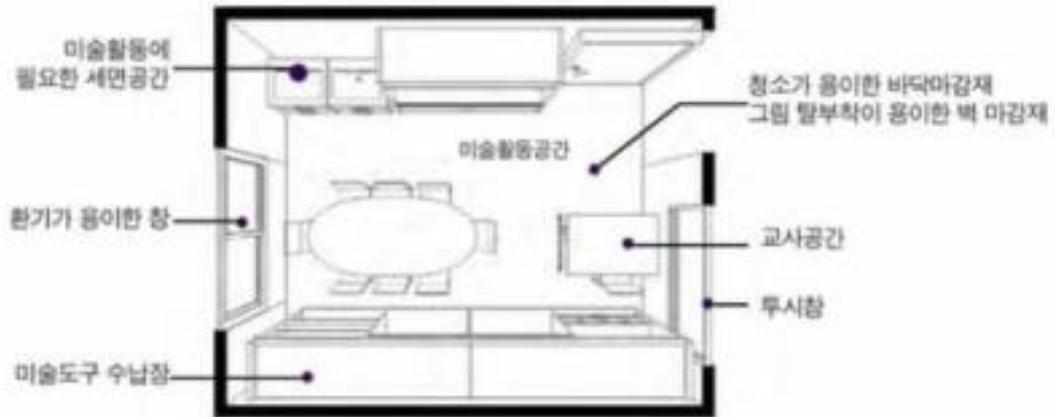
- 상담실은 입소상담, 퇴소상담, 프로그램 교육상담, 기타 개인상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숙성과 기밀성 요구
- 기본적 장비로는 상담이 이루어지는 상담테이블이 필요하며, 내부공간은 휠체어 장애인이 이동 가능 하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
- 흡음능력이 좋은 마감재를 사용하고, 가구는 차갑지 않고 촉감이 따뜻하면서 부드러운 마감재 조성
- 기능적인 직접조명과 간접조명을 적절히 사용하고, 조도 효율이 높은 밝은 색상으로 마감



【그림 - 82】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상담실 예시

2) 미술활동실

- 수채화 등 물을 사용하는 미술활동을 위해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물감 및 연필가루 등의 청소가 용이한 바닥재질 사용
- 이젤, 정물대, 다양한 정물 수납장, 미술용품, 도화지 등의 수납이 가능한 수납장 계획
- 세면대 및 싱크대를 설치하여 미술활동을 준비하고 청소하기에 용이하도록 조성
- 이용자의 연령에 따라 높이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하부 공간 비움 필요
-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지울 수 있는 벽을 제공하고, 작품을 부착하거나 전시하기 쉬운 벽 계획 필요



【그림 - 83】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미술활동실 예시

3) 심리안정실

- 다감각적이고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빛, 소리, 촉각, 향기 자극 등을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조명 및 가구 조성
- 프라이버시의 보호나 치료 중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음능력이 있는 마감재로 조성
- 이용자의 심리상태 및 갑작스러운 신체적 증상 등을 담당자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공간 조성



강남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심리안정실



광주광역시 중증뇌병변장애인맞활동지원센터 심리안정실

【그림 - 84】 심리안정실 예시

4) 심리활동실

- 활발한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아이의 감정표현, 스스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 및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놀이기구 배치
- 천장 마감 시 천장에 매다는 운동기구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
-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벽면과 바닥의 재질을 나무로 사용
- 아이들의 옷, 가방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 담당자가 관리하는 수납장의 경우 잠금장치 설치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심리활동실



아이맘 심리 상담센터 심리활동실

【그림 - 85】 심리활동실 예시

5) 언어활동실

- 담당자가 1인부터 다양한 소그룹 언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변성 제공
- 아동이 사용하는 도구와 담당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수납공간 분리 계획
- 언어표현력 증진 및 또래관계 증진을 위해 소형 장난감 수납 및 진열, 대형 장난감 수납 및 놀이공간 필요



서울시 노원구 성민복지관 언어활동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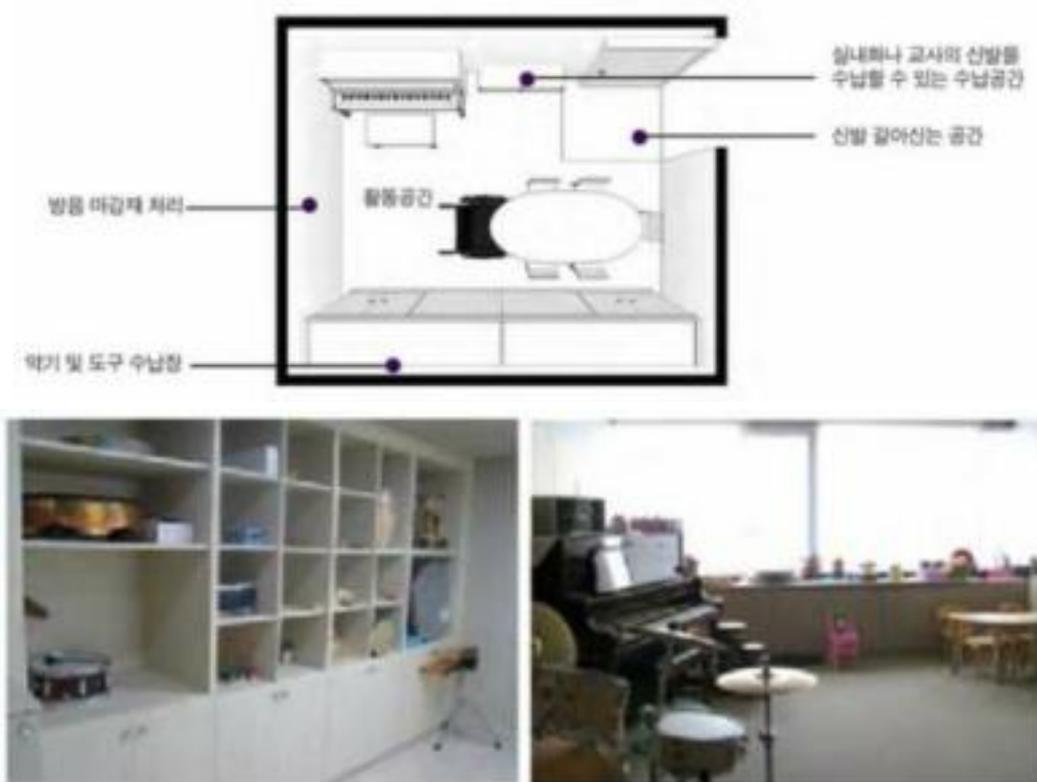


남양주 장애인복지관 언어활동실

【그림 - 86】 언어활동실 예시

6) 음악활동실

- 다양한 음악활동이 가능하도록 방음이 되는 마감재 사용
- 악기 등의 가구들을 적절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바닥은 휠체어 등의 바퀴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마감
- 기본적으로 악보대, 악기를 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하며, 내부공간은 휠체어 장애인이 이동 가능 하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



【그림 - 87】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음악활동실 예시

7) 인지활동실

- 다양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 등을 설치하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계획
- 프로그램에 따라 이동할 경우를 고려하여 이동·운반이 편리한 의자와 테이블 계획
- 인지활동에 있어서 이용자가 많음을 고려하여 환기에 유의
- 시청각강의가 가능하도록 스크린, 빔 프로젝터 등의 설비 구축
- 책상 주변에 각자 가방을 놓거나 우산, 목발 등을 기대거나 걸칠 수 있는 걸이 계획



서울시 도봉구 노인종합복지관 인지활동실



고령군 요양병원 인지활동실

【그림 - 88】 인지활동실 예시

8) 대근육활동실

- 지체장애, 발달장애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운동 놀이기구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
- 트램펄린, 클라이밍, 그물사다리, 짚라인 등의 구조물과 게임형 콘텐츠를 체험해 신체 발달 도모하도록 계획
-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안전한 재질로 고려
- 천장 마감 시 천장에 매다는 운동기구 설치 고려
- 다양한 운동기구 및 응급상황 대비 도구를 비치하여 담당자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
- 보호자나 담당자가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일부 유리창을 계획
- 최근에는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실 방식으로 기존 재활치료의 공간적 제약 문제를 가상현실 기반 디지털 기술로 극복하여 대근육 활동훈련 제공
- 터치센싱 트레이닝, 모션인식 트레이닝, 디지털 스캐너 등의 설치를 위한 설비 계획



서울시 서초구 장애인복지관 대근육활동실



양천해누리복지관 스마트 대근육활동실

【그림 - 89】 대근육활동실 예시

9) 소근육활동실

- 다양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 등을 설치하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계획 필요
- 집중력, 소근육 향상을 위해 적절한 활동 도구를 배치하여 담당자와 함께 수업하도록 계획
- 보호자나 담당자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일부 유리창 계획
- 담당자가 관리하는 수납장의 경우 잠금장치 설치 필요



강남장애인복지관 소근육활동실



부산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소근육활동실

【그림 - 90】 소근육활동실 예시

10) 특수교육실

- 세면대,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 주방시설을 설치하여 특수교육에 부합하도록 설계
- 휠체어에 앉아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낮은 높이 수납장 계획
- 다양한 특수교육에 부합하는 물품을 수납 가능한 수납장 계획
- 다양한 특수활동을 위해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청소가 용이한 바닥재질 사용



서산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실



경북 예천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실

【그림 - 91】 특수교육실 예시

3.2 교육공간

1) 집단활동실

- 평생학습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 이동할 경우를 고려하여 이동·운반이 편리한 의자와 테이블 계획
- 시청각강의가 가능하도록 스크린, 빔 프로젝트 등의 설비 계획
- 채광조절이 가능한 커튼, 빛 블라인드 등을 설치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집단활동실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집단활동실

【그림 - 92】 집단활동실 예시

2) 강 당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
- 벽면 및 천장에 흡음재료를 사용하여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설계
- 무대에는 휠체어 등이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 또는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



【그림 - 93】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강당 예시

3) 강의실

- 프로그램에 따라 이동할 경우를 고려하여 이동·운반이 편리한 의자와 테이블 계획
- 이용자가 많은 강의실의 경우 환기설비 계획 고려
- 시청각강의가 가능하도록 스크린, 빔 프로젝트의 설비 계획
- 책상 주변에 각자 가방을 놓거나 우산, 목발 등을 기대거나 걸칠 수 있는 걸이 계획



서울시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강의실



서울시 동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강의실

【그림 - 94】 강의실 예시

3.3 직업공간

1) 직업적응훈련실

- 다양한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수납공간을 충분히 계획
- 채광조절이 가능한 커튼, 빛 블라인드 등을 설치
- 직업적응을 담당하는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 자료 및 개인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서울시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직업적응훈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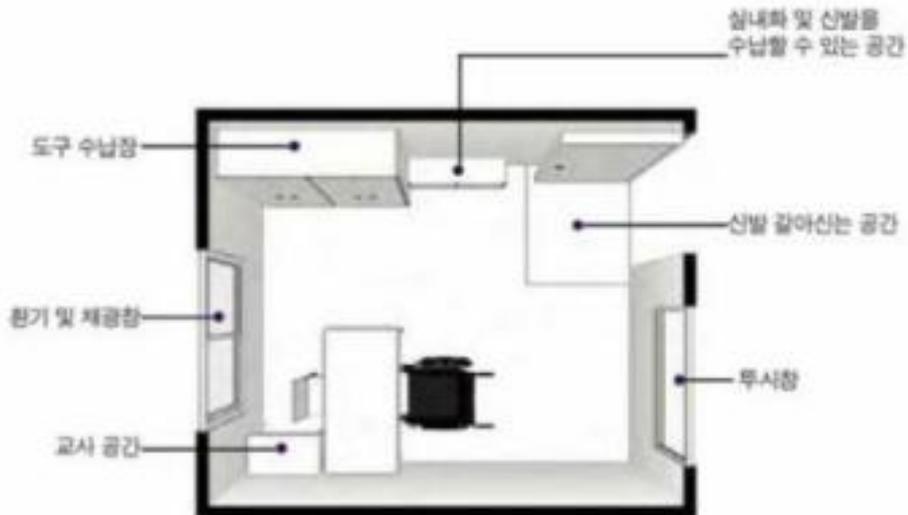


상록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직업적응훈련실

【그림 - 95】 직업적응훈련실 예시

2) 직업능력평가실

- 이용자1인이 담당자 1인과 함께하는 능력평가 공간을 중심으로 계획
- 경우에 따라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거나 참관할 수 있도록 계획
- 담당자가 평가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개인 공간과 가구 계획 필요
- 직업능력평가실의 기본적 가구로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테이블이 필요하며, 내부 공간은 휠체어 장애인이 이동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 정숙과 기밀성이 요구되는 공간으로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을 적절히 사용하고 조도 효율이 높은 색상으로 마감
- 조도는 다소 은은한 편으로 간접조명이 좋고 필요이상 밝지 않도록 계획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직업능력평가실



서울시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능력평가실

【그림 - 96】 직업능력평가실 예시

3.4 여가문화공간

1) 평생학습실

- 이용자 가구는 휠체어 사용자 등을 고려한 구조로 계획
- 시청각강의가 가능하도록 스크린, 빔 프로젝트 등의 설비 계획
- 강단, 칠판, 수강책상 등 영역을 분리하여 조명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획
- 이중바닥시스템(Access Floor)설치에 따른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평생학습실



양평군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실

【그림 - 97】 평생학습실 예시

3.5 재활공간

1) 물리치료실

- 대부분의 복지관에서는 물리치료법과 운동치료법을 운영하는 공간을 함께 두어 커튼이나 칸막이로 공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치료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따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
- 물리치료실을 아동과 성인으로 구분하여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공간계획 필요
- 물리치료실에는 환자가 누울 수 있는 침대와 물리치료기기, 수납장이 배치될 수 있으며, 침대 양쪽 주변에는 의사 또는 휠체어 사용자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요
- 공간배치 시 외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심리적 치유효과 도모
- 필요한 기기 및 기구를 수납할 수 있는 창고를 계획하고, 휠체어나 보행보조기구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요
- 치료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상주하는 경우, 간단한 업무를 보고 자료 및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공간 계획



성인 물리치료실



소아 물리치료실

【그림 - 98】 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물리치료실 예시

2) 재활치료실

- 기관에 따라 재활치료실을 아동과 성인으로 구분하여 이용자 특성에 따라 계획
- 다양한 동선이 가능하고, 전면거울과 핸드바, 음향시설을 갖도록 계획
-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안전한 재질로 고려하여 계획
- 전도에 따른 충격 흡수를 고려하고,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
- 천장 마감 시 천장에 매다는 운동기구의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
- 기능을 회복하거나 감퇴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비와 공간 계획
- 필요한 기기 및 기구를 수납할 수 있는 창고를 계획하고, 휠체어나 보행보조기구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요
- 이중바닥시스템(Access Floor)설치에 따른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재활치료실



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치료실

【그림 - 99】 재활치료실 예시

3.6 기 타

1) 식 당

- 식당 출입문은 여러 사람이 이동하므로 가급적 1,200mm 이상으로 설치하되, 전동휠체어의 통행을 고려하여 1,800mm를 권장하며, 가구 또한 휠체어 사용자의 불편 없는 형태로 일부 구성
- 4~6명이 둘러 앉아 식사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소규모 영역으로 구획하여 공간 조성
- 식당 주변에는 식사를 기다리거나 식사 후 휴식할 수 있는 휴게 공간 마련
- 식당 출입문 주변과 식수대 주변에 식사 전·후 위생관리가 가능한 세면대와 거울 설치
- 유지관리가 용이한 바닥마감재 시공
- 장애인 복지관 특성상 기부 물품 등의 보관을 위한 저온 저장고 확보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테이블 간격



【그림 - 100】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식당 예시

3.7 주간보호

1) 주간보호실

- 다양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 등을 설치하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계획
- 프로그램에 따라 이동할 경우를 고려하여 이동·운반이 편리한 의자와 테이블 계획
- 다양한 놀이기구 및 학습교구를 비치하여 담당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
-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여러명이 동시에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도록 공간 마련
- 우산이나 휠체어 등의 수납공간, 벤치, 손잡이 등을 설치
- 주간보호실의 입구는 다른 장애인들과 겹치지 않는 독립된 입구 설치
- 주간보호실 내 사용가능한 화장실 샤워실 계획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실



대전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 주간보호실

【그림 - 101】 주간보호실 예시

3.8 기타공간

- 장애인 복지회관의 특성상 활동 보조사, 보호자 등과의 방문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휴게공간의 확보 필요
-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공간 확보 필요

4

건축 법규 검토

4.1 건축 법규

【표 - 116】 건축 법규 검토

법규명 및 조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계기준	비 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건축물의 용도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건축면적	-	797.20	
	연면적	-	3,216.29	
국토법 시행령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국토법 시행령 51조	개발행위허가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m이상의 절토	검토
해남군 군계획 조례	건폐율	자연녹지지역 20% (797.20/5188.43*100)	15.36%	적법함
해남군 군계획 조례	용적률	자연녹지지역 100% (2,988.36/5188.43*100)	57.60%	적법함
해남군 건축조례 제20조	대지안의조경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1,705.90/5188.43*100)	32.89%	적법함
해남군 건축조례 제23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2. 인접대지경계선 바. 그밖의 건축물0.5m이상	0.5m이상 이격	적법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3층이상,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노인복지시설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건축물	적용 2개소
해남군 주차장 조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그 밖에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3,216.29/300=10.72대	법정:11대 계획: 50대(장애인주차 3대 전기차3대포함)	적법함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설치대상 : 노유자시설	-	적법함

4.2 절차 법규

주. O: 해당법률 적용, X: 해당법률 미적용, △: 해당법률 검토필요

【표 - 117】 건축 절차법규 검토

검토항목	근거법령	검토내용	비고
도시계획시설에의 저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43조 동시행령 제25조, 제35조, 제71조 및 제8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해당없음	X
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4조	해당없음	X
교통영향평가 대상	교통영향평가지침[별표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해당없음	X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제43조 동시행령 제7조, 제8조, 제31조, 제59조 및 별표2, 3, 4	해당없음	X
소규모 재해 영향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동시행령 제6조 및 별표1 5,000㎡이상 50,000㎡이하	해당	○
지하안전 영향평가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에 의거, 굴착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할 경우 해당	해당없음	X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해당	해당없음	X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의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신·재생 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등) 제2항(공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신축·증축·개축시 - 동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제①항제1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022~2023년 이후 32%이상(별표2) - 2024~2025년 이후 34%	적용대상	○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등)에 의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적용대상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공 건축물을 신축 또는 별도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적용대상	○
제로에너지 건축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②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 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함	적용대상	○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제②항제3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제7조 동법 제10조의2(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②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적용대상	○

검토항목	근거법령	검토내용	비고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계획의 수립보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보고) 제2항 제2목에 의거, 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실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적용대상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법 제4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1항7	해당없음	X
공공디자인심의	해남군 경관조례 제23조 3	500제곱이상	○
건축허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9조, 동시행령 제22조	적용대상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①항1, 2호에 의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적용대상	○
설계의 안전성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98조	해당없음	X
설계공모방식 발주 등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제23조 및 동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20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1억원) 이하	X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	의무대상 아님	X
상주감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⑤항(상주감리대상) 2.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4. 준다중이용건축물(1천제곱미터 이상)건축공사	적용대상	○
감독권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동시행령 제55조 1항 200억이상 공사	해당없음	X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시 해당	해당없음	X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9조 및 제80조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2조(국토부고시 제2013-458호)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하이므로 해당없음	X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조 및 제57조(기획재정부, 2014.7.)	사업비 200억원 미만이므로 해당없음	X

5

건축 계획(안)

5.1 건축계획(안)

1) 건축개요

【표 - 118】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기본계획 건축개요(안)

대지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7 일원					
규 모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 지상 4층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면 적	대지면적	5,749㎡	건축면적	786.63㎡ (최대 1,149.8㎡)	연면적	3,207.29㎡ (최대 5,749㎡)
			건폐율	13.68% 5,749/786.63x100	용적률	50.67% 5,749/2,912.96x100
높 이	기준층상고	4m	최고높이	20m(강당)		
건축법상용도	노유자시설(장애인 복지회관)					

2) 배치대안검토

【표 - 119】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배치대안평가

	대안 1(일자형)	대안 2(ㄱ자형)	대안 3(일자형 변형)
배치도			
공통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면수 : 54대(장애인 3대, 친환경차 3대) - 건물 전면진입, 보차 분리 		
배치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효율적 사용 - 대부분의 실에서 남향, 남서향 배치, 외부공간 활용성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선이 짧아짐 - 공간을 집약적으로 사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핑거 플랜을 통한 다양한 외부 공간 활용가능(실내 공간과 연계한 외부공간 조성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선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음 (편복도와 중복도 구성을 통해 효율이 높아질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실내환경이 고르지 않음 (북향 및 서향) - 공용공간의 비율이 높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선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음 (편복도와 중복도 구성을 통해 효율이 높아질 수 있음)



【그림 - 102】 배치계획(안)



【그림 - 103】 배치계획 대안_버스 주차(안)

- 배치계획의 경우 진출입구, 보차분리, 수요자 측의 주차 요구대수인 50대를 기반으로 검토하였음
- 동일면적 내 버스 주차를 고려 시 주차 대수는 약 35대 수준으로 감소하며, 기존의 50대 계획 시 휴게마당의 면적이 약 600㎡, 전면 휴게 마당의 약 40%정도가 감소함
- 건축물 배치를 통해 3곳의 외부공간이 조성되었으며, 휴게공간, 야외체험공간, 놀이 및 체육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의 성격 및 비전을 통해 공간의 활용 검토가 필요함

3) 외부 공간계획

- 외부공간은 배치계획에 의해 나누어지는 외부 공간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복지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공간임
- 설문을 통한 외부 공간의 활용은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 일반시민 모두 휴식이 가능한 녹지 공간, 다목적 광장, 교육 및 체험 공간 순으로 답함
- 현재 배치 계획상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요에 따른 공간 제안을 제시함

【표 - 120】 외부 공간 조성 제안(안)

휴식형	활동형	교육형
		

4) 입구 및 동선계획

- 대상부지 인접 도로의 경우 '대경 상사'와 기존 장애인 복지관 진입을 위해 중앙선이 절삭되어 있어 '대경 상사' 입구 절삭부를 통해 사거리 형태로 진입도로를 개선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됨

□ 기술자문 내용

- 사업지의 출입구 위치는 주변에 접한 도로의 교차로와 연계되도록 설치 검토
- 잦은 교차로 설치 시 상충 요인 발생 및 안전상의 우려
- 사업지 출입구에는 유발수요 여건상 신호등 설치까지는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 되나 교차로 인지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해 점멸등 설치 검토
- 사업지 외부에서 보행동선 연계를 위해서는 가급적 차량이 정지하는 교차로와 보행광장이 접하는 인근에 설치하고 도로의 선형이 곡선부임을 감안하여 시인성이 확보되고 차량통행이 비교적 적은 지점으로 설치
- 시설의 이용 특성상 교통약자의 이동이 많으므로 적정 장애인주차대수를 설치하고 확장형 주차면으로 최대한 확보하여 이용 편의 도모
- 대형주차면이 필요할 경우 소요면적이 대형이므로 적정공간을 확보하고 DROP ZONE을 설치하여 승하차 공간 조성
- 기타 사업지 주변에 필요한 안전시설(반사경, 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보강하여 교통 안전성 도모



【그림 - 104】 입구 및 동선계획 - 기술자문내용

- 또한 이와 연계한 횡단보도, 점멸등 또는 신호등의 설치,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정온화 시설이 계획되어야 함
- 이는 교통량 조사 등을 통해 방안모색이 필요함
- 주 이용객이 장애인으로 이에 대한 동선계획이 필요
-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보차분리를 통해 안전확보 필요



【그림 - 105】 입구 및 동선계획(안)

5) 평면계획

- 평면계획의 경우 프로그램의 유사성, 이용자의 패턴 등을 통해 조닝되어야 함
- 시설 공간의 유사성은 다음과 같음
- 프로그램 지원 공간인 휴게공간 및 창고의 경우 각 조닝별, 각 층별, 분포되어야함
- 특수교육실의 경우 교실 내 물의 사용, 열 에너지원 등의 사용으로 식당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표 - 121】 프로그램 별 조닝(안)

구분	세부공간명
상담 및 치료공간	상담실, 미술활동실, 심리안정실, 심리활동실, 언어활동실, 음악활동실, 인지활동실, 대근육활동실, 소근육활동실 (특수교육실 제외)
교육공간	집단활동실, 강당, 강의실
직업공간	직업적응훈련실, 직업능력평가실
여가문화공간	평생학습실
재활공간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사무공간	통합사무공간, 관장실, 접견실, 창고, 회의실, 자료실, 전산실
위생공간	수유실
기타	식당, 특수교육실
주간보호	주간보호실 , 주간보호실사무소

- 조닝과 연계하여 층별 구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1층의 경우 이용객들의 편의성, 외부 이용객(장애인이 아닌)들의 이용으로 식당, 로비, 안내데스크, 휴식공간(카페테리아 등)이 계획되어야 함
- 식당 및 카페테리아의 경우 오픈형 도어(폴딩도어 등)를 활용하여 외부 공간과의 연계, 외부행사 지원 역할 수행이 필요함
- 또한 주간보호센터 경우 주간보호센터 이용객을 위한 개별 입구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1층에 위치하는 것이 좋음
- 교육공간 중 직업 공간의 경우 내부 공간과 외부공간을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1층 또는 최상층, 지하층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함
-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빈도가 높으므로 2층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함
- 사무공간의 경우 내부이동 및 외부공간의 감시가 필요하므로 고층에 위치하는 것이 효율적임

- 다목적 실의 경우 내부에 기둥 등의 구조부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하므로 최고층에 위치 하거나 별도 형태의 계획이 필요함

【표 - 122】 층별 계획(안)

구분	세부공간명
지하층	기계실
1층	주간보호 센터, 식당, 로비, 직업 교육실, 휴게공간(카페테리아), 안내데스크 등
2층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등
3층	사무영역 등
4층	여가공간, 다목적 공간, 직업교육실 등

【표 - 123】 층별 면적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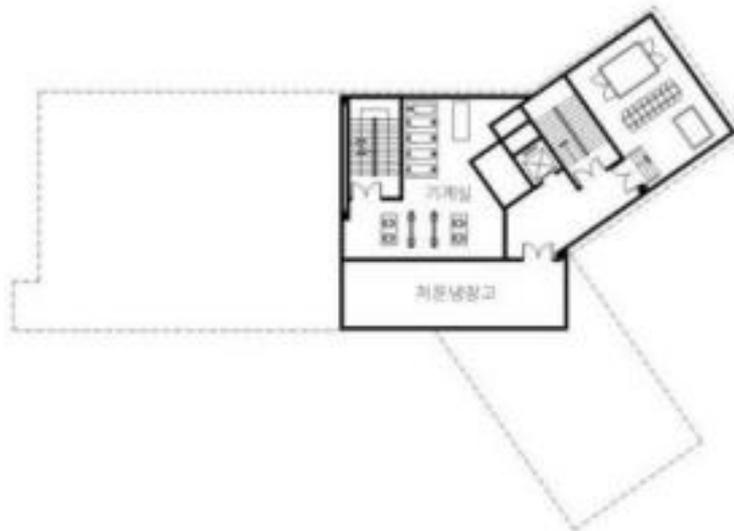
구분	실명	면적 (㎡)	비고
지하층	기계실	80.02	
	전기실	64.98	
	저온냉장고	66.14	
	공용	81.19	
	소계	292.33	
1층	주간보호사무실	204.48	창고/사위탈의/화장실 포함
	카페	96.48	
	식당	150.43	조리실포함
	화장실	46.61	
	공용	196.43	
	소계	694.43	
2층	인지활동실	16.50	
	언어활동실	16.50	
	심리안정실	16.50	
	심리활동실	16.50	
	준비실	16.50	
	미술활동실	16.50	
	음악활동실	16.50	
	상담실	16.50	
	휴게실1	20.46	
	휴게실2	22.17	
	수유실	12.09	
	특수교육실	59.29	
	놀이교실	73.14	
	일반교실1.2	79.20	
	재활치료실	79.20	
	화장실	46.61	
	공용	221.53	
	소계	745.69	
3층	통합사무공간	235.62	창고-9.99 전산실-9.62 자료실-9.99 포함
	회의실	79.20	
	관장실	18.00	

	접견실	15.00	
	자원봉사자휴게실	22.17	
	휴게실	12.09	샤워/탈의실-15.33 포함
	근육활동실	146.32	
	화장실	46.61	
	공용	168.11	
	소계	743.12	
4층	창고	18.89	
	대기실	27.31	
	강당	297.00	
	직업교육 및 훈련실	142.50	
	화장실	46.61	
	공용	189.05	
	소계	721.36	
합계		3,196.93	

□ 지하 1층 평면계획

【표 - 124】 지하 1층 면적표(안)

구분	실명	면적 (㎡)	비고
지하층	기계실	80.02	
	전기실	64.98	
	저온냉장고	66.14	
	공용	81.19	
	소계	29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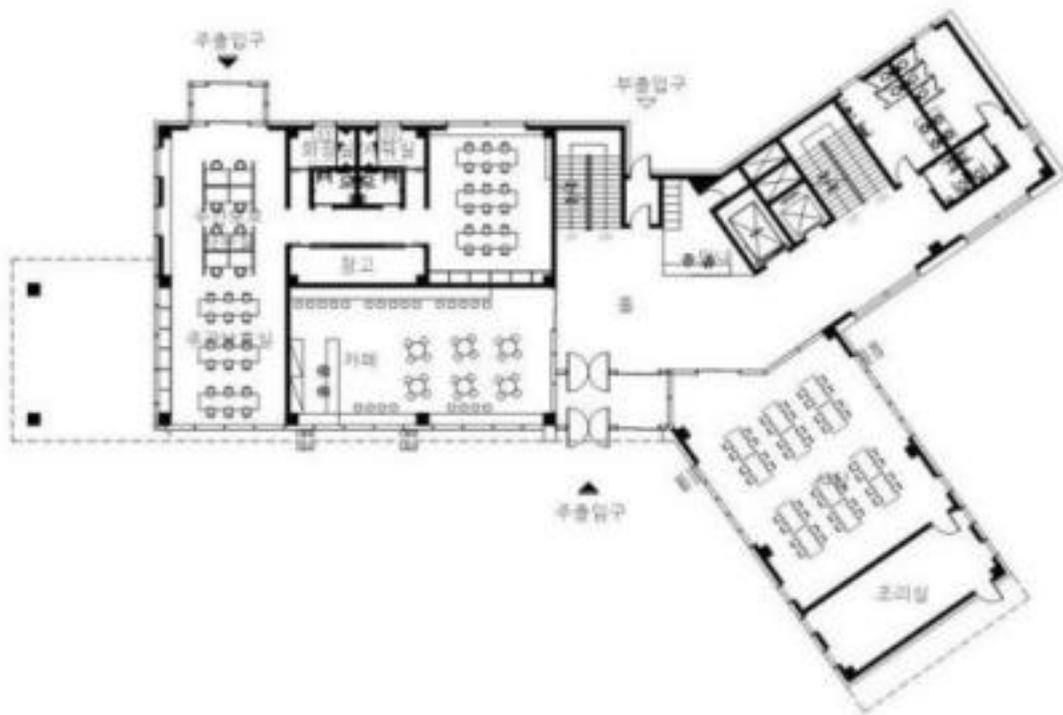
■ 지하층 평면도 축척:1/200

【그림 - 106】 지하층 평면 계획(안)

□ 1층 평면 계획

【표 - 125】 1층 면적표(안)

구분	실명	면적 (㎡)	비고
1층	주간보호사무실	204.48	창고/사워탈의/화장실 포함
	카페	96.48	
	식당	150.43	조리실포함
	화장실	46.61	
	공용	196.43	
	소계	69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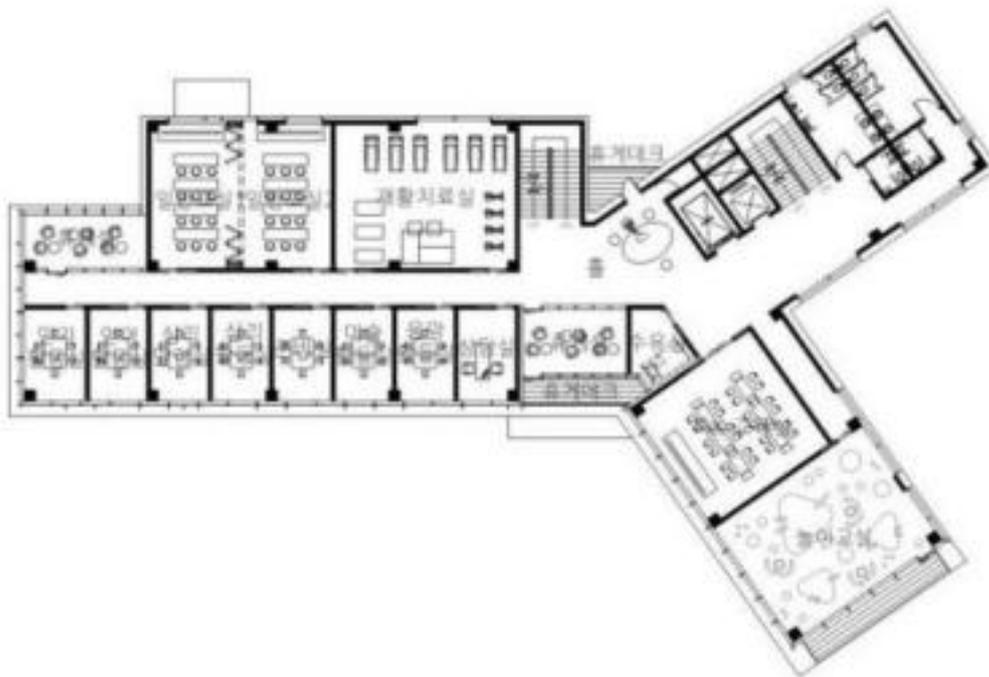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축척:1/200

【그림 - 107】 1층 평면 계획(안)

□ 2층 평면 계획

【표 - 126】 2층 면적표(안)

구분	실명	면적 (㎡)	비고
2층	인지활동실	16.50	
	언어활동실	16.50	
	심리안정실	16.50	
	심리활동실	16.50	
	준비실	16.50	
	미술활동실	16.50	
	음악활동실	16.50	
	상담실	16.50	
	휴게실1	20.46	
	휴게실2	22.17	
	수유실	12.09	
	특수교육실	59.29	
	놀이교실	73.14	
	일반교실1.2	79.20	
	재활치료실	79.20	
	화장실	46.61	
	공용	221.53	
소계	74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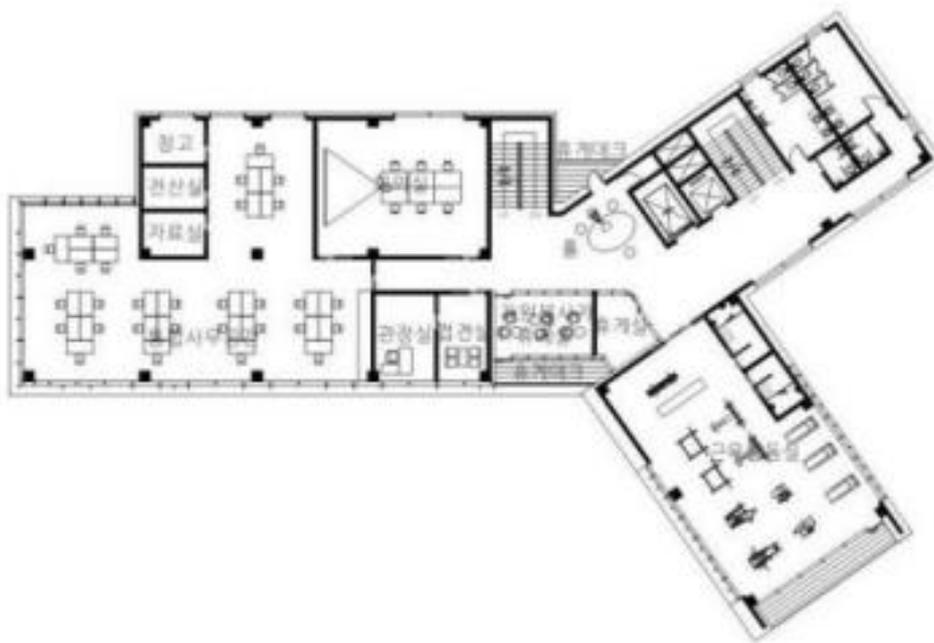
■ 2층 평면도 축척:1/200

【그림 - 108】 2층 평면 계획(안)

□ 3층 평면 계획

【표 - 127】 3층 면적표(안)

구분	실명	면적 (㎡)	비고
3층	통합사무공간	235.62	창고-9.99 전산실-9.62 자료실-9.99 포함
	회의실	79.20	
	관장실	18.00	
	접견실	15.00	
	자원봉사자휴게실	22.17	
	휴게실	12.09	샤워/탈의실-15.33 포함
	근육활동실	146.32	
	화장실	46.61	
	공용	168.11	
	소계	74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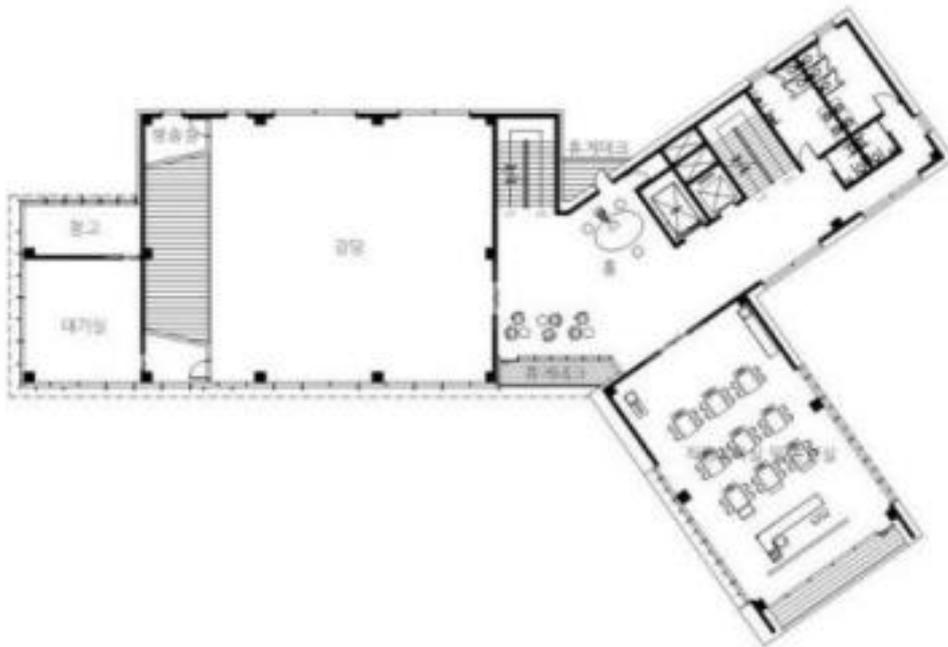
■ 3층 평면도 축척:1/200

【그림 - 109】 3층 평면 계획(안)

□ 4층 평면 계획

【표 - 128】 4층 면적표(안)

구분	실명	면적 (㎡)	비고
4층	창고	18.89	
	대기실	27.31	
	강당	297.00	
	직업교육 및 훈련실	142.50	
	화장실	46.61	
	공용	189.05	
	소계	721.36	



■ 4층 평면도 축척:1/200

【그림 - 110】 4층 평면 계획(안)



【그림 - 111】 조감도(안)



【그림 - 112】 남측면 조감도(안)



【그림 - 113】 서측면 조감도(안)



【그림 - 114】 동측면 조감도(안)



【그림 - 115】 북측면 조감도(안)



【그림 - 116】 휴게마당 조감도(안)

Ⅶ. 사업 검토

1. 공사비 검토 및 예산 계획(안)
2. 경제성 분석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 공사비 검토 및 예산 계획(안)

1.1 공사비 검토

1)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요령 및 일반사항

- 서울시에서 시행된 공사의 설계가를 평균 공사비로 산정하여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정한 자료로써 개략적인 공사비 추정을 통해 예산편성에 참고 가능
- 공사비 보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을 적용
- 23년 5월 비주거용 공사비 지수는 149.94임

■ 건설공사비지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표(2015월말=100)

구분	2022년12월	2022년6월	2021년12월	2021년6월	2020년12월	2020년6월	2019년12월	2019년6월	2018년12월	2018년6월	2017년12월	2017년6월
건설	143.56	147.31	136.89	132.06	121.2	116.07	117.33	116.06	113.97	111.3	108.81	106.12
-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147.39	146.48	136.32	131.51	121.33	117.81	116.94	115.8	113.88	111.78	108.77	106.17
- 주거용건물	147.58	146.3	136.02	131.41	121.62	116.58	117.24	116.08	114.12	111.33	108.98	106.38
- 비주거용건물	147.29	146.7	136.56	131.62	121.09	117.09	116.7	115.64	113.78	111.15	108.66	105.98
- 건축보수	147.08	146.11	136.42	131.34	121.16	117.84	116.78	115.4	113.16	110.64	108.33	106.06

【그림 - 11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

- 신축공사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준 자료로써, 공사비는 이설비(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를 제외한 발주금액(도급비 + 부가가치세 + 관급비)를 말함
- 22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된 공사비이며 최종 공사발주 시점의 물가상승률을 공사비에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복지지원센터 단위공사비 (22년 3월 기준)

복지지원센터 [단위 : 천원/㎡]

구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5,000㎡미만	4,136	3,971	3,521	
5,000㎡~15,000㎡	3,974	3,815	-	
15,000㎡초과	3,857	3,703	-	
평 균	3,978	3,819	-	

【그림 - 118】 서울시 공사비 책정 기준(복지지원센터)

- 신축공사이며 22년 3월 기준 단위공사비는 5,000㎡미만 기준 4,136천원/㎡임
- 22년 3월 공사비 지수는 143.15이며 23년 5월 기준 149.94 으로 약 4.75% 상승하였음
- 약 14개월간 8.2% 상승하였으며, 1개월당 약 0.39% 상승하였으며, 예상 공사발주시기인 25년 6월 기준 8.13%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이에 적용공사비는 4,136천원/㎡ × 8.13% 인 4,473천원/㎡으로 추정됨

1.2 예산 계획(안)

【표 - 129】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예산 계획(안)

항 목		금 액	비 고	
대분류	소분류			
A. 용지비	용지구입비	805,611천원	고도리 7번지외 6필지(4,158㎡)	
	보상비	-		
	소계	805,611천원		
B. 공사비	부지조성공사비	500,000천원		
	건축공사비	13,864,000천원	건축공사비 4,473천원/㎡, 약 3,100㎡기준	
	기존시설 철거비	-		
	특수요인 보정	-		
	시설 공사비	554,560천원	공사비의 4% 시설 공사비	
	소계	14,918,560천원		
C. 부대비	설계공모비용	59,000천원		
	설계용역비	689,321천원	부가세포함	
		설계비	687,830천원	
		손해배상보험료	1,491천원	
	설계의도 구현관련	62,000천원	설계비의 9%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1,427,470천원	건축사업무대가기준	
	인증 관련	50,000천원	BF 인증 수수료(1,000㎡~3,000㎡미만) 보건안전대장, 에너지효율, 녹색인증 ,설계적정성검토 등 BF인증 대가(실비정산) 등	
	평가 및 조사 관련	-		
	제세공과금	-		
	소계	2,287,791천원		
D. 예비비	-			
E. 총사업비	18,011,962천원			

1.3 설계용역비 산출조서

【표 - 130】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설계용역비 산출 조서

용역명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설계용역
총 공사비	금14,364,000,000원
- 적용 공사비	금13,058,181,181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산출방법	공사비요율방식

요율산정식(직선보간법)		
X	(당해금액)	= 13,058,181,181
Y	(당해공사비요율)	= 4.183%
x_1	(큰 금액)	= 20,000,000,000
x_2	(작은 금액)	= 10,000,000,000
y_1	(작은 금액 요율)	= 4.22%
y_2	(큰 금액 요율)	= 4.10%

$$Y = y_1 - \frac{(X - x_2) \times (y_1 - y_2)}{x_1 - x_2}$$

구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비고
기준요율	$Y = 4.22\% - \left[\frac{(13,058,181,181 - 10,000,000,000)}{(20,000,000,000 - 10,000,000,000)} \times (4.22\% - 4.10\%) \right]$				제2종 보통 (중급)
산출요율	4.183%				
적용요율	4.183%				
산출금액	13,058,181,818 × 4.183% × 100% = 546,200,000원				※ 단단위 절사
추가용역업무	친환경건축물(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인증(1등급)				해당없음
①	546,200,000	x	10%+1/2*9.0%	=	79,100,000
②	-				
공급가액	625,300,000원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6조 제5항 제6호
	계획설계	625,300,000 × 20%	=	124,080,000	계획설계 20%
	중간설계	625,300,000 × 30%	=	186,120,000	중간설계 30%
	실시설계	625,300,000 × 50%	=	310,200,000	실시설계 50%
부가가치세	62,530,000원				
소계	687,83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건축사공제조합 실시설계 요율 적용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 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 2019.1 2.30.) ※천원미만절사
		1,491,000원			
	실시설계	312,650,000 × 0.477%	=	1,491,000	
총 용역금액	689,321,000원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단위:%)

공사비	종 별 도서의양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원		12.55	10.46	8.36	11.41	9.51	7.61	10.22	8.51	6.81
1억원		11.48	9.56	7.65	10.43	8.69	6.95	9.38	7.82	6.25
2억원		9.99	8.33	6.66	9.08	7.57	6.05	8.16	6.80	5.44
3억원		8.68	7.23	5.78	7.88	6.57	5.26	7.08	5.90	4.72
5억원		7.90	6.58	5.26	7.18	5.98	4.79	6.46	5.38	4.30
10억원		7.03	5.86	4.68	6.39	5.32	4.26	5.75	4.79	3.83
20억원		6.22	5.19	4.15	5.66	4.72	3.77	5.09	4.24	3.40
30억원		5.91	4.93	3.94	5.38	4.48	3.58	4.84	4.03	3.23
50억원		5.72	4.76	3.81	5.20	4.33	3.46	4.68	3.90	3.12
100억원		5.58	4.65	3.72	5.07	4.22	3.38	4.56	3.80	3.04
200억원		5.42	4.51	3.61	4.92	4.10	3.28	4.43	3.69	2.96
300억원		5.32	4.44	3.55	4.84	4.03	3.23	4.36	3.63	2.91
500억원		5.25	4.38	3.50	4.77	3.98	3.18	4.30	3.58	2.87
1,000억원		5.14	4.29	3.43	4.68	3.90	3.12	4.21	3.50	2.80
2,000억원		5.06	4.22	3.38	4.60	3.84	3.07	4.14	3.45	2.76
3,000억원		5.01	4.17	3.34	4.55	3.79	3.03	4.10	3.42	2.73
5,000억원		4.93	4.11	3.28	4.48	3.73	2.99	4.03	3.36	2.69

※ 용역손해배상공제 요율표

설계 ·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97호)

[실시설계 공제요율]

(단위:%)

공사종류	용역금액(계약금액)										기본 요율 적용 기간 (년)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가설건축물	0.41	0.065	0.398	0.063	0.386	0.061	0.373	0.06	0.361	0.057	2
공작물 (굴뚝,옹벽,고가수조등)	0.41	0.065	0.398	0.063	0.386	0.061	0.373	0.06	0.361	0.057	1
문화 및 집회시설	0.41	0.065	0.398	0.063	0.386	0.061	0.373	0.06	0.361	0.057	3
종교시설	0.41	0.065	0.398	0.063	0.386	0.061	0.373	0.06	0.361	0.057	3
장례시설	0.41	0.065	0.398	0.063	0.386	0.061	0.373	0.06	0.361	0.057	2
묘지 관련 시설	0.41	0.065	0.398	0.063	0.386	0.061	0.373	0.06	0.361	0.057	3
단독주택	0.492	0.078	0.477	0.076	0.462	0.074	0.447	0.072	0.433	0.069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0.492	0.078	0.477	0.076	0.462	0.074	0.447	0.072	0.433	0.069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0.492	0.078	0.477	0.076	0.462	0.074	0.447	0.072	0.433	0.069	3
판매시설	0.492	0.078	0.477	0.076	0.462	0.074	0.447	0.072	0.433	0.069	3
운수시설	0.492	0.078	0.477	0.076	0.462	0.074	0.447	0.072	0.433	0.069	3
의료시설	0.492	0.078	0.477	0.076	0.462	0.074	0.447	0.072	0.433	0.069	3
교육연구시설	0.492	0.078	0.477	0.076	0.462	0.074	0.447	0.072	0.433	0.069	3
노유자시설	0.492	0.078	0.477	0.076	0.462	0.074	0.447	0.072	0.433	0.069	3
수련시설	0.492	0.078	0.477	0.076	0.462	0.074	0.447	0.072	0.433	0.069	3
야영장시설	0.492	0.078	0.477	0.076	0.462	0.074	0.447	0.072	0.433	0.069	3
운동시설	0.492	0.078	0.477	0.076	0.462	0.074	0.447	0.072	0.433	0.069	3
업무시설	0.492	0.078	0.477	0.076	0.462	0.074	0.447	0.072	0.433	0.069	3
숙박시설	0.492	0.078	0.477	0.076	0.462	0.074	0.447	0.072	0.433	0.069	3
위락시설	0.492	0.078	0.477	0.076	0.462	0.074	0.447	0.072	0.433	0.069	3
창고시설	0.492	0.078	0.477	0.076	0.462	0.074	0.447	0.072	0.433	0.069	3
자동차 관련 시설	0.492	0.078	0.477	0.076	0.462	0.074	0.447	0.072	0.433	0.069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0.492	0.078	0.477	0.076	0.462	0.074	0.447	0.072	0.433	0.069	3
교정 및 군사 시설	0.492	0.078	0.477	0.076	0.462	0.074	0.447	0.072	0.433	0.069	3
방송통신시설	0.492	0.078	0.477	0.076	0.462	0.074	0.447	0.072	0.433	0.069	3
관광 휴게시설	0.492	0.078	0.477	0.076	0.462	0.074	0.447	0.072	0.433	0.069	3
공동주택	0.529	0.085	0.513	0.082	0.497	0.079	0.481	0.077	0.466	0.074	3
공장	0.529	0.085	0.513	0.082	0.497	0.079	0.481	0.077	0.466	0.074	3
발전시설	0.729	0.117	0.708	0.112	0.685	0.109	0.663	0.106	0.641	0.102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0.746	0.118	0.723	0.115	0.701	0.112	0.679	0.108	0.656	0.105	3
자원순환 관련 시설	0.746	0.118	0.723	0.115	0.701	0.112	0.679	0.108	0.656	0.105	3

1.4 감리비 산출조서

【표 - 131】 해남군 다어울림 복지관 책임감리비 산출 조서

용역명	해남군 다어울림 복지관 책임감리용역
총 공사비	금14,364,000,000원
- 적용 공사비	금13,058,181,181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산출방법	공사비요율방식

요율산정식(직선보간법)		
X	(당해금액)	= 13,058,181,181
Y	(당해공사비요율)	= 9.938%
x_1	(큰 금액)	= 20,000,000,000
x_2	(작은 금액)	= 10,000,000,000
y_1	(작은 금액 요율)	= 10.73%
y_2	(큰 금액 요율)	= 8.14%

$$Y = y_1 - \frac{(X - x_2) \times (y_1 - y_2)}{x_1 - x_2}$$

구분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비고
기준요율	$Y = 10.73\% - \left[\frac{(13,058,181,181 - 10,000,000,000)}{(20,000,000,000 - 10,000,000,000)} \times (10.73\% - 8.14\%) \right]$	제2종 보통 (중급)
산출요율	9.938%	
적용요율	9.938%	
산출금액	$13,058,181,181 \times 9.938\% \times 100\% = 1,297,700,000\text{원}$	※ 만단위 절사
공급가액	1,297,700,000원	
부가가치세	129,770,000원	
소계	1,427,470,000원	
총 용역금액	1,427,470,000원	

[별표 5]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2023년 개정)

(단위:%)

공사비	개선요율 (%)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억원	9.66	10.73	11.80
200억원	7.34	8.14	8.97
300억원	6.24	6.92	7.62
40억원	5.48	6.09	6.70
500억원	4.96	5.52	6.07
700억원	4.38	4.87	5.35
1,000억원	3.93	4.36	4.79
1,500억원	3.44	3.82	4.21
2,000억원	3.11	3.45	3.79
3,000억원	2.73	3.03	3.32
5,000억원	2.32	2.57	2.82

-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 사업의 경우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적용
-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 적용한다.
- ※ 5,000억 초과인 경우 개선요율은 단순= $42,064.2419 \times (\text{공사비})^{-0.364}$, 보통= $46,597.0266 \times (\text{공사비})^{-0.364}$, 복잡= $52,525.8586 \times (\text{공사비})^{-0.365}$ 적용
- ※ 위 기준요율은 '22.5.1 이후 신규 발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 '22.5.1 이전 계약된 계속사업은 전면책임감리사업장 중 안전관리기술인 추가투입이 필요한 경우 동 지침 시행일 이후 잔여공사기간에 대해 필요한 소요를 반영한다.
 -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70조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술인 추가투입이 필요한 경우 실소요를 자율조정 하되, 계약건당 조정한도는 별도로 정한다.

1.5 설계공모방식 검토

1) 설계 공모 방식 검토

- 설계 공모 방식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공모할 수 있음

【표 - 132】 설계공모방식별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일반설계 공모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
2단계 설계공모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 방식
제안 공모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

- 설계 공모 방식에 따른 설계 공모 운영절차 및 기간의 예시

【표 - 133】 운영절차 및 기간 (예시)

절차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설계공모 마감	20일	20일	20일
등록마감	90일 이상 (최소 45일 이상)	30일 이상 (최소 15일 이상)	15일 이상
현장설명회 및 질의응답 공모안의 접수			
심사위원회 개최	15일	15일	15일
심사결과 발표			
2차 공모안의 접수	/	60일 이상 (최소 30일 이상)	/
2차 심사위원회 개최		15일	
심사결과 발표			
공모안 전시 및 반환	7일	7일	7일
총 설계 공모기간	132일 이상 (최소 87일 이상)	147일 이상 (최소 102일 이상)	57일 이상

2) 제출 문서의 종류 및 규격

- 일반 설계공모

【표 - 134】 제안(간이)공모 제출 항목

종류	비고
설계도면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 4장이내

【표 - 135】 일반설계공모 제출문서의 규격

구분	제출문서의 규격
일반설계공모	설계도면은 A3황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설계설명서는 A4 종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백색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가능(설계도면은 흑백)

1.6 설계공모

- 설계공모의 경우 일반 설계공모로 진행하며 이에 따른 일정 검토 진행

【표 - 136】 설계공모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비고
설계공모 공고	-	·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
현장설명회 개최 및 참가자 등록 마감	-	· 설계공모 공고일 내
질의접수 마감	-	· 전자메일 또는 팩스 전송 후 유선확인(예시) (수신처 : fax, 전화)
질의회신	-	·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작품 접수	-	· 접수처
제안서 발표 및 심사	-	· 제안서 발표장소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결과발표	-	·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계약체결	-	· 2주 이내
도서반환	-	

1.7 공사기간 검토

1) 산정공식에 의한 공사기간 검토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의 제13조에 따라 [별표4] 시설물별 공기 산정공식에서 건축(공통) 부분의 산정공식을 대입하여 공사기간을 적용함

【표 - 137】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별표4] 시설물별 공기 산정공식

구분	시설물	산정공식	변수 정의	적용범위
건축	건축(공통)	$Y = -68.550 + 18.192 \cdot B + 12.079 \cdot G - 5.25 \cdot \ln(A) + 167.632 \cdot \ln(C)$	C = 총공사비(억원) A = 연면적(100㎡) G = 지상층수(층) B = 지하층수(층)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공동주택	$Y = -21.674 + 7.953 \cdot G + 116.835 \cdot \ln(C)$		
	체육시설	$Y = -278.109 + 189.438 \cdot \ln(C)$		

- 비고
- 위 공식은 해당 시설물의 적용범위(총공사비, 연장 등)를 확인하여 적용하며, 산정공식은 단위에 주의하여 적용한다.
- ‘건축(공통)’은 공동주택과 체육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에 적용한다.
- 총공사비는 추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적용한다.
- 위의 공식에 의해 산정한 결과에 당해 공사의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기를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표 - 138】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공사기간 산정기준

구분	지하	지상	연면적	공사비	공사일
기준	0	4	3,100㎡	149억	
변환값	0	48.316	18.0284	838.82	800.55909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의 제13조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시 약 800일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됨

2) 유사사례를 통한 공사기간 산정

- 조달청 공사비 광장의 유사 규모(2,500㎡~3,500㎡) 공사기간 사례 검토를 통한 공사기간 산정

【표 - 139】 조달청 공사비 광장 유사사례 공사기간 검토

조감도			
공사명	김천 장애인회관 신축공사	목2동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공사	광주광역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공사비	9,479백만원	9,700백만원	5,243백만원
면적(연면적/지하/지상)	3,345.49/1/3	3,500/2/4	2,749/0/2
공사기간	540일	540일	360일
조감도			
공사명	공항공나무 제3어린이집 건립공사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가칭)전주세내유치원 신축공사
공사비	11,839백만원	12,709백만원	7,945백만원
면적(연면적/지하/지상)	2,855/0/2	2,933/1/2	2,959/1/3
공사기간	365일	365일	320일
조감도			
공사명	김천시 노인건강센터 건립공사	양양군육아통합지원센터 (가족센터·공공산후조리원) 신축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주지사 신축사옥 공사
공사비	7,314백만원	10,078백만원	7,336백만원
면적(연면적/지하/지상)	2,998/1/5	3,453/0/4	2,657/1/5
공사기간	600일	365일	365일
조감도			
공사명	영주지사 청사 신축공사	인천권 스마트선박안전 지원센터 건립공사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
공사비	5,967백만원	8,260백만원	6,778백만원
면적(연면적/지하/지상)	2,541/1/3	2,666/0/2	2,516/1/4
공사기간	458일	427일	425일

조감도			
공사명	목포항(연안포함)VTS신축공사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 청사 신축공사	서남권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공사
공사비	8,779백만원	8,722백만원	8,550백만원
면적(연면적/지하/지상)	2,731/0/5	2,753/1/3	2,776/0/2
공사기간	720일	396일	427일
조감도			
공사명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사옥 신축공사	전라북도교육청 별관 증축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사옥신축공사
공사비	8,519백만원	9,342백만원	8,814백만원
면적(연면적/지하/지상)	2,873/1/5	2,986/0/4	2,991/0/5
공사기간	330일	360일	360일
조감도			
공사명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사옥 신축공사	TBN 충북교통방송 청사 신축공사 건축공사	면목7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공사비	8,181백만원	10,814백만원	11,665백만원
면적(연면적/지하/지상)	2,999/1/4	3,142/1/3	3,216/2/4
공사기간	420일	360일	540일
조감도			
공사명	부산지방기상청 청사 신축공사	제천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고용노동부창원지청 신청사 신축공사
공사비	11,134백만원	8,355백만원	7,470백만원
면적(연면적/지하/지상)	3,318/0/4	3,477/1/4	3,548/1/3
공사기간	480일	365일	365일

- 조달청 공사비 광장의 유사 규모 24개 사례 검토 결과 공사기간은 약 427.2일로 추정됨

1.8 해남군 다어울림 복지문화복지공간 세부 추진 일정

- 세부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음

【표 - 140】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세부 추진 일정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진행예정															
설 계 용 역	- 건축기획, 투자심사	■	■												
	- 공모지침, 과업지시서 작성														
	- 조달청 사전심의, 공사단가 조정														
	- 설계공모 신청														
	- 설계공모			■											
	- 공모작 심사평가 및 설계용역 계약 체결				■	■	■	■							
	- 기본설계, 실시설계														
- 건축 인허가															
- 설계도면 확정															
- 설계완료 검사, 완료보고															
건 축 공 사	- 건축공사 입찰공고														
	- 건축시공사 선정														
	-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 공사														
	- 건축공사 완료 및 준공검사														
개 관	- 시범운영														
	- 개관 및 운영														■

2

경제성 분석

2.1 경제적 타당성 개념 및 분석 방법

1)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개념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란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적(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경제적 수익률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임
-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건립은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이므로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을 측정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타당성조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 건물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재무적 분석분 아니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경제적 편익 분석을 해야 함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한 수익 산출은 일반적인 회계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수행하면 되나 경제적 편익 분석을 위한 편익 산출은 당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분석과정이 필요함에 따라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란 사업의 주체가 투자 및 운영비 지출에 대응할 만큼 충분한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며, 재무적 순현재가치로 계산된 현금흐름에 최초 자본투자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임
- 반면에 경제적 편익 분석이란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 측면을 조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운영에 반영되는 금전적인 효과를 무시하고 소비자 지불의사의 합으로 이해되는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인 기회비용을 순현재가치로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임

2)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법

□ 편익·비용비율(B/C Ratio : Benefit·Cost Ratio)

- 편익·비용비율법은 총 편익과 총 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로 장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임
- 즉, 장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사회적 할인율(r)로 할인하여, 분석 기간 중 기대되는 총편익의 현재가치총액과 총비용의 현재가치 총액의 비율을 계산하는 지표임
- 일반적으로 B/C Ratio가 1보다 클수록 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편익비용의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음

□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

- 순현재가치법은 경제성을 가능하는 척도 중의 하나로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총편익을 할인율로 할인한 총편익의 현재(現價)에서 총비용의 현재(現價)를 공제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순현재가치는 대안선택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산이 용이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됨
- 단일투자안의 경우 투자안의 NPV가 “0”보다 크면 그 투자안을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기각하며, 상호배타적인 여러 투자안들의 경우에는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NPV가 가장 큰 투자안을 채택함

□ 내부수익률(IRR : Internal Rate of Return)법

-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의 현재가치(Present value)로 환산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r)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함
- 내부수익률(IRR)이 사회적 할인율(r)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함
- 내부수익률의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음

3) 사업타당성 분석의 기준

- 일반적으로 사업타당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 중 편익·비용비율법(B/C Ratio)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방법들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세 가지 분석을 시행하여 결과를 제시할 것임

【표 - 141】 경제적 타당성 판단 기준

분석기법	판단	장점	단점
편익/비용 (B/C Ratio)	$B/C \geq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용이, 사업규모 고려 가능 • 비용편익 발생기간의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 •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 발생 가능
순현재가치 (NPV)	$NPV \geq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수익성 측정가능 •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함 •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절대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음 •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재
내부수익률 (IRR)	$IRR \geq 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 타 분석에 이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의 어려움 • 투자규모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 하지 못함

4) 할인율

- 사업타당성에서의 할인율은 자본비용의 개념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본을 사용하는 대가로 자본제공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 또는 ‘기업의 가치를 하락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투자로부터 벌어들이야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본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건립의 할인율은 KDI의 최근 자료를 참고로 4.5%를 적용함

5) 분석기간

- 분석기간은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건립(2028년) 후 준비기간인 2023년을 기준으로 향후 30년으로 전제함(2023년~2053년)

2.2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비용 추정

□ 건축비용

-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건립에 따른 건설비용은 부지매입 비용을 포함한 초기 투자비는 약 18,012백만원임

□ 인건비 및 경비산정

-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은 현재 해남군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임
- 이에, 인건비 및 경비는 2022년 기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예산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원

【표 - 142】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원 인건비 및 경비

구분	소요예산(원)
인건비	866,276,120
업무추진비	619,680
운영비	106,424,850
시설비	61,768,310
사업비	529,705,940
예비비 및 기타	13,661,158
합계	1,578,456,058

- 해남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건비 및 경비

【표 - 143】 해남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건비 및 경비

구분	소요예산(원)
인건비	129,031,100
운영비	11,316,000
시설비	1,088,000
사업비	17,063,130
예비비 및 기타	25,370
합계	158,523,600

- 선재의 집(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표 - 144】 해남군 선재의 집 인건비 및 경비

구분	소요예산(원)
인건비	129,031,100
운영비	11,316,000
시설비	1,088,000
사업비	17,063,130
예비비 및 기타	25,370
합계	158,523,600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표 - 145】 해남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인건비 및 경비

구분	소요예산(원)
인건비	2,402,089,940
업무추진비	1,506,740
운영비	41,511,835
시설비	730,000
사업비	14,502,090
합계	2,460,340,605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표 - 146】 해남군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인건비 및 경비

구분	소요예산(원)
인건비	-
업무추진비	-
운영비	44,480
잠지출	6,402,702
예비비 및 기타	480,000
합계	6,927,182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표 - 147】 해남군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인건비 및 경비

구분	소요예산(원)
인건비	17,313,990
업무추진비	-
운영비	200,870
시설비	388,000
사업비	1,395,010
합계	19,297,870

- 각 시설에서 운영중인 시설의 인건비와 경비를 모두 산정한 결과 매년 약 4,382.1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위의 예산 중 시설비는 시설의 임대, 유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본 영역에서는 모든 서비스를 위한 신규 시설물이 조성되는 관계로 시설비는 제외하였음
- 이에, 시설비를 제외한 인건비 및 경비는 4,317.0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 148】 해남군 복지시설 경비 세부내역

구분	경비	소요예산(원)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건비	866,276,120
	업무추진비	619,680
	운영비	106,424,850
	사업비	529,705,940
	예비비 및 기타	13,661,158
	소계	1,516,687,748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건비	129,031,100
	운영비	11,316,000
	사업비	17,063,130
	예비비 및 기타	25,370

구분	경비	소요예산(원)
	소계	157,435,600
선재의 집	인건비	129,031,100
	운영비	11,316,000
	사업비	17,063,130
	예비비 및 기타	25,370
	소계	157,435,600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인건비	2,402,089,940
	업무추진비	1,506,740
	운영비	41,511,835
	사업비	14,502,090
	소계	2,459,610,605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인건비	-
	업무추진비	-
	운영비	44,480
	잡지출	6,402,702
	예비비 및 기타	480,000
	소계	6,927,182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인건비	17,313,990
	업무추진비	-
	운영비	200,870
	사업비	1,395,010
	소계	18,909,870

- 운영·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 2016)에 따라 ‘건물가액+공시지가’의 0.5%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의 구성에 소요되는 금액은 18,012백만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관리비는 매년 90.1백만원으로 추정됨

2) 편익 추정

-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은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용료, 대관료 등을 통해 일반적인 수익을 발생시키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재무성 분석을 통해 건립의 타당성을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리재, 즉 편익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 일반적으로 미술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경제성을 분석을 실시할 경우 조건부가치추정법(CVM : 해당 사업이 가지는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지불의사액(WTP : Willing to Pay)을 측정하여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
-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문화활동·여가향유 등을 통해 장애인 및 이웃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활력소를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에 의료비 절감 편익 및 무료이용 시설에 대한 편익을 산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추진하고자 함
- 연간 이용 수요는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중 상담실, 미술활동실 등 장애인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최대 이용 가능 인원의 30%를 수요로 편성하였음
- 장애인 연간 진료비는 보건복지부(2016)의 장애인 연간 진료비 자료를 활용하였음
- 또한 6개 주요 질환 감소율은 서울특별시(2010)의 「9988 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에 반영된 6개 주요질환 감소율을 반영하였음
- 이를 통해 산정된 연간 진료비 절감 편익은 다음과 같음

【표 - 149】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연간 진료비 절감 편익

구분	내용	산출내역
연간 이용 수요	39,840명	• 166명(830×30%)×22일/월×12월/년
장애인 연간 진료비	3,914,000원	
6개 주요질환 감소율	2.295%	
연간 진료비 절감 편익	3,936.547,771원	• 39,840명×3,914,000원×2.295%

3) 경제성 분석 결과

- 앞서 산정한 비용과 편익을 바탕으로 2023년을 기준으로 향후 30년간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였음
- 운영비는 매년 2%, 운영관리비는 매년 3%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음

【표 - 150】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향후 30년간의 비용과 편익 분석 내용

구분		비용			편익	비용 합계	편익 합계	비용현재가	편익현재가	편익-비용
연차	연도	시설 조성비	운영비	운영 관리비	질병예방 편익					
0	2023	806				806	0	806	0	-806
1	2024	861				861	0	861	0	-861
2	2025	7,432				7,432	0	7,432	0	-7,432
3	2026	8,914				8,914	0	8,914	0	-8,914
4	2027		4,317	90	3,937	4,407	3,937	4,407	3,937	-471
5	2028		4,403	93	3,937	4,496	3,937	4,496	3,937	-560
6	2029		4,491	96	3,937	4,587	3,937	4,587	3,937	-650
7	2030		4,581	98	3,937	4,680	3,937	4,680	3,937	-743
8	2031		4,673	101	3,937	4,774	3,937	4,774	3,937	-838
9	2032		4,766	104	3,937	4,871	3,937	4,871	3,937	-934
10	2033		4,862	108	3,937	4,969	3,937	2,909	3,937	1,027
11	2034		4,959	111	3,937	5,070	3,937	2,813	3,937	1,123
12	2035		5,058	114	3,937	5,172	3,937	2,720	3,937	1,216
13	2036		5,159	118	3,937	5,277	3,937	2,631	3,937	1,306
14	2037		5,262	121	3,937	5,383	3,937	2,544	3,937	1,392
15	2038		5,368	125	3,937	5,492	3,937	2,460	3,937	1,476
16	2039		5,475	128	3,937	5,603	3,937	2,379	3,937	1,557
17	2040		5,585	132	3,937	5,717	3,937	2,301	3,937	1,636
18	2041		5,696	136	3,937	5,832	3,937	2,225	3,937	1,712
19	2042		5,810	140	3,937	5,950	3,937	2,152	3,937	1,785
20	2043		5,926	145	3,937	6,071	3,937	2,081	3,937	1,856
21	2044		6,045	149	3,937	6,194	3,937	2,012	3,937	1,924
22	2045		6,166	153	3,937	6,319	3,937	1,946	3,937	1,991
23	2046		6,289	158	3,937	6,447	3,937	1,882	3,937	2,055
24	2047		6,415	163	3,937	6,578	3,937	1,820	3,937	2,117
25	2048		6,543	168	3,937	6,711	3,937	1,760	3,937	2,177
26	2049		6,674	173	3,937	6,847	3,937	1,702	3,937	2,235
27	2050		6,807	178	3,937	6,985	3,937	1,646	3,937	2,291
28	2051		6,944	183	3,937	7,127	3,937	1,592	3,937	2,345
29	2052		7,083	189	3,937	7,271	3,937	1,539	3,937	2,397
30	2053		7,224	194	3,937	7,418	3,937	1,488	3,937	2,448
소계		18,012	152,582	3,668	106,287	174,262	106,287	90,428	106,287	15,858

-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든 경제성 지표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 151】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타당성 분석 결과

분석기법	판단	결과
편익/비용 (B/C Ratio)	$B/C \geq 1$	1.18
순현재가치 (NPV)	$NPV \geq 0$	15,858백만원
내부수익률 (IRR)	$IRR \geq 4.5\%$	3.1%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3.1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개요

1) 분석기준

- 『에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훈령, 2019. 4. 25.) 제64조에 따르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산량, 부가가치, 고용 등의 증가를 계량화한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지역간산업연관표에 기초한 지역산업연관모형(IRIO)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은 산업 간에 발생하는 투입-산출을 실측하여 작성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산업간 수요-공급을 발생시키는 총량을 추정하여 계측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임
-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한국은행(2020)에서 공표한 ‘2015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1단위 변화로 인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음
-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 2가지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유발하는데, 첫째,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으로 인한 파급효과, 둘째 복합 문화복지공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지출로 인한 파급효과가 유발됨
- 본 과제는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로 건물 조성 및 시설 운영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지출을 분석대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제시함
- 또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역간·산업간 연관관계에 따라서 법인이 소재한 해남지역에서 가장 크게 유발되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유발됨

【표 - 152】 지역산업연관 체계

				전국							
				전남				...	지역n	...	광역 16
				해남							
전국	전남	해남	산업1
			산업2
		
			산업n
	
...	지역n	산업1~ 산업n	
...	
...	광역 16	산업1~ 산업n	

2) 분석모형

- 생산유발효과

- 생산유발효과 $B = (I - A^d)^{-1} Y^d$ 로 추정함

- 이때 $(I - A^d)^{-1}$ 는 레온티에프 역행렬(Leontief inverse matrix)이라고 하며, 최종수요와 산출액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이용하는 생산유발계수이며, 각 산업의 생산에 투입한 중간재 및 부가가치의 구성비로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역 및 산업으로 파급되는 유발효과의 크기를 계측하는 매개변수인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작성함

- 생산유발효과는 법인 설립·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최종수요 Y^d 의 변화에 대한 생산유발계수 $(I - A^d)^{-1}$ 로 인해 변화된 산출액의 변화 값을 의미함

- 부가가치유발효과

- 부가가치유발효과 $V = \hat{A}^v (I - A^d)^{-1} Y^d$ 로 추정함

-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법인 설립·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최종수요 Y^d 의 변화에 대한 생산유발계수 $(I - A^d)^{-1}$ 로 인해 변화된 산출액의 변화에 대한 부가가치 \hat{A}^v 의 반응 값을 의미함

- 취업유발효과

- 취업유발효과 $L = \hat{l} (I - A^d)^{-1} Y^d$ 로 추정함

- 취업유발효과는 법인 설립·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최종수요 Y^d 의 변화에 대한 생산유발계수 $(I - A^d)^{-1}$ 로 인해 변화된 산출액의 변화에 대한 취업자수 \hat{l} 의 반응 값을 의미함

3.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1) 투자지출의 추정

-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투입요소로서 『해남군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사업수지분석에서 추정한 투자지출비용(사업비, 인건비, 운영비)을 사용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누적 합산 추계함

2) 생산유발효과

- 시설 조성의 측면에서 비용 지출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351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파급되

며, 이 중 78.1%에 해당되는 274억원의 생산유발효과는 해남군을 포함한 전남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시설물 운영의 측면에서는 비용 지출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406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파급되며, 이 중 78.1%에 해당되는 317억원의 생산유발효과는 해남군을 포함한 전남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3) 부가가치유발효과

- 시설 조성의 측면에서 비용 지출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146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파급되며, 이 중 85.1%에 해당되는 124억원의 생산유발효과는 해남군을 포함한 전남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시설물 운영의 측면에서는 비용 지출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195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파급되며, 이 중 84.1%에 해당되는 166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해남군을 포함한 전남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4) 취업유발효과

- 시설 조성 비용 지출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195명의 취업유발효과가 파급되며, 이 중 84.3%에 해당되는 164명의 취업유발효과는 해남군을 포함한 전남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시설물 운영의 측면에서 지출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266명의 취업유발효과가 파급되며, 이 중 84.3%에 해당되는 224명의 취업유발효과는 해남군을 포함한 전남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 153】 경제적 파급효과 결과

(단위 : 억원, 명)

파급범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시설조성	전국	351	146	195
	전남	274 (78.1%)	124 (85.1%)	164 (84.3%)
시설운영	전국	406	195	266
	전남	317 (78.1%)	166 (85.1%)	224 (84.3%)